

국제재배식물명명규약

International Code of Nomenclature
for Cultivated Pla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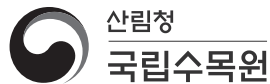


Scripta Horticulturae
10권

국제재배식물명명규약

(International Code of Nomenclature for Cultivated Plants)

제 8 판



국제원예학회(International Society for Horticultural Science) 발행

국가표준재배식물목록위원회 연혁

국가수목유전자원목록 사업추진

- ◎ 기반조성단계(2002년)
 - 국가수목유전자원목록심의회 구성
자생 및 귀화식물목록을 작성, 심의: 3,500 분류군에 대한 표준식물명 결정
 - 국가표준식물명을 관리하기 위한 심의용 홈페이지 및 이를 제공키 위한 일반인용 홈페이지 개발
국가표준식물목록 관리기능 개발(자생 및 귀화식물): 국가표준식물목록 구축시스템 DB 구축
- ◎ 확대구현단계(2003년)
 - 국가수목유전자원목록심의회 위상적립
500 분류군에 대한 표준 식물명 결정
 - 재배식물목록분과 구성
재배식물목록 작성, 심의: 1,000분류군에 대한 품종명 표준화
 - 국가표준식물목록 홈페이지 기능보완
식물명 관리기능 보완 및 개선: 국가표준식물목록 구축 시스템 DB확대설계: 국가식물목록 구축시스템 DB공개
- ◎ 정보활용단계 (2004년~)
 - 국가수목유전자원목록 심의회, 재배식물 목록분과 지속적 운영

- 국가표준식물목록 연구망의 확대
학, 연, 산업계와 연계
- 국가표준식물목록 구축 시스템을 통한 식물명의 지속적 관리

국가수목유전자원목록 재배식물목록분과 위원회 소개

자생식물과 귀화식물을 제외한 재배식물의 표준화된 식물목록을 완성하기 위하여 관련 산업계에 거래되는 조경식물, 원예식물 및 산림식물과 이들의 품종에 대한 식물의 표준명칭을 선정하고 이를 검토, 심의하며, 기타 관련된 유전자원 목록작성을 심의합니다(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

- ◎ 한국원예학회, 한국임학회, 한국식물원수목원협회 등 관련 전문학회 및 기관의 전문가 추천을 받아, 2012년 6월 재배식물목록위원회를 국가수목유전자원목록심의회 재배식물목록분과로 재편하였습니다.
- ◎ 본 분과에서는 지속적으로 국내 재배식물의 식물명을 관리하기 위하여, 관련 문헌 정리 및 검토, 국제재배식물명명규약의 검토 등 필요한 기준 사항과 재배식물명칭의 부여규칙을 정리하고 이를 지침서로 작성, 제시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

성명	소속	성명	소속
이해주	국립수목원 전시교육과장	김기선	서울대학교 식물생산과학부
김종진	건국대학교 생명환경과학대학	박권우	고려대학교
송기훈	(사)한국식물원·수목원협회	윤평섭	삼육대학교 환경디자인학과
이종석	서울여자대학교 원예조경학과	이석영	농진청 농업유전자원정보센터

국가표준재배식물명명규약(ICNCP) 책자발간 현황

- 2014. 12. 국제재배식물명명규약 번역완료
 - 국제재배식물명명규약 한글판 출판 허가(ISHS, 2014.12.20.)
- 2015. 01. 국제재배식물명명규약 번역본 검토
- 2015. 03. 국가수목유전자원목록심의회 개최
 - 국제식물명명규약(ICN)및 국제재배식물명명규약(ICNCP) 번역 및 발간 계획 보고
 - 국가수목유전자원목록 심의회 결과
 - 명명규약 번역 및 출판 검토
 - “International Code of Nomenclature for Cultivated Plants, 8th ed. (Brickell, 2009) (국제재배식물명명규약, ICNCP)”의 번역본에 대한 추가 검토
 - 2015년 “International Code of Nomenclature for Algae, Fungi and Plants (McNeill et al., 2012) (국제식물명명규약, ICN)”에 대한 번역 작업
- 2015. 04. - 05. 국제재배식물명명규약(ICNCP) 번역 2차, 3차 검토
- 2016. 03. - 04. 국제식물명명규약(ICN)과 국제재배식물명명규약(ICNCP) 공통 어휘 통일
- 2016. 04. - 05. 원고 최종 검토
 - 용어해설(Glossary) 수정
 - 표지 및 내용 구성 검토
 - 표지 디자인 변경 허가(ISHS, 2016.05.13.)
 - 국제재배식물명명규약 사진 원본 수령(ISHS, 2016.05.18.)
- 2016. 05. 23. 국제재배식물명명규약(한글판) 발간

국제재배식물명명규약

(International Code of Nomenclature for Cultivated Plants)

(ICNCP 또는 재배식물 규약)

재배식물의 명명에 관한 규칙과 권고 포함

제 8 판

국제생물과학연합(International Union of Biological Sciences)과
국제재배식물명명위원회(International Commission for the Nomenclature of Cultivated
Plants)에 의해 채택

국제재배식물명명규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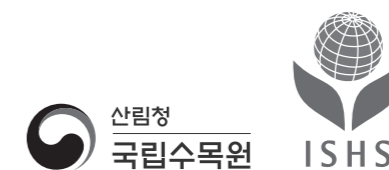
International Code of Nomenclature for Cultivated Plants(ICNCP)

인쇄	2016년 5월 23일
발행	2016년 5월 25일
발행인	국립수목원장 이유미
저자	김기선, 이기철, 이정호, 이승연, 이종석, 김현진, 이용하, 최한, 이해주, 최 경, 장계선
발행처	국립수목원 전시교육과 유용식물증식센터
주소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두담길 21-4 Tel : 031-540-2311 Fax : 031-771-2739
출판사	종합기획 숨은길 (02-2275-6543)
	ISBN : 979-11-87031-29-1 93520

C.D. Brickell 위원장과

C. Alexander, J.C. David, W.L.A. Hettterscheid,
A.C. Leslie, V. Malecot, Xiaobai Jin(편집위원회 위원)
그리고 J.J. Cubey(편집위원회 간사) 작성, 편집

2009년 10월



국제재배식물명명규약 한글판 발간사

전 세계에서 식물정보를 공유하는 열쇠는 바로 학명이고 “국제재배식물명명규약”은 학명이 무분별하게 만들어지고 사용되어 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학명을 만드는 규칙, 학명으로서 인정되는 방법을 자세히 적어놓은 재배식물(재배품종)을 연구하는 사람들끼리의 규칙입니다.

최근 국내에는 식용, 약용 및 관상용 등 많은 용도로 재배식물들이 생산 및 유통되고 있고 그 종류도 매우 다양합니다. 이렇게 많은 식물들의 학명 및 품종명은 식품 및 화장품의 원재료, 식·약용, 조경·화훼 등의 거래와 국내외 식물자원의 교류, 통상에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재배식물의 이름과 이러한 식물들의 명명법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국립수목원에서는 국가수목유전자원목록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가생물종지식정보시스템」, 「국가표준식물목록시스템」을 통하여 정확한 식물의 학명 및 국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표준재배식물목록위원회」에서는 재배식물 관련분야 학자 및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글화된 용어를 사용하여, “국제재배식물명명규약” 번역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국제재배식물명명규약”은 국제식물분류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Plant Taxonomy)로부터 후원을 받아 국제원예학회(International Society for Horticultural Science)에서 발간한 것으로, 올바른 재배식물 명명규칙을 제공하고자 국립수목원이 최초로 한글판 출판에 관한 권리를 정식 승인받아 발간하였습니다.

이번 국제재배식물명명규약 한글판 발간을 통하여 식물연구 및 식물자원 관리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지만 등한시되었던 “식물 명명” 분야에 있어 새로운 관심을 일으키고, 또한 학문 및 관련분야 자원 관리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발간을 위하여 번역작업을 도와주신 서울대학교 김기선 교수님과 국가표준재배식물목록위원님들을 비롯하여, 원예학회 및 국립수목원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립수목원장 이 유 미

Regnum Vegetabile

식물분류학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국제식물분류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Plant Taxonomy)의 후원으로 출판되었음.

Volume 151
ISSN 0800-0694
국제식물분류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Plant Taxonomy)
Institute of Botany, University of Vienna
Rennweg 14, A-1030 Vienna, Austria
E-mail: office@iapt-taxon.org
Web: http://www.botanik.univie.ac.at/iapt

Scripta Horticulturae

ISSN 1813-9205
ISBN 978 90 6605 662 6, *Scripta Horticulturae* Number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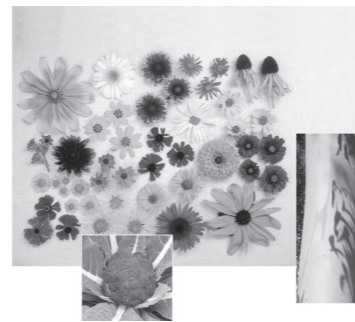
Published by ISHS, October 2009
Executive Director of ISHS: Ir. J. Van Assche
ISHS Secretariat, PO Box 500, 3001 Leuven 1, Belgium

Printed by Drukkerij Geers, Eeckhoutdriesstraat 67, 9041 Gent-Oostakker, Belgium

©2009 by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Horticultural Science (ISHS). All rights reserved. No part of this book may be reproduced and/or published in any form or by any means, electronic or mechanical, including photocopying, microfilm and recording, or by any information storage and retrieval system, without written permission from the publishers.

표지사진

A) 1 *Rudbeckia hirta* 'Prairie Sun'; 2 *Leucanthemum* × *superbum* 'T E Killin'; 3 *Gaillardia* 'Arizona Sun'; 4 *Aster* × *frikartii* 'Monch'; 5 *Echinacea paradoxa*; 6 *Coreopsis* 'Astolat'; 7 *Leucanthemum* × *superbum* 'Northern Lights'; 8 *Helianthus* 'Lemon Queen'; 9 *Catanache caerulea*; 10 *Rudbeckia hirta* 'Brown Golden'; 11 *Osteospermum jucundum* 'Killerton Pink'; 12 *Helenium* 'Indianersommer'; 13 *Rudbeckia hirta* 'Maya'; 14 *Gaillardia* × *grandiflora* 'Burgunder'; 15 *Helenium* 'Sonnenwunder'; 16 *Heliopsis helianthoides* var. *scabra*; 17 *Helenium* 'Waltraut'; 18 *Inula magnifica*; 19 *Echinacea purpurea* dark-stemmed; 20 *Rudbeckia hirta* 'IndianSummer'
RHS The Garden의 Tim Sandall 제공



B) *Brassica oleracea* (Botrytis Group) Purple Cape
V10 03-33/SL474
Jacquie Gray(RHS Herbarium) 제공

C) *Eucalyptus dalrympleana*
Janet Cubey(RHS Herbarium) 제공

목차

서언	11
IUBS 국제재배식물명명위원회의 위원목록	13
머릿말	15
본 판과 2004년도 판 규약의 비교	18
새로운 규정(provisions)	21
본 규약의 주요 일자	22
본 규약의 이전 폴판물	23
서문	27
제 I 절: 원칙(Principles)	29
제 II 절: 규칙과 권고(Rules and Recommendations)	32
제 I 장: 일반 규정(General Provisions)	32
조항 1: 국제식물명명규약(International Code of Botanical Nomenclature)과의 관계	32
제 II 장: 정의(Definitions)	33
조항 2: 품종(The cultivar)	33
조항 3: 그룹(The group)	38
조항 4: 계품(The grex)	40
조항 5: 접목키메라(The graft-chimera)	41
조항 6: 분류군 집합(The denomination class)	41
조항 7: 출판(Publication)	42
조항 8: 명칭과 소명(Names and epithets)	42
조항 9: 명명의 일자(Date of a name)	44
조항 10: 수립된 명칭(Established names)	44
조항 11: 채택명(Accepted names)	45
조항 12: 유지 명칭(Conserved names)	46
조항 13: 상용 명칭(Trade designations)	47
제 III 장: 명칭을 표시하는 협약 명칭의 표시를 위한 세목	48
조항 14: 품종 등급(Cultivar status)	48
조항 15: 그룹 등급(Group status)	49
조항 16: 계품 등급(Grex status)	49
조항 17: 상용 명칭 등급(Trade designation status)	50
제 IV 장: 선취권(priority)의 원칙에 대한 제한사항	51
조항 18: 명명의 시점	51
조항 19: 명칭의 유지	51
제 V 장: 재배식물 명명(Naming plants in cultivation)	52
조항 20: 재배화된 야생 식물의 명명 명칭	52

조항 21: 품종의 명칭	52
조항 22: 그룹의 명칭	64
조항 23: 계품의 명칭	65
조항 24: 접목키메라의 명칭	67
제 VI 장: 출판과 수립(Publication and establishment)	69
조항 25: 출판 조건(Conditions of publication)	69
조항 26: 출판 일자(Date of publication)	70
조항 27: 수립 조건(Conditions of establishment)	71
조항 28: 저자명의 인용(Citation of authors' names)	74
제 VII 장: 명칭의 선택, 재사용과 기각	76
조항 29: 명칭의 선택(Choice of names)	76
조항 30: 소명의 재사용(Re-use of epithets)	77
조항 31: 명칭의 기각(Rejection of names)	78
제 VIII 장: 번역, 음역, 그리고 복사	81
조항 32: 소명의 번역(Translation of epithets)	81
조항 33: 소명의 음역(Transliteration of epithets)	82
조항 34: 소명의 복사(Transcription of epithets)	83
제 IX 장: 철자(철자법) Spelling(orthography)	85
조항 35: 소명의 철자(Spelling of epithets)	85
제 III 절: 속간잡종의 명칭(NAMES OF HYBRID GENERA)	89
제 IV 절: 명칭의 등록(REGISTRATION OF NAMES)	93
제 V 절: 명명기준(NOMENCLATURAL STANDARDS)	94
제 VI 절: 규약의 변경(MODIFICATION OF THIS CODE)	97
●●●	
부록 I: 국제품종등록기관(International Cultivar Registration Authorities)의 주소록	100
부록 II: 법정식물등록기관(statutory plant registration authorities)의 주소록	121
부록 III: 명명기준의 보유장소	135
부록 IV: 중요 종묘회사의 목록을 보유 도서관	139
부록 V: 특정 분류군집합(Special denomination classes)	143
부록 VI: 유지 또는 기각된 소명의 목록	145
부록 VII: 식물의 라틴어 명칭	147
부록 VIII: 명명법 여과장치	151
부록 IX: 새로운 품종명을 위한 안내	164
부록 X: 상용 명칭	168
부록 XI: 명명 기관과 과정에 대한 업무흐름도	171
용어 해설	172

서 언

제 8 판 국제재배식물명명규약(2009)은 2004년 2월에 출판되었던 제7판(*Acta Horticulturae* Vol. 647 and as *Regnum Vegetabile* Vol. 144)을 대체한다.

재배식물의 분류에 대한 제5회 국제심포지엄이 네덜란드 Wageningen에서 2007년 10월 15-19 일 동안 개최되었다. 심포지엄 조직위원회는 ICNCP의 개정을 담당하게 된 국제위원회 회원들에게 규약개정을 위한 제안들을 충족시키고 규약의 근거가 되는 기본적 원칙들이 지켜지는 한도 내에서 사용자의 변화된 요구사항을 고려한 신판 제작에 대한 방향을 제공했다.

심포지엄이 개최되기 전인 2006년과 2007년 사이에 다수의 개인과 조직들로부터 2004규약(Toronto)의 개정을 위한 제안 및 요구사항을 받은 결과, 위원회 회원들이 다양한 견해와 의견들을 얻을 수 있었다. 일부 제안들은 *Hanburyana* (Vol.1, 2006: Vol.2, 2007)에 출판 되었지만 대부분의 제출안들은 이메일로 이루어졌다. 이들은 모두 초록집에 수집되었고, Wageningen 심포지엄 참석자들과 위원회의 위원들에게 배부되었다.

규약 개정의 제안들에 관한 공개토론이 심포지엄의 마지막 날에 이루어졌는데, 이는 회의에 참석한 대표들로부터 추가 의견을 듣고 그들의 의견들이 위원회가 참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위원회 위원들은 토론을 위해 Wageningen 식물표본관에 2일간 참여하였고, 규약개정 관련 모든 제안들을 투표로 처리하였다. C.D. Brickell (의장), C. Alexander, J.C. David, W.L.A. Hettterscheid, A.C. Leslie, V. Malecot, Xiaobai Jin 등으로 구성된 편집위원회가 규약 최종편집과 출판 준비를 위해 임명되었다.

신규약의 본문 준비와 편집 관련 초기 작업은 John David과 Alan Leslie에 의해 Wisley에서 이루어졌고, Janet Cubey의 토론 기록들과 회의 메모들도 이용되었다. 초안은 출판되기 전에 점검하여 승인을 얻기 위해 편집위원회의 다른 위원들에게 보냈다. 그리고 더 많은 의견과 제안된 수정사항들을 수집하기 위해 모든 위원들에게 전자우편으로 배부하였다.

2004 규약이 출판될 때까지 위원회에 규약의 개정을 위한 제안과 제의를 보낸 준 다음의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Björn Aldén (스웨덴); S. Bodegom (네덜란드); Ž. Borzen (크로아티아); D. Collins (미국); R. Cross (호주); J.J. Cubey (영국); D. Donald (영국); K. Donald (영국); M. Dosmann (미국); M. Griffiths (영국); A. Hay (호주); W.L.A. Hettterscheid (네덜란드); M.H.A. Hoffmann (네덜란드); C.D. Holetich (캐나다); H. Iketani (일본); J. Iles (미국); Xiaobai Jin (중국); A.C. Leslie

(영국); V.A. Matthews (영국); L. Miedema (네덜란드); Yoko Otsuki (영국); G. Payton (미국); D. Ross (미국); J.M.H. Shaw (영국); R.P. Trehane (영국); R.G. van den Berg (네덜란드); J. van Scheepen (네덜란드); R. Spencer (호주); F. Vrugtman (캐나다); C. Whitehouse (영국).

위원회는 위의 모든 분들과 Wageningen 심포지엄의 토론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수집된 모든 정보들은 신규약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

2004규약 출판이후 많은 위원들이 위원회에서 퇴임했는데 ICNCP에 수년간 이바지한 그들의 노고에 대해 감사드린다.

개정과정중 재배식물 분류와 관련된 광범위한 국제적인 지식들을 소유하고 규약의 신판 준비에 공헌한 위원회의 신입위원 11명에게도 감사드린다.

편집위원회의 오랜 편집과정동안 모든 상황들을 침착하고 능률적으로 조정한 편집위원회 간사인 Dr Janet Cubey에 의해 더 수월하게 이루어졌다. ICNCP의 신판 준비에 도움을 준 그에게 모든 위원회 회원들을 대신해서 감사를 드린다. 또한 Patty Boardman과 Richard Sanford도 부록과 색인에 도움을 주어 규약 준비에 크게 공헌하였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는 바이다.

끝으로, 국제재배식물명명규약 제8판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해준 편집위원회의 모든 위원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본 규약의 변경을 위한 제안들은 가능하다면 *Hanburyana*에 출판될 것이며, 또한 편집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반드시 보내져야 한다(편집위원회, ICNCP, c/o The Royal Horticultural Society's Garden, Wisley, Woking, Surrey, GU23 6QB, UK or by email to icncp@rhs.org.uk.).

Chris Brickell, IUBS 국제재배식물명명위원회 위원장
겸 ICNCP 편집위원회 위원장.

IUBS 국제재배식물명명위원회 (INTERNATIONAL COMMISSION FOR THE NOMENCLATURE OF CULTIVATED PLANTS)

위원 명단, 2007년 10월

위원장

Mr. C.D. Brickell
The Camber, The Street
Nutbourne, Pulborough
West Sussex, RH20 2HE
United Kingdom

간사

Dr. W.L.A. Hettterscheid
Department of Plant Sciences
Wageningen University
Generaal Foulkesweg 37
6703 BL Wageningen
The Netherlands

Bjorn Alden
Gothenburg botanical garden
Carl Skottsbergs gata 22A
SE-41319 Gothenburg, Sweden

Dr. Crinan Alexander
Royal Botanic Garden Edinburgh
20A Inverleith Row
Edinburgh EH3 5LR
United Kingdom

Dr. B.R. Baum
Agriculture & Agri-Food Canada
960 Carling Avenue
Ottawa, Ontario
Canada K1A 0C6

Ing C. (Kees) van Ettekoven
Naktuinbouw
Sotaweg 22
2371 GD Roelofarendsveen
The Netherlands

Dr. Hugh F. Glen
KwaZulu-Natal Herbarium, SANBI
P O Box 52099, Berea Road, 4007
South Africa

F. Niall Green
Science and Advice for Scottish Agriculture
(SASA)
Roddinglaw Road
Edinburgh EH12 9FJ
United Kingdom

Dr. Hiroyuki Iketani
National Institute of Fruit Tree Sciences
NARO
2-1 Fujimoto
Tsukuba, 305-8605
Japan

Dr. J.C. David
The Royal Horticultural Society's Garden
Wisley, Woking
Surrey, GU23 6QB
United Kingdom

Dr. Valery Malecot
UMR GenHort & dept, Sciences Biologiques
Agrocampus-Ouest Centre d'Angers Institut
National d'Horticulture et de Paysage
2 rue le Notre
49045 Angers Cedex 01
France

Prof. J. McNeill
(appointed by IAPT by IUBS)
Royal Botanic Garden Edinburgh
20A Inverleith Row
Edinburgh EH3 5LR
United Kingdom

Prof. Qibai Zhang
Nanjing Forestry University
Lonpan Road 159
Nanjing 210037, Jiangsu
China

Dr. Roger Spencer
Royal Botanic Gardens
South Yarra, Victoria 3141
Australia

Dr. A.C. Leslie
109 York Street
Cambridge, CB1 2PZ
United Kingdom

Freek Vrugtman
Royal Botanical Gardens
PO Box 399
Hamilton, Ontario
L8N 3H8
Canada

Dr. John H. Wiersema
U.S. Department of Agriculture/Agricultural
Research Service
National Germplasm Resources Laboratory
Bldg. 003, Beltsville Agricultural Research
Center
Beltsville, Maryland 20705-2350
United States of America

Dr. Xiaobai Jin
Institute of Botany
Chinese Academy of Sciences
20 Nanxincun, Xiangshan
Beijing 100093
China

머릿말

규약 제8판은 제7판(2004)의 구성방식과 체계를 모두 유지하였고, 조항(Articles)의 일반 순서는 동일하지만 조항의 추가나 삭제를 고려해 번호를 다르게 붙였다. 비교검색표는 2004 판과 최신판의 규칙(Rules), 주석(Notes), 권고(Recommendations), 절(Divisions) 등의 차이를 12/xii페이지에 수록하였다.

2004규약과 최신판의 차이를 표시하기 위해 제 II-VI 절에서 신조항의 비교목록을 제공하였다.

규약에서 사용된 언어는 분류학자가 아닌 일반 사람들도 이해하기 쉽도록 표시하였다. 중요한 변화는 “구별할 수 있는 식물군”을 대신해 본문에서는 “분류군(taxon)”을 사용한 것인데, 이는 명명을 하는 과정에서 이 표현이 더 적절하고 정확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이 규약에서 “쓴다(write)”라는 동사는 인쇄, 수기, 컴퓨터 등의 방법으로 이름을 표현하는 모든 방법들을 포함한 것으로 해석한다.

이 규약에서 “속(genus)”이라는 것은 속간잡종(nothogenus)과 속간 접목키메라의 속명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본 규약은 영어로 쓰여졌지만, 위원회는 이 규약이 다른 언어와 문자로 번역되어 전 세계 재배식물의 명명에 널리 활용되기를 바란다. 특히 서로 다른 언어학적 관례(linguistic custom)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세계 여러 다른 곳들에서 만들어지고 사용되어지는 단어와 용어들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규약의 더 큰 변화는 계품(grex)을 재배품종(cultivar)과 그룹(group)에 추가시키고 세번째 분류 계급으로 승인한 것인데, 난(orchids)의 경우만 적용되었다. 결과적으로 부모에 근거를 둔 계품내(parent-based grex)에서 형질에 근거를 둔 그룹(character-based Group)을 승인하는 것이 현재 가능하다.

규약의 중요한 일자들에 관한 목록을 갱신한 것 외에도 추가로 ICNCP의 이전 판들의 목록과 출판일자를 제공했다.

서문은 본 규약 출판의 정당성에 대한 개요를 서술하며 다양한 규정들이 작용하는 방법들을 서술한다. 규약의 규칙과 권고들이 전통적으로 식물체로 취급되던 조류와 곰팡이류를 포함한 생물체에도 적용된다.

원칙들은 규약 2004년도 판과 거의 동일하지만, “계품(grex)”항목을 적절한 곳에 포함시켜 수정하였다. 규약 2004년도 판에서 원칙(principle) 4항의 두 번째 단락은 ICNCP에 의해 관리되지 않는 명명 과정을 명시하는 원칙 6항으로 이동을 했다.

상용 명칭(trade designations)의 사용과 형성이 본 규약의 직접적인 관심사가 아닐지라도, 이들을 어떻게 취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권고들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이들은 조항 10과 규약 사용자들을 돕기 위해 제공된 새로운 부록들 중 하나인 부록 10에 제공하였다. 어떤 경우에는 품종 소명이 통상적인 명칭으로 같은 품종에 사용될 수 있다.

규약의 최신판에 소개된 품종, 그룹, 계품의 분류계급을 위한 규칙과 권고의 명명, 형성, 적용과 관련된 변경과 수정사항들은 아래와 같다:-

조항 29 (2004규약의 조항 26)는 명칭의 선택을 다루고 있고 품종, 그룹, 계품 등을 포함하기 위해 확대되었다.

조항 27 (2004규약의 조항 24)은 출판된 시점에 계품의 한 부모의 전체 이름이 알려져 있고, 또 다른 부모의 속명 또는 속간잡종명이 알려져 있거나 명시가 되어있다면 허용된다.

기존의 관행을 따르거나 혼란을 주지 않는다면 그룹 소명은 그룹이 속한 속(屬)의 일반명을 포함할 수 있다.

언어학적 관례에 따라서 품종 소명은 품종이 속한 속(屬)의 일반명을 포함한다. 단, 일본어 소명(Japanese epithets)은 이러한 경우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규약의 규칙에 따라 명칭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공식적인 품종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

새로운 품종 소명을 만들 때 소명 전체가 라틴어로 구성되지 않았다면 라틴어의 사용이 허용된다.

약성어(acronyms)에 마침표를 찍는 것은 권고일 따름이며 필요조건은 아니다.

품종에 느낌표를 사용하는 것은 이들이 서로 인접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허용이 된다.

품종 소명이 속한 생물학적 분류군의 최종 소명을 라틴어 형태로 중복되지 않게 하는 규칙은 현재로서는 권고 사항이다.

품종, 그룹, 계품 명칭 등이 전자목록으로 출판되어도, 목록의 복사본 2부를 인쇄하여 지정된 도

서관에 제출하지 않으면 않된다. 목록의 출판인에게 배부하도록 하는 약속은 권고이며, 이를 실천할 경우 출판인으로서의 승인을 받게 된다. 목록의 일자가 있는 단행본의 복사본을 최소한 다섯 곳의 도서관에 배부하는 것을 권장한다.

복사와 음역: 복사와 음역에 관한 현재 규칙들은 권고사항(recommendations)이 되었는데, 이는 2004년도의 규약에 규정된 개별 시스템(individual systems)의 사용에서 문제점들이 있는 것으로 인정이되었기 때문이다.

명명기준(nomenclatural standards): 명명기준으로 제출된 이미지도 저작권 승인을 권장한다.

새로운 부록: 다음의 새로운 부록들은 2004년도 판 규약의 3개의 부록에 추가되어 갱신 되었는데 참고용으로 준비하였다.

- 명명기준의 보유장소
- 중요 종묘회사 목록을 보유한 도서관
- 유지 또는 기각된 소명의 목록
- 식물의 라틴어 명칭
- 명명법 여과장치(1995년도 규약으로부터 수정 확정됨)
- 새로운 품종 명칭에 대한 빠른 안내
- 상용 명칭
- 명명 기관과 과정에 대한 업무흐름도

ICNCP의 이전 판에서 강조된 것처럼 명명 규약들은 식물 명명하는데 있어서 안정성의 보루로 존재해야 할 것이며 불필요하게 수시로 변경되어서는 아니된다. 그러나 규약들은 발전적인 방향과 관행에 따라 갱신은 필요로 한다.

ICNCP의 본 판이 앞으로 수년 동안 재배식물의 사용자들에게 기준안내서로 확고하게 자리 잡았으면 한다. 적용함에 있어서의 용이함과 사용자들이 지적한 결점들에 대한 피드백은 위원회의 모든 위원들로 부터 크게 환영 받을 것이다.

C.D. Brickell, IUBS 국제재배식물명명위원회 대표
2009년 4월

본 판과 2004년도 판 규약(code)의 비교

검색표는 2004년도 판 규약의 번호가 붙여진 여러 규칙, 주석, 권고, 절 등이 나타나 있으며 본 판의 규정들과 비교를 하였다. 이전 규정들의 의미와 시사점들이 변경 없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만은 아니다.

2004	2009	3.4	3.4	13.2	14.2
Div II	Div II	3.5	3.5	13.3	14.3
1.1	1.1	3.6	4.3	14.1	15.1
1.2	1.3	3.7	4.4	14.2	15.2
1A.1	1A.1	4.1	5.1	14.3	deleted
2.1	2.1	5.1	6.1	14.4	15.3
2.2	2.3	5.2	6.2	14.5	16.2
2.Nt.1	2.Nt.1	5.Nt.1	6.Nt.1	14.6	16.3
2.Nt.2	2.Nt.2	5.3	6.3	15.1	17.1
2.Nt.3	2.Nt.3	5.4	6.4	15A.1	17.3
2.3	2.2	5.5	6.5	16.1	18.1
2.Nt.4	2.Nt.4	6.1	7.1	16.2	18.2
2.4	2.4	7.1	8.1	17.1	19.1
2.5	2.5	7.Nt.1	8.Nt.1	17.2	19.2
2.6	2.6	7.2	8.3	17.3	19.3
2.7	2.7	7.3	8.4	18.1	20.1
2.8	2.8	7A.1	8A.1	18.2	20.2
2.9	2.10	8.1	9.1	19.1	21.1
2.10	2.11	8.2	9.2	19.2	21.2
2.11	2.12	9.1	10.1	19.3	21.3
2.12	2.14	9.Nt.1	10.Nt.1	19.4	21.21
2.13	2.15	10.1	11.1	19.5	21.4
2.14	2.16	10.2	11.4	19.6	21.5
2.15	2.13	10.3	11.5	19.7	21.6
2.16	2.19	10.4	11.6	19.Nt.1	21.Nt.2
2.Nt.5	2.Nt.5	10.5	11.7	19.8	21B.1
2.17	2.20	10.6	11.8	19.9	21.7
2.18	2.21	11.1	12.1	19.10	21.8
2.19	2.22	12.1	13.1	19.11	21.9
2.20	2.23	12.2	13.2	19.12	21.10
3.1	3.1	12.3	17.2	19.13	21.11
3.2	3.3	12A.1	deleted	19.14	21.12
3.Nt.1	3.Nt.1	13.1	14.1	19.15	21.13
3.Nt.2	3.Nt.2	13.Nt.1	14.Nt.1	19.16	21.15
3.3	deleted	13.Nt.2	14.Nt.2	19.17	21.14

19.18	21B.1	24.3	27.3	31.1	34B.1
19.19	21.16	24.4	27.5	31.2	34C.1
19.20	21.17	24.Nt.1	27.Nt.1	31.3	34D.1
19.21	21.18	24.5	27.6	31.4	34D.2
19.22	21.19	24.Nt.2	27.Nt.2	32.1	35.1
19.23	21.20	24.6	27.7	32.2	35.2
19.24	21.22	24.7	27.8	32.3	35.3
19.25	21.23	24A.1	27A.1	32.4	35.4
19.26	21.24	24B.1	27B.1	32.5	35.5
19.27	21.25	24C.1	27C.1	32.6	35.6
19.Nt.2	21.Nt.3	24D.1	27D.1	32.7	35.7
19A.1	21D.1	24E.1	27F.1	32.8	35.8
19B.1	21E.1	24F.1	27G.1	32.9	35.9
19C.1	21F.1	24G.1	27H.1	32.10	35.10
19D.1	21G.1	25.1	28.1	32.11	35B.1
19E.1	21H.1	25.2	28.2	32.12	35.11
19F.1	21I.1	25.3	28.3	32.13	35.12
19G.1	21J.1	25.4	28.4	32.14	35.13
19H.1	21K.1	25.5	28.5	32.15	35.14
20.1	22.1	25A.1	28A.1	32A.1	35A.1
20.2	22.2	26.1	29.1	Div III	Div III
20.3	22.3	26.2	29.2	Div III, 1	Div III, 1
20.4	22.4	26.3	29.3	Div III, 2	Div III, 2
20.5	22.6	26.4	29.4	Div III, 3	Div III, 3
20A.1	22A.1	26A.1	29A.1	Div III, 4	Div III, 4
21.1	24.1	27.1	30.1	Div III, 5	Div III, 5
21.2	24.2	27.Nt.1	30.Nt.1	Div III, 6	Div III, 6
21.3	24.3	27.2	30.2	Div III, 7	Div III, 7
21.4	24.4	27.3	30.3	Div III, 8	Div III, 8
21.5	24.5	27.4	30.4	Div III, 9	Div III, 9
21.6	24.6	27.5	30.5	Div III, 10	Div III, 10
22.1	25.1	28.1	31.1	Div III, 11	Div III, 11
22.Nt.1	25.Nt.1	28.2	31.2	Div III, 12	Div III, 12
22.Nt.2	25.Nt.2	28.3	31.3	Div III, 13	Div III, 13
22.2	25.2	28.4	31.4	Div III, 14	Div III, 14
22.3	25.3	28.5	31.5	Div IV	Div IV
22A.1	25A.1	29.1	32.1	Div IV, 1	Div IV, 1
22B.1	25B.1	29.Nt.1	32.Nt.1	Div IV, 2	Div IV, 2
23.1	26.1	29.2	32.2	Div IV, 3	Div IV, 3
23.2	26.2	29.Nt.2	32.Nt.2	Div IV, 4	Div IV, 5
23.3	26.3	29.3	deleted	Div IV, 5	Div IV, 6
23.4	26.4	30.1	33.1	Div IV, 6	Div IV, 7
24.1	27.1	30.2	33A.1	Div IV, 7	Div IV, 8
24.2	27.2	30.Nt.1	33.Nt.2	Div V	Div V

Div V, 1	Div V, 2
Div V, Nt.1	Div V, Nt.1
Div V, Nt.2	Div V, Nt.2
Div V, 2	Div V, 2
Div V, 3	Div V, 3
Div V, 4	Div V, 4
Div V, 5	Div V, 5
Div V, 6	Div V, 6
Div V, Nt.3	Div V, Nt.8
Div V, 7	Div V, 7
Div V, 8	Div V, 8
Div V, 9	Div V, 9
Div V, 10	Div V, 10
Div V, Nt.4	Div V, Nt.9
Div V, 11	Div V, 11
Div V, 12	Div V, 12
Div V, 13	Div V, 13
Div V, 14	Div V, 14
Div VI	Div VI

새로운 규정(Provisions)

다음은 본판의 제 II-VI 절에 나오는 새로운 규정들이다. 별표로 표시된 것들은 난의 계층 명명법과 관련이 있다.

ART	
1,2	23,5*
2,9	23,Nt.1
2,17	23,Nt.2
2,18	23,Nt.3
3,2	23A,1*
4,1*	25B,2
4,2*	25B,3
4,Nt.1*	26,Nt.1
4,Nt.2*	26A,1
8,Nt.2	27,4*
8,2*	27D,2
8,Nt.3	27E,1
9,Nt.1	27F,2
11,2	28,6
11,Nt.1	31,6
11,3	31,7
13,Nt.1	31,8
16,1*	31,Nt.1
16,4*	33,Nt.1
17,Nt.1	33,Nt.3
18,3	34,1
21,Nt.1	34,Nt.1
21A,1	34A,1
21C,1	Div IV, 4
22,Nt.1	Div V, Nt.3
22,5	Div V, Nt.4
23,1*	Div V, Nt.5
23,2*	Div V, Nt.6
23,3*	Div V, Nt.7
23,4*	

본 규약(CODE)의 주요 일자

본 규약(CODE) 특별 규정들의 효력이 발생한 일자들이다. 본 규약의 규칙들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효력이 소급되어 적용된다. 규칙들은 왼쪽에 기입된 날짜로부터 효력이 발생되었다.

1 May 1753	Art. 18,1 Art. 18,3
2 January 1858	Art. 18,2
1 January 1900	Art. 25,2
1 January 1953	Art. 25,3 Div III, 13
1 January 1959	Art. 21,6 Art. 21,7 Art. 21,11 Art. 21,16 Art. 21,22 Art. 21,24 Art. 26,1 Art. 27,1
1 January 1973	Art. 25,3 Div III, 13
1 January 1996	Art. 21,13 Art. 21,17 Art. 21,18 Art. 21,20 Art. 21,23
1 January 2004	Art. 21,15 Art. 22,6 Div V, 5 Div V, 6
1 January 2010	Art. 23,5

본 규약의 이전 출판물

1 st	Published by the RHS as a booklet: 29 pp Stearn, W.T.	1953
2 nd	<i>Regnum Vegetabile</i> 10: 28 pp Fletcher, H.R., Gilmour, J.S.L., Lawrence, G.H.M., Little, Jr, E.L., Nilsson-Leissner, G. & de Vilmorin, R.	1958
3 rd	<i>Regnum Vegetabile</i> 22: 30 pp Fletcher, H.R., Gilmour, J.S.L., Lawrence, G.H.M., Matthews, J.D., Nilsson-Leissner, G. & de Vilmorin, R.	1961
4 th	<i>Regnum Vegetabile</i> 64: 32 pp Gilmour, J.S.L., Horne, F.R., Little Jr, E.L., Stafleu, F.A. & Richens, R.H.	1969
5 th	<i>Regnum Vegetabile</i> 104: 32 pp Brickell, C.D., Voss, E.G., Kelley, A.F., Schneider, F. & Richens, R.H.	1980
6 th	<i>Regnum Vegetabile</i> 133: 175 pp Trehane, P., Brickell, C.D., Baum, B.R., Hetterscheid, W.L.A., Leslie, A.C., McNeill, J., Spongberg, S.A. & Vrugtman, F.	1995
7 th	<i>Acta Horticulturae</i> 647: 123 pp <i>Regnum Vegetabile</i> 144 Brickell, C.D., Baum, B.R., Hetterscheid, W.L.A., Leslie, A.C., McNeill, J., Trehane, P., Vrugtman, F. & Wiersema, J.H.	2004



국제재배식물명명규약

(International Code of Nomenclature for
Cultivated Plants)

서문

1. 농업, 임업, 원예 분야(discipline)는 정확하고 안정적이며 쉬우면서도 국제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는 식물명명 체계가 필요하다. 이 체계는 분류학적으로 구별이 가능한 다양한 부류의 식물군(taxa 복수; taxon 단수/ 분류군)의 용어와 이런 그룹의 명칭 형성과정을 모두 다뤄야 한다. 분류군을 명명하는 목적은 형질이나 역사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적용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그들이 속한 분류계급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규약은 재배식물¹⁾ 중 분류군의 명명에 관한 안정적인 방법의 규정을 목표로 하고 오류나 애매함을 야기하는 명칭의 사용은 피하거나 인정하지 않으며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의 관행에 따르고 불필요한 이름의 생성을 피하는 것이다.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문법의 정확성과 소명의 규칙성이나 발음상 편의 그리고 사용자에 대한 배려 등이다.
2. 본 규약 체계의 원칙은 재배식물의 명명체계에 관한 기준이 된다.
3. 상세한 규정들은 규칙으로 나누어지고, 조항(article)과 권고(recommendation)로 정리된다. 주석(note)은 보조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예문(example)들은 규칙과 권고를 예증해주기 위해 추가되었다.
4. 규칙의 목표는 과거의 명칭들을 정리하고 미래의 명칭들을 제공하는 것이다.
5. 권고란 부수적인 것들을 다루고 특히 미래에 명명하는 경우 균일함과 명백함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권고에 어긋나는 명칭들은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 권고를 따르도록 해야 한다.
6. 본 규약의 마지막 절(division)은 수정/변경에 관한 규정으로 구성된다.

1) 이들은 재배종 의도적이거나 우연한 교배로 인해 생긴 식물, 기존 재배식물체에서의 선발, 야생집단 내에서 식별이 가능한 것으로 지속적인 번식으로만 유지되고 있는 것 중 발생한 변이종 등으로부터 선발된다. 이러한 형태의 식물들은 때때로 재배종(cultigen)이라 부른다.

7. 규칙과 권고는 전통적으로 식물(조류와 곰팡이를 포함)로 취급하는 생물체에 적용되고 이의 기원(origin)과 선발(selection)과정은 전적으로 의도적인 사람의 활동에 기인한다.
8. 국제식물명명규약²⁾은 전통적으로 식물로 취급되는 모든 생물체의 분류군중 명칭이 본 규약에 의해 관리되지 않는 것들은 라틴어 형태로 제공한다.
9. 분류군의 명칭을 변경해야 이유는 적절한 분류연구에 의해 얻어진 사실로부터 얻어진 깊은 지식이나 규약의 규칙에 어긋나서 명칭을 포기해야하는 경우이다.
10. 적절한 규칙이 없거나 규칙의 결과가 불확실 할 경우에는 기존의 관행을 따르도록 한다.
11. 규약을 번역 할 때에 그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원래의 영어 원문을 정확한 것으로 본다.
12. 이번에 개정된 규약은 이전의 모든 것들을 대체한다.

2) 최신판: McNeill, J., Barrie, F. R., Burdet, H. M., Demoulin, V., Hawksworth, D. L., Marhold, K., Nicolson, D. H., Prado, J., Silva, P. C., Skog, J. E., Wiersema, J. H., & Turland, N. J. (eds.) 2006. *International Code of Botanical Nomenclature (Vienna Code) adopted by the Seventeenth International Botanical Congress Vienna, Austria, July 2005*. A. R. G. Gantner Verlag, Ruggell, Liechtenstein, [Regnum Veg. 146] (전자판: <http://ibot.sav.sk/icbn/main.htm>).

제 I 절: 원칙(Principle)

원칙 1

정확하고 안정적이며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재배식물의 명명체계는 국제적인 이해와 의사소통을 위해 필수적이다. 재배식물규약으로도 알려진 국제재배식물명명규약(ICNCP)인 본 규약의 목적은 농업, 임업, 원예식물 등을 명명하는데 있어서 균일성(uniformity), 정확성(accuracy), 안정성(stability)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원칙 2

국제식물명명규약(*International Code of Botanical Nomenclature, ICBN/ Botanical Code*)은 식물의 라틴어 형태의 명칭들을 관리한다. 단, 속간 접목키메라의 속명들은 전적으로 본 규약에 의해 관리된다.

기원과 선발이 사람의 의도적인 활동에 기인하는 식물분류군은 본 규약의 규정에 따라 형성된 명칭이 부여 될 것이다. 예외적으로 명칭에 라틴어 부분이 있는 형태의 명칭들은 *ICBN*에 의해 관리되지만 품종, 그룹, 계품의 분류계급에서는 명칭의 명명법이 본 규약에 의해서만 관리된다.

원칙 3

본 규약에 의해 관리되는 분류군의 명명은 출판의 선취권에 근거를 둔다. 특정 범위의 각 품종이나 그룹, 특정 계통을 갖은 각 계품 등은 오직 하나의 채택명³⁾(accepted name)을 가지게 된다. 채택명은 본 규약 내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규칙과 가장 빨리 일치하는 명칭이다.

원칙 4

본 규약에 의해 관리되는 식물의 명칭은 그 누구라도 분류군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널리 그리고 자유롭게 이용될 수 있어야 한다.

3) 특정 상황(specific circumstances)을 제외하고 채택이 된 재배 품종(Cultivar), 그룹(Group), 계품(Grex), 속간 접목키메라(intergeneric graft-chimera)의 초기 명칭(*ICNCP* 조항 11.1)

원칙 5

본 규약은 본 규약에 의해 관리되는 분류군의 분류범주에 사용되는 전문용어와 이러한 각각의 분류군에 적용되는 명칭들을 관리한다.

국가목록이나 식물육종가권리(식물변종권리)에 제공되는 국내 또는 국제 법령에 따라, 명칭들은 그런 법령에 특별한 전문용어를 사용하는 식물분류군을 위해 수립된다. 본 규약은 그러한 전문용어의 사용이나 명칭의 형성을 관리하지 않는다. 하지만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이러한 법령내에서 형성된 명칭은 이 규약의 규정에 따라 형성된 이름보다 우선한다.

원칙 6

식물 분류군의 명칭을 적합하게 수립하는 것과 더불어 마케팅 방법으로서의 상용 명칭(trade designations) 적용의 실행은 본 규약에 의해 지원되지 않는다. 그런 명칭들은 본 규약에 의해 관리되는 명칭으로서 인정되지 않는다.

식물들은 때때로 상표(trademarks)로 거래된다. 그런 상표는 개인이나 법인체의 지적재산이므로 다른 사람들에 의해 자유롭게 이용될 수가 없다; 결과적으로 본 규약에 의해 관리되는 명칭으로 고려될 수가 없다.

원칙 7

식물의 일반명의 형성과 사용은 본 규약에 의해 관리되지 않는다.

원칙 8

품종, 그룹, 계품명의 국제등록과 그런 명칭 목록의 출판과 장려는 재배식물 명칭의 균일성, 정확성, 안정성을 높이는데 매우 중요하다.

원칙 9

명명법 기준에 맞는 명칭의 선발, 유지, 출판은 품종이나 그룹의 명칭 적용을 안정화 시키는데 매우 중요하다. 특정 명칭들은 명칭의 명확하고 정확한 적용과 그러한 명칭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명명법 기준을 따르게 된다. 명칭의 수립을 위한 요건이 없을지라도, 그러한 기준에 맞는 명칭은 적극 권장이 된다.

원칙 10

본 규약은 재배식물의 명명과 관련되고 자유로운 승인으로부터 얻어진 것들 이외에는 효력이 없다. 그러나 본 규약의 규칙과 권고들은 재배식물 명칭의 사용과 형성에 책임이 있는 모든 이들로 부터 지지를 받고 적용이 되어야 한다.

원칙 11

본 규약의 규정들은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법적 효력은 소급하여 적용이 된다.

제 II 절: 규칙과 권고(Rules and Recommendations)

제 I 장: 일반 규정(General Provisions)

조항 1: 국제식물명명규약(ICBN)과의 관계

1.1. 재배 식물들은 최소, 속이나 종 또는 그 이하 수준에서 국제식물명명규약에 따라 명명이 된다.

1.2. 품종, 그룹, 계품으로 승인될 수 있는 기준에 알맞는 재배식물들은 본 규약에 따라 소명이 주어지고 ICBN하에 명명된 분류군으로 지정된다(조항 21.2, 조항 22.1, 조항 23.1 참고).

1.3. 재배하는 동안에 발생한 것들을 포함해서 분류군 사이에 얻어진 잡종은 ICBN의 부록 I에 제공된 명칭을 받는다(“잡종의 명칭”; 본 규약의 제 3절 참고). 교배에 의해 얻어진 재배식물들은 본 규약의 규정에 따라 품종, 그룹, 계품으로 명명된다.

예. 1. *Solanum × procurrens*은 European *S. nigrum*과 South American *S. physalifolium* 사이의 잡종으로 영국의 재배지에서 발생하였고 ICBN에 의해 명명되었다.

예. 2. *Hypericum × inodorum*은 *H. androsaemum*과 *H. hircinum*사이의 잡종으로 두 종이 야생과 재배지의 맞닿는 곳에서 발생하여 ICBN에 의해 명명되었다.

예. 3. *Lycaste × smeeana* (*L. deppei* × *L. skinneri*)는 자연적으로 출현된 잡종이다; *Calanthe × dominyi* (*C. masuca* × *C. triplicata*)는 재배 과정에서 발생한 잡종이다.

예. 4. *Victoria amazonica*와 *V. cruziana*의 화분친 *V. amazonica*의 반복적인 교배에 의해 얻어진 자손은 품종의 기준에 적합하고(조항 2.3) *V. ‘Longwood Hybrid’*의 명칭이 주어진다; 마찬가지로 화분친 *V. cruziana*의 교배에 의해 얻어지고 앞의 교배로 얻어진 자손과 일관되게 구별되는 자손은 *V. ‘Adventure’*의 명칭이 주어진다(*Pond & Garden* 1(4): 20–23, 1999 참고). 이러한 잡종들은 ICBN의 규정에 따라 명명되지 않는다.

권고 1A

1A.1. 품종, 그룹, 계품으로 승인될 수 있는 기준에 적합한 재배식물들은 ICBN의 규정이 아닌 본 규약의 규정들에 따라서 명명이 되어야 한다.

제 II 장: 정의

조항 2: 재배품종(The Cultivar)

2.1. 재배 식물의 분류계급 중 품종은 본 규약에 의해 명명법이 관리된다. 이러한 분류계급의 명칭 형성과 관련된 규칙들은 본 규약의 조항 21에 제시된 바와 같다.

주석 1. 생물학적 분류계급 *varietas* (var.)와 *forma* (f.)는 재배 품종과 같지 않으며, 이러한 용어들은 무의식적으로 “품종”과 같은 용어로 취급해서는 아니 된다.

2.2. 영어단어 “variety(변종)”, “form(품종)”, “strain(계통)”이나 이들과 동의어인 다른 언어의 것들은 본 규약의 조항을 실행하거나 본 규약을 번역할 때 품종이라는 단어로 사용하지 않는다.

주석 2. 영어의 “variety”, 프랑스어의 “variété”, 스페인어의 “variedad”, 포르투갈어의 “variedade”, 이탈리아어의 “varietà”, 네덜란드어 “ras”, 독일어의 “Sorte”, 스칸디나비아어나 러시아어의 “sort”, 중국어의 “pinzhong”, 일본어의 “engei-hinshu”, 그리고 다른 언어로 이와 상응하는 용어들은 품종이라는 단어와 일반적인 동의어로 사용된다.

주석 3. 영어의 “form” (재배나 정원형태의 의미), 독일어의 “Form”, 프랑스어의 “forme”, 스페인어의 “forma” 등은 때때로 “품종”이라는 단어와 일반적인 동의어로 사용된다.

주석 4. 조항 2.2에도 불구하고 신뢰 할만한 국내·국제 법령이나 다른 법률상의 규약에서 “variety”나 다른 언어로 이와 대응되는 단어는 법으로 명시되거나 법률용어이며, 구별 가능하고, 균일하고, 안정적인 것으로 증명된 변이종을 명명하는데 사용되며 본 규약에 “품종(cultivar)”으로 정의된 단어에 해당된다.

2.3. 품종은 식물의 집합체이며 (a) 특정한 형질이나 형질의 조합에 의해 선발이 되고 (b) 이러한 형질들은 확실하게 구별이 되고, 균일할 뿐만 아니라 안정적이며 (c) 적합한 방법으로 번식이 될 때 고유 형질들이 유지된다(조항 9.1 주석 1 참고).

2.4. 품종들은 기원과 번식의 형태가 다르며 조항 2.5–2.19에 그러한 예들이 기술되었다. 어떤 방법으로 번식하든지 간에 특정 품종이 나타내는 형질들이 유지되는 식물들만 그 품종 내에 포함 이 된다.

2.5. 동일한 복제 식물(식물의 어느 부분에서든 무성번식된 것)은 품종으로서 형성이 된다.

예. 1. *Asparagus officinalis* 'Calet', *Fraxinus pennsylvanica* 'Newport', *Gerbera* 'Delphi', *Salix alba* 'Lieveldé', *Salix matsudana* 'Tortuosa', *Solanum tuberosum* 'Wilja', *Syringa vulgaris* 'Andenken an Ludwig Spath', *Tulipa* 'Apeldoorn' 등은 복제된 품종이다.

2.6. Topophysic clone(식물의 특정 부위에서 무성으로 발생한 것) 식물은 품종을 형성한다.

예. 2. *Abies amabilis* 'Spreading Star'와 *Abies koreana* 'Prostrate Beauty'는 부모친의 측생 분지에서 발생하였다.

2.7. Cyclophysic clone(식물의 생장주기 중 특정 단계에 무성으로 발생한 것)의 식물들은 품종으로서 인정이 된다.

예. 3. *Ficus binnendijkii*의 품종 'Amstel King', 'Amstel Queen', 'Alii'는 모두 피침형 잎을 가진 종의 유년형이며 성년형은 타원형이다; *Chamaecyparis lawsoniana* 'Ellwoodii'는 유년의 삼수로부터 발생하고 *Hedera helix* 'Arborescens'는 성년의 삼수로부터 발생한다.

2.8. 이상생장으로부터 발생한 복제 식물들은 품종으로서 형성이 된다.

예. 4. *Picea abies* 'Little Gem'은 *P. abies* 'Nidiformis'에서 발견된 빗자루병의 발생으로 왜화된 식물이며 빗자루병 자체는 *P. abies*의 식물에서 발견되었다.

2.9. 세포내 미생물에 의해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발생한 식물의 형질은 품종을 형성한다.

예. 5. *Syringa* 'Charisma'은 파이토플라스마에 기인된 *Syringa* 'Royalty'의 빗자루병으로 인해 발생한 품종이다. 안정적인 포터바이러스의 존재에 의해 기인된 형질은 *Iris unguicularis* 'Kilndown'과 구별하는데 사용된다.

2.10. 동일한 키메라(일반 조직과 근연 관계의 하나 이상의 돌연변이 조직을 가짐) 식물들은 품종을 형성한다.

예. 6. *Acer platanoides* 'Drummondii', *Daphne* × *burkwoodii* 'Carol Mackie', *Filipendula ulmaria* 'Variegata', *Ilex myrtifolia* 'Aurea', *Juniperus chinensis* 'Plumosa Aureovariegata', *Pelargonium* 'Freak of Nature', potato 'Red Craigs Royal', *Salvia officinalis* 'Tricolor', *Spiraea japonica* 'Anthony Waterer', and *Vinca major* 'Variegata' 등은 키메라이며 이들의 형질들은 돌연변이 조직의 비율에 영향을 받는다.

2.11. 동일한 접목키메라(근연 관계의 두 개 이상의 다른 분류 단위의 영양조직으로 구성되고 접

목에 의해 일어남)의 식물들은 품종을 형성한다(조항 5.1도 참고).

예. 7. + *Crataegomespilus* 'Dardarii'는 *Crataegus monogyna*와 *Mespilus germanica*의 조직을 결합한다; *Syringa* 'Correlata'는 *S. chinensis*과 *S. vulgaris*의 조직을 결합한다.

2.12. 방임수분에 의해 발생한 종자로부터 성장한 식물개체들의 집합체는 조항 2.3에 규정된 기준에 적합하고, 집합체의 식물개체들이 유전적으로 반드시 균일하지 않더라도 한 개 이상의 형질들이 지속적으로 구별될 수 있으면 품종을 형성한다.

예. 8. *Ballota nigra* 'Archer's Variety', *Delphinium* 'Astolat', *Geum* 'Lady Stratheden', *Lavatera* 'Ice Cool', *Milium effusum* 'Aureum', *Verbena hastata* 'Rosea', *Viola* 'Penny Black' 등은 종자로부터 번식된 품종들이다.

예. 9. 노란 열매를 가진 *Viburnum opulus* 'Xanthocarpum'의 종자들이 파종되면, 얻어진 묘의 일부는 부모친 식물과 구별이 안된다; 그러한 자손은 동일한 품종의 부분으로 취급한다.

예. 10. 종자로부터 성장한 *Betula pendula* 'Penla', *Hippophae rhamnoides* 'Ram', *Larix kaempferi* 'Palsgard Velling', *Rosa carolina* 'Indabes' 등은 지리적 출처가 밝혀진 식물로부터 선발한다.

2.13. 재차 특정 산지에서 종자가 수집되어 성장하고 한 개 이상의 형질이 명확하게 구별되는 (topovariant) 식물의 집합체는 품종을 형성한다.

예. 11. 네덜란드 Gortel-1 산지의 *Picea abies*, Veberod로 불려지고 종자산지가 스웨덴인 백색 꽃의 *Syringa vulgaris*, 특히 빨리 성장한 집단으로부터 선발된 *Eucalyptus camaldulensis* 등의 식물들이 구별될 수 있다면 품종으로 취급할 수 있다.

2.14. 한 계통(반복적인 자가수정이나 근친교배의 결과로 얻어진 것)의 식물들은 품종을 형성한다.

예. 12. *Beta vulgaris* 'SP6 926-0', *Helianthus annuus* 'HA306', *Lactuca sativa* 'Kagraner Sommer', *Phaseolus vulgaris* 'Contender', *Triticum aestivum* 'Marquis', *Zea mays* 'Wisconsin 153'은 모두 계통이다.

2.15. 다계⁴⁾(밀접하게 관련된 여러 계통으로부터 형성된 것)의 식물들은 품종을 형성한다.

4) 몇몇 근연 계통으로 구성된 품종을 기술하기 위해 사용되는 식물 육종 용어(ICNCP 조항 2.15)

예. 13. *Agropyron intermedium* 'Clarke', *Asparagus officinalis* 'Lucullus', *Glycine max* 'Jupiter-R', *Lotus corniculatus* 'Cree', *Macroptilium atropurpureum* 'Aztec', *Trifolium repens* 'Star'는 모두 다계이다.

2.16. 동일한 F₁ 잡종(두 순종 계통간의 계획적이며 반복적인 단교배에 의해 얻어진 결과)의 식물들은 품종을 형성 한다.

예. 14. *Brassica oleracea* 'King Arthur', *Capsicum annum* 'Delight', *Sorghum bicolor* 'Texas 610'은 모두 F₁ 잡종이다.

2.17. 배수성 수준의 변화로 발생된 식물들은 품종을 형성한다.

예. 15. *Lilium* 'Tetra Brandywine'은 4배체(2n=48) 복제 식물이며, 보다 큰 꽃, 두꺼운 화피, 튼튼한 줄기를 갖는 2배체인 *L.* 'Brandywine'(2n=24)로부터 발생한다.

2.18. 제 2세대와 무수정결실에 의한 번식 결과로 유전적 구성과 특성이 유지되는 F₁ 잡종을 포함하여, 무수정결실 식물은 품종을 형성한다.

예. 16. *Cenchrus ciliaris* 'Higgins', *Eragrostis curvula* 'Catalina', *Poa pratensis* 'Baron'과 *Hypericum perforatum* 'Topaz'는 무수정 결실 품종들이다; 무수정 결실 잡종은 *Zea mays* 식물의 무수정 결실 특성을 갖는 *Tripsacum dactyloides*의 식물들을 교배하여 얻어지며 품종 명칭이 주어진다.

2.19. 유전자가 조작된 식물들의 집합체는 다른 생식질로부터의 계획적인 유전물질 주입에 의해 새로운 형질을 보여주며 품종을 형성한다.

주석 5. 실제로 그런 집합체는 유전자가 조작된 한 개 이상의 계통이나 다계로부터 종종 판매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계통이나 다계는 일정한 발달 상태에 자주 남아있는데 집합체를 품종으로 명명하는 작업을 헛되게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러한 집합체는 상표로서 판매가 된다.

2.20. 두 개 이상의 식물들이 같거나 다른 품종에 속하는지를 고려하는데 있어서 이들의 기원은 상관없이 없다. 그룹의 품종 결정을 위해서 현재 채택된 방식으로도 구별할 수 없는 품종들은 하나의 품종으로 취급한다.

예. 17. *Pittosporum* 'Garnettii' 가지의 아조변이부터 발생한 몇몇 품종들은 체세포 돌연변이들이 서로 다른 시기와 장소에서 발생하였더라도 구별할 수가 없으므로 하나의 품종으로 취급한다. 뉴질랜드에서 유래한 *Pittosporum* 'Margaret Turnbull'은 아일랜드에서 나온 *P.* 'John

Flanagan'과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Pittosporum*의 국제품종등록기관(International Cultivar Registration Authority)은 *P.* 'Margaret Turnbull'을 채택명으로, *P.* 'John Flanagan'을 이명으로 채택하고 있다.

예. 18. *Dianthus* 'William Sim'은 구별되는 돌연변이들을 생산하고 그 이상의 돌연변이 과정은 *D.* 'William Sim'로부터 구별할 수 없는 다양한 변이형들을 만든다.

2.21. 어떤 품종에 있어서 번식법의 변화가 그 품종을 구별하는 일련의 특성에 변화가 있다면 변형된 방법으로 생산된 식물은 같은 품종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예. 19. 겹꽃의 *Campanula trachelium* 'Bernice'는 보통 영양번식을 한다. 종자로부터 성장하는 경우, 초장, 복제정도, 색깔 등이 다른 식물들이 생산된다. 각각의 식물들이 이 품종과 구별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종자로부터 나온 식물은 *Campanula trachelium* 'Bernice'와 같다고 할 수가 없으며, 그렇게 명명되지도 않는다.

예. 20. *Cereus hildmannianus* 'Monstrosus'는 선인장의 기형으로서 일반적으로 삽목에 의해 증식이 된다. 그러나 실생묘의 일부는 특이한(monstrose) 형태가 나타난다. 어떤 번식방법이 선택되든지 간에 품종을 형성하는 특이한 식물은 동일한 명칭이 적용된다. 정상적인 식물들은 종 단위에서 구별할 수 없는 것으로 취급한다.

예. 21. *Hosta* 'Halcyon'은 영양번식을 하는데 기내에서 미세번식에 의해 증식하면 다수의 돌연변이가 발생한다. 이들 중 하나를 분리 증식하여 *H.* 'June'이 되었다.

2.22. 대목이 품종이면 거기에 따라서 명명이 된다. 접수를 대목이나 중간대목에 접목하여 얻어진 식물의 경우에는 접수에 따라서 명명된다.

예. 22. 특정 대목에 의해 나타난 왜성 효과임에도 불구하고 *Malus domestica* 'James Grieve'은 *M. domestica* 'M9'로 알려진 대목에 접목되더라도 종소명은 'James Grieve'를 유지 한다.

예. 23. 다른 속의 대목에 의해 반왜성 효과가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Pyrus communis* 'Merton Pride'는 모과의 대목 *Cydonia oblonga* 'Malling C'에 접목하더라도 명칭은 *Pyrus communis* 'Merton Pride'를 유지 하게 된다.

예. 24. *Corylus avellana* (European hazel)의 품종이 *C. colurna* (Turkish hazel)의 대목에 접목되게 되면 그 결과로 얻어진 식물은 *C. avellana*의 품종으로 간주한다.

2.23. 특성이 재배 상의 규칙적인 관리만으로도 계속 유지되는 식물은 다른 품종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예. 25. 에스팔리에(espaliers)로 가꾸어진 사과는 나무로 성장한 것과 동일한 명칭이 유지된다; *Buxus sempervirens*의 토피어리 표본은 원래의 품종을 포함하여 새로운 품종 명칭을 부여받지 않는다. 단, 분재 식물은 유래된 식물의 원래 명칭을 유지한다.

조항 3: 그룹(The Group)

3.1. 그룹은 정의된 형질을 중심으로 유사함을 근거로 하고 품종, 개별 식물들, 조합으로 구성된 형식상의 범주이다. 식물 그룹의 명칭과 관련된 규칙들은 본 규약의 조항 22에 제시된 바와 같다.

3.2. 그룹을 형성, 유지하는 기준은 특정한 사용자의 요구 목적에 따라서 다르다. 그룹의 모든 구성 요건들은 그룹으로서 정의된 형질이 공유되어야 한다.

예. 1. 프리물라의 경우, 품종 ‘MacWatt’s Blue’, ‘Old Irish Scented’, ‘Osborne Green’은 동일한 실외 환경에서 가장 잘 자라는데, *Primula* Border Auricula 그룹의 집합체가 된다(B. Hyatt, *Auriculas* 86, 1989 참고).

예. 2. *Iris* Dutch 그룹은 주로 *I. tingitana*, *I. xiphium* var. *lusitanica*, *I. xiphium* var. *praecox*로부터 발생한 조기개화 품종의 집합체를 포함한다(히야신스를 비롯한 각종 구근류의 국제 일람표(International checklist for hyacinths and miscellaneous bulbs 301, 1991)참고).

예. 3. *Festuca rubra*의 품종은 세 개의 그룹으로 구분된다. 6배체의 비포복성 그룹, 6배체의 포복성 그룹, 8배체의 포복성 그룹이며, 이들은 각기 다른 일련의 형질을 가지고 있다(R. Duyvendak et al., *Rasen Turf Gazon* 3: 53–62, 1981 참고).

3.3. 종(種) 수준 또는 그 이하의 분류군은 식물학에서 더 이상 분류학적 가치(taxonomic value)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하지만 농업, 원예, 임학 분류에서는 그룹을 지정하는데 있어서 지속적으로 유용하다.

예. 4. 지속적으로 원예학적 가치가 있는 *R. boothii*에서 인지되는 변이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Rhododendron boothii* Mishmiense 그룹은 현재 *R. boothii*의 이명표에 기재된 종인 *R. mishmiense*에 근거를 둔다. (영국원예학회, The Royal Horticultural Society, *An alphabetical checklist of rhododendron species* 1981 참고).

예. 5. *Hosta fortunei*가 더 이상 종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이전에 그 종으로 지정되었던 종들을 지속적으로 집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종속명 “fortunei”는 *H. Fortunei*

그룹을 형성하기 위해 이용 될 수 있다.

예. 6. *Brassica oleracea* var. *sabauda*(1753년 Linnaeus에 의해 출판됨)가 더 이상 종내 변종(varietas, var.) 수준에서 종내 분류군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면 *Brassica oleracea* Sabauda 그룹으로 한다.

주석 1. 저자들은 “그룹”과 같은 의미의 용어로 “종류”, “명명기준”, “선발”, “잡종” 등의 다른 명칭들을 사용한다; 그러한 용어들은 “그룹”으로 대신 될 수 있다.

예. 7. *Brachyglottis* Dunedin 잡종은(Senecio속 하) 분류학적 등급이 확실하지 않은 종들의 교배에 의해서 얻어진 동일한 식물들을 논문집에 포함시키기 위해 D. L. Clarke에 의해 기술되었다(Beans, *Trees and shrubs hardy in the British Isles*, ed. 8, 4: 350, 1980). 후대가 그룹을 형성하는 것으로 승인되게 될 경우, 명칭은 *Brachyglottis* Dunedin Group으로 한다.

예. 8. *Lilium* Darkest Red 중 선발된 것(1996전에 발생한 것)들은 그룹으로 할 경우, *Lilium* Darkest Red 그룹이 된다.

주석 2. 일본 전통 관상원예의 경우, 구별되는 계급들은 습성, 잎, 꽃, 열매 등 gei(芸 or 藝)로 불리는 특성들을 근거로 한다. 품종을 분류하는데 gei가 전통적으로 이용되지는 않았지만, 특정한 gei의 품종 집합체는 그룹으로서 지정된다. 단어 “gei”는 일반적으로 소명⁵⁾(epithet) 내에 포함되지 않으며 “그룹”에 추가한다.

예. 9. *Neofinetia falcata*의 재배형에는 gei Hariba (침엽 형태), Mameba (작달막하고 콩같은 잎), Shiro-fukurin (흰 줄무늬의 잎), Tora-fu (호피무늬 잎) 등이 있다. 이들 각 gei들은 수많은 지정 선발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들 중 어떤 것들은 수세기동안 재배되어 오고 있다. 이러한 gei가 그룹으로 승인되게 되면, 이들은 각각 *Neofinetia falcata* Hariba Group, *N. falcata* Mameba Group, *N. falcata* Shiro-fukurin Group, *N. falcata* Tora-fu Group으로 쓰이게 된다.

3.4. 그룹의 일부분을 구성하는 품종, 식물, 조합은 유용한 목적이 있을 경우 다른 그룹에 속하는 것으로도 구분된다.

예. 10. *Solanum tuberosum* ‘Desiree’는 주요작물 그룹과 붉은색 표면을 갖은 그룹의 일부분으로 지정되며, 그러한 두 가지 구분은 감자 구입자들에게 유용하다. 그러므로 분류의 목적에 따라 한 가지 분류는 *Solanum tuberosum* (Maincrop Group) ‘Desiree’ 그리고 다른 분류는 *Solanum tuberosum* (Red-shinned Group) ‘Desiree’으로도 사용된다.

5) 명칭의 마지막 단어나 단어의 조합으로서 개체의 분류군을 나타냄. 품종 소명 참고

3.5. 한 그룹이 나뉘어지고, 두 개 이상의 그룹이 통합되며, 그룹의 범위가 재정의 되어 결과적으로 얻어진 그룹이 같은 범위를 갖지 않은 경우에는 새로운 명칭이 주어져야 한다.

예. 11. 위의 예로, *Solanum tuberosum* Maincrop Group과 *S. tuberosum* Red-skinned Group은 통합되어 범위가 재설정된 *Solanum tuberosum* Maincrop Red-skinned Group을 형성한다.

예. 12. *Tulipa* Dutch Breeders Group과 *T. English* Breeders Group은 범위가 새로 설정된 *T. Breeders* Group에 통합된다 (J. F. Ch. Dix, *A classified list of tulip names* 4, 1958 참고).

예. 13. 베고니아의 최근 육종가 프로그램은 현재의 *Elatior* 그룹내 분리된 그룹들을 승인받도록 하였다. 이들은 현재 규정되고 있는 *Elatior* 그룹에 속하게 되는 대신에 절차에 따라서 적절한 때에 새로운 그룹 명칭이 주어지게 된다.

예. 14. 1950년대에 몇몇 *Magnolia* 잡종들이 D. T. Gresham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이들은 Gresham Hybrids이나 Gresham Group으로 하였다. 이러한 잡종들을 그룹에 포함시키는 것은 만족스러운 일은 아니지만 그룹 명칭은 구성원의 일반적인 형질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단지 기원에 대해 진술하는 것이다. Gresham의 잡종의 구별되는 두 그룹은 *Svelte Brunette* Group과 *Buxom Nordic Blonde* Group으로 승인 되었으며 이들은 각기 구별되는 일련의 특성을 갖는다(J. M. Gardiner, *Magnolias* 118-120, 1989 참고).

조항 4: 계품(The grex)

4.1. 계품은 명시된 부모를 근거로 하는 식물 집합체의 형식적 범주이다. 난의 명명법에서만 사용된다. 계품의 명칭 형성과 관련된 규칙들은 본 규약의 조항 23 제시된 바와 같다.

주석 1. 계품의 부모는 현재 종의 계급이나 다른 계품으로 제한된다.

주석 2. 계품명은 교잡과 그의 역교잡에 적용된다.

예. 1. *Paphiopedilum* Atlantis grex × *P. Lucifer* grex의 교잡으로 얻어진 계품명은 *P. Sorel* grex이다. 역교잡의 명칭이기도 하다.

4.2. 계품 내에는 한 개 이상의 그룹이 형성된다(조항 3.1 참고).

4.3. 계품에 있어서 한 개 이상의 구성 부모 명칭이 다른 것의 이명으로 되게 되면, 계품의 새로운 명칭이 수립되지 않고 같은 계품을 위해 최초로 수립된 명칭이 사용된다.

예. 2. *Dendrobium ostrinoglossum*은 *D. lasianthera*의 이명표에서 제외되었다. 혈통이 *D. Caesar* grex × *D. lasianthera*로 명시되어 1985년에 육성된 *D. Soo Chee* grex은 1970년에 육성되었고 혈통이 *D. Caesar* grex × *D. ostrinoglossum*로 명시된 *Alan Mann* grex의 이명이 된다.

4.4. 계품에 있어서 한 개 이상의 부모 명칭이 4.3 조항에 포함되지 않은 명명과 분류학적 사유로 변경된다면, 새로운 계품이 수립되지 않고 계품의 혈통이 재명시된다.

예. 3. × *Renades* Arunoday grex은 혈통 *Aerides multiflorum* × *Renanthera imschootiana*로 명시되어 출판되었다. *Aerides roseum*은 *A. multiflorum*과 구별되는 것으로 여겨지고, 계품의 부모 한쪽이 *A. roseum*의 범주에 속하게 되면, 명시된 혈통은 *A. roseum* × *R. imschootiana*로 바뀌게 된다(*Orch. Rev. Suppl.* 110: 64, Jul, 2002 참고).

조항 5: 접목키메라(The graft-chimera)

5.1. 접목키메라는 다른 분류군에 속하는 두 개 이상 식물의 영양조직을 접목하여 얻어진 것이기 때문에 유성잡종은 아니다. 속 계급에서 접목키메라의 명칭을 구성하는 규칙은 본 규약의 조항 24에 제시된 바와 같다. 속 계급 하부의 접목키메라는 품종으로 승인이 된다(조항 2.11와 24.5).

조항 6: 분류군집합(The Denomination Class)

6.1. 분류군집합은 조항 30에 따라 소명의 재사용이 승인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품종, 그룹, 계품 소명의 사용은 그 범위 내에서 중복되지 않은 단위를 말한다(조항 6.5와 조항 21.7도 참고).

6.2. 본 규약에서 규정하의 분류군 집합은 ISHS 명명법과 품종등록위원회에 의해 결정된 특정 분류군 집합이 아니라면 단일속이나 잡종속에 속한다(부록 V에서 현재 단일속이나 잡종속이 아닌 분류군집합의 목록 참고).

예. 1. *Hibiscus rosa-sinensis*은 분류군집합으로 지정 되었다. 이 종에 품종 소명이 반복되지 않을지라도 두 번째 분류군집합을 형성하는 속의 나머지 부분에 한번 정도는 사용이 된다.

예. 2. *Cactaceae* 과와 집단 *Hylocereeae*내의 속 식물들은 자유롭게 교배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속들의 분류상태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ISHS 명명법과 품종등록 위원회에서 *Hylocereeae*를 선인장류 그룹의 분류군집합으로 지정한다.

주석 1. 조항 6.2에도 불구하고, SPRA(국가간의 합법적 조약이나 특정 국가의 법률을 통해 세

워진 기관)은 특정한 국내 또는 국제 법령 제정의 목적을 위해서 때로는 자신들의 분류군집합으로 규정한다. 이 한 계급은 법정 기관에 의해 본 규약에 정의된 분류군집합과 동일한 목적으로 사용이 된다.

6.3. 분류군집합이 나뉘어지거나 두 개 이상의 분류군집합이 합쳐지는 경우, 또는 분류군집합의 범위가 변경되게 되면 새로운 분류군집합은 ISHS 명명법과 품종등록위원회의 승인을 따르고 적절한 국제품종등록기관에 의해 발표되고 출판이 된다.

6.4. 명명법이 ICBN에 의해 결정되는 분류군인 분류군집합이 나뉘어지거나 두 개 이상의 분류군집합이 통합되면 식물학적인 명명법의 규칙들이 적용된다(ICBN, 조항 11.3). 그렇지 않은 다른 분류군집합은 조항 6.2의 규정에 의해 수립이 된다.

예 3. *Gaultheria*속(1753년에 유효한 것으로 출판)과 *Pernettya*속(1825년에 유효한 것으로 출판)이 합쳐지는 것으로 제안되었다. 이 제안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결합된 분류군집합은 먼저 출판된 *Gaultheria*이 된다.

예 4. *Lycianthe*와 *Lycopersicon*의 *Solanum*으로부터의 분리가 받아들여지게 되면 세 개 속 모두 조항 6.2의 규정에 의해 동일한 분류군집합의 일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면 자동적으로 새로운 두 개의 분류군집합이 된다.

6.5. 난의 경우 조항 6.1에도 불구하고 품종명이 종과 계품은 다르지만 분류군집합 내에서 한 개 이상의 품종에서 수립되게 되면 품종의 소명은 그것이 적용되는 종이나 계품의 명칭과 연결이 된다.

예 5. 소명 'Saint Thomas'는 *Lycaste aromatica*와 *L. Wyld Spirit* grex의 품종에 적용된다; 명칭은 각각 *Lycaste aromatica* 'Saint Thomas'와 *Lycaste Wyld Spirit* grex 'Saint Thomas'로 쓰이며 *Lycaste* 'Saint Thomas'로는 요약해서 쓰지 않는다.

조항 7: 출판(Publication)

7.1. 출판은 조항 25에 따라서 유효하다.

조항 8: 명칭과 소명(Names and epithets)

8.1. 품종이나 그룹의 명칭은 품종과 그룹의 소명과 함께 지정된 속(屬)이나 하위 분류군의 명칭의 결합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명칭들은 여러가지 방법으로 쓰이게 된다.

예 1. *Fragaria* 'Cambridge Favourite', *Fragaria* × *ananassa* 'Cambridge Favourite', strawberry 'Cambridge Favourite', 'Cambridge Favourite' strawberry, Erdbeere 'Cambridge Favourite' (독일어), fraisier 'Cambridge Favourite' (프랑스어), 'Cambridge Favourite' morangeiro (포르투갈어) 등은 같은 품종의 명칭이다.

예 2. *Alcea rosea* Chater's Double Group, *Alcea* Chater's Double Group, hollyhock Chater's Double Group, rose tremiere Groupe Chater's Double (프랑스어), Stockrose Chaters Doppelte Gruppe (독일어), stokroos Chaters Dubbele Groep (네덜란드어) 등은 같은 그룹의 명칭이다.

주석 1. 지적재산의 권리문제를 다루는 법률에서는 조항 8.1에서 정의되는 바와 같이 용어 "제네릭 명칭(generic designation)"이 용어 "명칭"과 같다.

주석 2. 품종을 판매하는데 있어서 상표를 사용하는 사람은 품종의 정명이 주어진 것이 아닐 경우, 상표가 상업적 이름⁶⁾이 될 수 있다는 위험성에 대해 알아야 한다. 상표는 항상 정명⁷⁾과 동반되어야 한다(조항 17.2와 부록X 참고).

8.2. 계품의 명칭은 계품 소명과 함께 지정된 속의 명칭으로 구성된다.

예 3. *Spiranthes* Awful grex, lady's tresses Awful gx, schroeforchis Awful grex (네덜란드어), Drehwurz Awful grex (독일어) 등은 같은 계품의 명칭이다.

8.3. 품종, 그룹, 계품 명칭에 있는 소명은 그들이 지정된 분류계급을 표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되어야 한다(조항 14-16).

예 4. *Iris* 'Cantab'은 *Iris*의 품종이고, *Begonia* Elatior 그룹은 *Begonia*내의 그룹이며, *Paphiopedilum* Sorel gx은 *Paphiopedilum*속 내 계품의 예이다.

주석 3. 부록X은 상용 명칭의 스타일을 만드는데 있어서 권장된다.

8.4. 품종, 그룹, 계품 명칭의 소명들은 조항 21, 조항 22, 조항 23의 각 규정에 따라 형성된다.

6) 일반적 사용에 이용이 된다. 단 법령에 의해 보호되지는 않는다.

7) 원래의 정식 명칭

권고 8A

8A.1. 품종, 그룹, 계품 명칭의 소명들은 지정된 분류군의 명칭과 인쇄시에 구별이 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서 *ICBN*에 의해 명명되는 속과 하위 분류군의 명칭이 관례적으로 이탤릭체로 쓰이게 되면 품종명, 그룹명, 계품명은 이탤릭체로 인쇄하면 아니 된다.

예 5. *Aconitum napellus* subsp. *lobelianum* 'Bergfurst'와 *Chamaecyparis lawsoniana* 'Silver Queen'은 *Aconitum napellus* subsp. *lobelianum* 'Bergfurst'이나 *Chamaecyparis lawsoniana* 'Silver Queen'로 인쇄되면 아니 된다.

예 6. *Brassica oleracea* Gemmifera Group보다는 *Brassica oleracea* Gemmifera Group으로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 7. *Bletilla Penway* Dragon grex보다는 *Bletilla Penway* Dragon grex로 쓰도록 한다.

조항 9: 명칭의 일자(Date of a name)

9.1. 품종, 그룹, 계품 명칭 또는 접목키메라의 속명 일자는 명칭(속명)이 기재된 일자이다(조항 27 참고). 명명 인정을 위한 여러 조건들이 동시에 이행되지 않으면, 명명 일자는 가장 마지막 조건이 이행된 날짜를 말한다.

주석 1. 식물의 집합체는 분류계급, 명칭, 범위 등이 출판될 때까지는 품종이나 그룹으로 인정될 수가 없다. 계품을 위해서는 혈통, 속간 접목키메라의 속명을 위해서는 명칭과 혈통이 기재되어야 한다.

9.2. 명칭의 원래 철자에 대한 수정은 본 규약에 의해 결정(조항 35.3)되지만 명명 일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조항 10: 수립된 명칭(Established names)

10.1. 명칭 수립은 본 규약의 조항 27에 따른다.

주석 1. 본 규약의 규칙 하에 수립된 명칭은 지역 법령에 따르지 않는다(조항 31.2 참고).

조항 11: 채택명(Accepted names)

11.1. 채택명은 본 규약의 규칙 하(조항 11.4-11.6과 조항 29.2 참고)에 품종, 그룹, 계품 또는 속간 접목키메라의 명칭으로 사용되는 것 중에서 가장 먼저 수립된 것을 말한다(조항 27.1).

11.2. 조항 11.1에도 불구하고 채택된 품종명이 기각되고 법정식물등록기관(SPRA)에 의해 새로운 명칭으로 대체되거나 아니면 다른 기관이 지정한 명칭으로 대체되게 되면 가장 먼저 받아들여진 명칭이 새로운 명칭의 이명이 된다.

주석 1. 조항 11.2의 규정 하에 이명이 되는 품종명은 품종을 판매하는데 이용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상용 명칭으로 쓰이게 된다(부록X 참고).

예 1. 'Morning Yellow'은 *Clematis* 품종명인데 법정식물등록기관(SPRA)에 의해 기각된 바가 있고 그 대신에 소명 'Cadmy'이 명명되었다. *Clematis* 'Morning Yellow'은 현재 *Clematis* 'Cadmy'의 이명으로 취급되지만 이는 통상 명칭으로 사용된다: *Clematis* MORNING YELLOW ('Cadmy').

11.3. 법정기록부에 채택된 이름은 관련된 식물의 법정 보호 효력이 소멸되더라도 유지가 된다.

예 2. EU 식물육종가권리증서 No 18698은 *Argyranthemum* 'Ohmadsant'로 허용한 2007년 8월에 증서가 양도된 품종의 채택명일지라도 *Argyranthemum* 'Ohmadsant'은 채택명으로 남게 되고 *Argyranthemum* SANTANA 'Ohmadsant'로 판매가 된다.

11.4. 조항 11.1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룹은 한 개 이상의 채택명을 갖는 경우도 있다(조항 32.2 참고).

예 3. *Fagus sylvatica* Purple-leaved Group과 *Brassica oleracea* Brussels Sprout Group, 또는 라틴어 외 다른 언어로 이루어진 동일한 소명을 갖는 명칭은 *F. sylvatica* Atropunicea Group과 *B. oleracea* Gemmifera Group은 대신하여 사용한다.

11.5.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본 규약의 규칙에 위배하는 명칭은 적절한 국제품종등록기관이 (a) 결정에 대한 근거를 출판하고 (b) 출판의 복사본을 IUBS 재배식물명명위원회에 보내면 채택명으로 명명이 된다(조항 19.1 참고).

예 4. *Chamaecyparis lawsoniana* 'Green Pillar'(1960)은 *C. lawsoniana* 'Jackman's Variety'(1947) 그 이후의 명칭이지만 침엽수 국제품종등록기관에서는 그 이후의 명칭을 채택명으로 명명할 정도로 일반화 되어 있는데 결정에 대한 근거는 *International conifer register* 3: 89, 1992에

기재되어 있다.

11.6. 조항 11.5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국제품종등록기관이 존재하지 않거나 제안서의 제출을 꺼린다면, 그 명칭이 널리 사용될 경우 본 규약의 규칙에 위배되는 명칭을 받아들일게 하기 위해 누군가 제안서를 출판할 것이다. 그러한 제안서(조항 25 비교)는 IUBS 재배식물명명위원회에 회부되어 그 명칭이 유지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된다(조항 19.1 참고).

예 5. 명칭 *Dieffenbachia* 'Exotica Perfecta Compacta'와 *D.* 'Compacta'는 같은 품종의 명칭을 나타내며, 후자가 더 최근에 명명된 것이다. 첫번째의 명칭이 부적합하게 쓰이기 때문에 품종 *D.* 'Exotica'와 *D.* 'Exotica Perfecta'는 혼란을 초래하게 된다. 더군다나, 명칭은 자주 *Dieffenbachia* 'Exotica Compacta'로 쓰인다. 그래서 중복성을 피하기 위해 그 이후의 명칭인 *D.* 'Compacta'가 채택명이 된 것이다(Hetterscheid and van Vliet, *Vakbl.* Bloem, 42(50): 32-37, 1987 참고).

11.7. (a) 이미 사용되고 있는 명칭에 상충된 명칭을 선택하거나(조항 29.2-29.3) (b) 명칭의 재사용을 허용(조항 30.2)할 경우, 국제품종등록기관은 하나의 명칭을 채택명으로 명명할 수 있다.

11.8. 조항 11.5와 조항 11.7에 의한 명명이나 조항 11.6에 의한 제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명확한 판정을 위해서 IUBS 재배식물명명위원회에 이의제기가 가능하다(조항 19.1 참고).

조항 12: 유지 명칭(Conserved names)

12.1. 유지 명칭은 본 규약의 규칙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라면 IUBS 재배식물명명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품종, 그룹, 계품에 인용되는 하나의 명칭이다(조항 17 참고).

조항 13: 상용 명칭(Trade designation)

13.1. 상용 명칭은 본 규약에 따라서 조정되지 않으며 품종, 그룹, 계품의 마케팅을 위해서 채택명을 대신해서 사용되는 명칭이다(조항 11.1) (부록X 참고).

예 1. 1988에 UK 식물육종가권리증서 No 3743은 품종명 'Korlanum'이라는 장미 품종이 발표되었다. 이 품종은 다른 나라에서 "rose Surrey", "Rose Sommerwind", "rose Vent d'Été"로 판매된 바 있다. 이들은 정식 명칭들은 아니지만 상용 명칭으로 여겨져 각각 rose SURREY ('Korlanum'), Rose SOMMERWIND ('Korlanum'), rose VENT D'ÉTÉ ('Korlanum')로 쓰이고 있다.

예 2. 명칭 *Syringa vulgaris* 'Andenken an Ludwig Späth'는 1883년에 만들어졌고, 본 규약에 따라서 품종의 채택명으로서 인정되었다. 그런데 북미의 묘목업자가 "Ludwig Spaeth"라고 간단하게 표현하여 장기간 사용하였기 때문에 lilacs의 국제품종등록기관은 *S. vulgaris* LUDWIG SPAETH를 품종의 상용 명칭으로 지정하였다.

예 3. 주의! 오크(oak)는 품종명이 아니다. 그러나 oak는 원래 Willet N. Wandell이 소유한 US 등록상표(Reg. No 1508479)를 포함하며 1989년에 Mr Wandell(US 식물특허 No 6746)에 *Quercus robur* 'Wandell'의 상용 명칭으로 되어 시장에서 통용되고 있다.

13.2. 상용 명칭은 이명과 혼동되지 않는다. 이명은 본 규약에 따라서 수립된 명칭(조항 10.1)이지 채택명은 아니다(조항 11.1).

주석 1. 초기의 명칭이 아니지만 국가적으로 중요하게 수립된 품종명은 상용 명칭으로 사용될 수 있다.

예. 4. 사과 품종 'Blauschwanz', 'King of the Pippins', 'Mère de Ménage'은 스웨덴에서 오래 전부터 각각 'Kesäter', 'Guldparman', 'Husmoder'로 알려져 있었다. 전체이름은 apple KESÄTER ('Blauschwanz'), apple GULDPARMÅN ('King of the Pippins'), apple HUSMODER ('Mère de Ménage')로 쓸 수가 있다.

제 III 장: 명칭 표시를 위한 협약

조항 14: 품종 등급(Cultivar Status)

14.1. 품종 등급은 작은 따옴표로 품종의 소명을 묶어서 나타낸다. 품종의 소명을 구분 할 목적으로 큰 따옴표와 약어인 cv.나 var.는 사용하지 않고 작은 따옴표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주석 1. 작은 따옴표는 본 규약에서 계속 사용되는데 소명의 시작에 (')로 그리고 마지막에 (')로 하고, 아포스트로피 (')나 다른 (')와 같은 경계부호는 소명의 양쪽에 사용된다.

예 1. *Iris* 'Cantab', *Iris* 'Cantab', *Iris* Cantab로 표기하되, *Iris* "Cantab", *Iris* cv. Cantab, or *Iris* var. Cantab로 표기하지 않는다.

예 2. *Pinus sylvestris* 'Repens'로 표기하고, *Pinus sylvestris* repens, *Pinus sylvestris* var. Repens, *Pinus sylvestris* cv. 'Repens'로 표기하지 않는다.

주석 2. 1996년 이전에 약어 "cv."가 품종의 작은따옴표 대신 소명 앞에 쓰이는 것이 허용되지만 본 규약에서는 그러한 명칭의 사용을 더 이상 승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식물원이나 다른 보유기관들은 식물라벨이 다른 것으로 대체될 때까지는 이러한 약어를 계속 지니고 있어야 할 것이다.

14.2. 접목키메라로 여겨지는 품종들은 품종의 소명 앞에 추가부호를 사용하지 않는다.

예 3. *Syringa* 'Correlata'는 *Syringa* × *chinensis* + *S. vulgaris*의 명칭이며 *Syringa* + 'Correlata'로 써서는 안된다.

예 4. *Camellia* 'Daisy Eagleson'은 *C. japonica*와 *C. sasanqua* 'Maiden's Blush'의 조직(tissues)에서 나온 것으로 생각되는데 *Camellia* + 'Daisy Eagleson'로는 쓰지 않는다.

14.3. 잡종 기원으로 여겨지는 품종은 소명 앞에 곱하기 기호를 사용하지 않는다.

예 5. *Digitalis* 'Mertonensis'는 *Digitalis* × 'Mertonensis'로 쓰지 않는다; *Distictis* 'Mrs Rivers'는 *D. buccinatoria*와 *D. laxiflora*의 잡종으로 생각되며 *Distictis* × 'Mrs Rivers'라고 쓰지 않는다.

조항 15: 그룹 등급(Group Status)

15.1. 공식적인 그룹 등급은 Group(그룹)이라는 단어나 그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 다른 언어를 그룹 소명(Group epithet)의 처음이나 마지막에 사용하여 나타낸다.

예 1. *Begonia Elatior* Group (영어); *Brassica oleracea* Sabellica Gruppe (독일어); *Hydrangea macrophylla* Groupe Hortensis (프랑스어); *Tulipa* Grupo Darwin (스페인어); *Rhododendron* Jacqueline-Gruppen (스웨덴어).

15.2. 로마자를 사용하면서 group이라는 단어를 줄여서 써야 할 경우, Group 단어로 번역된 모든 언어의 동의어에 관계없이 표준축약형 "Gp"를 사용한다.

15.3. 그룹 소명이 품종명의 부분으로 사용될 때, 그룹 소명은 품종 소명 바로 앞에 있는 괄호 안에 쓰도록 한다.

예 2. *Dracaena fragrans* (Deremensis Group) 'Christianne'; *Fagus sylvatica* (Atropunicea Group) 'Riversii'; *Brassica oleracea* (Sabauda Group) 'Cantasa'.

조항 16: 계품 등급

16.1. 계품 등급은 단어 "grex"나 표준축약형 "gx"를 사용한다.

16.2. 계품의 소명은 품종 소명 앞에 사용할 경우에 괄호 안에 쓰지 않는다.

예 1. *Cymbidium* Alexanderi gx 'Westonbirt'는 *Cymbidium* (Alexanderi gx) 'Westonbirt'로 쓰지 않는다.

16.3. 조항 16.1에도 불구하고, 계품 명칭은 그들의 소명과 함께 단어 "grex"나 "gx"를 사용하지 않는다(조항 16.4와 조항 23.4 참고).

예 2. *Paphiopedilum* Sorel grex와 *Cymbidium* Alexanderi gx를 각각 *Paphiopedilum* Sorel 과 *Cymbidium* Alexanderi로 쓴다.

16.4. 계품 소명과 그룹 소명이 같은 명칭에서 인용되게 되면 계품 소명은 표준축약형 "gx"나 단어 "grex"를 따르게 하여 그룹 소명과 구별할 수 있게 한다.

예 3. 본 규약의 이번 판 출판물에 따르면 Francis Suzuki Group은 grex × *Rhynchosophrocattleya* Marie Lemon Stick내에 수립된다. 계품이나 그룹 소명과 구별하기 위해 × *Rhynchosophrocattleya* Marie Lemon Stick grex Francis Suzuki Group이나 × *Rhynchosophrocattleya* Marie Lemon Stick gx Francis Suzuki Gp로 쓴다.

예 4. Penway Dancer Group은 계품 *Bletilla* Penway Prelude내에 수립되고 품종 ‘Ballerina’는 Penway Dancer Group내에 수립이 된다. 이들은 *Bletilla* Penway Prelude grex(Penway Dancer Group) ‘Ballerina’이나 *Bletilla* Penway Prelude gx (Penway Dancer Gp) ‘Ballerina’로 써야 한다.

조항 17: 상용 명칭 등급(Trade Designation Status)

17.1. 상용 명칭은 따옴표 안에 쓰지 않는다.

17.2. 인용될 때 상용 명칭은 항상 그것의 채택명이 동반되어야 한다.

17.3. 인용될 때 상용 명칭은 항상 품종, 그룹, 계품의 소명과 인쇄상으로 구별되어야 한다.

예 1. *Choisya ternata* ‘Limo’는 식물육종가권리의 증서에 의해 수립되지만 판매는 “*C. ternata* Goldfingers”로 된다. 상용 명칭을 품종 소명과 구별하기 위해 명칭은 인쇄상으로 구별되어야 하는데 *Choisya ternata* GOLDFINGERS ‘Limo’ 형이 한 예이다. 인쇄상 구별을 위한 다른 예들을 조항 13에서 볼 수 있다.

예 2. 중국어로 된 상용 명칭은 다른 방법(소형대문자의 타이포그래피는 적용되지 않음)으로 인쇄상으로 구별되는데 黑體 서체(Heiti나 Black형)나 네모 괄호를 사용하게 된다. 그러므로 *Rosa* PEACE (‘Madame A. Meilland’)은 和平月李(Madame A. Meilland)나 [和平]月李(Madame A. Meilland)로 쓰인다.

주석 1. 상용 명칭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부록 X에 있다.

조항 18: 명명법의 시점

18.1. 어떤 품종등급에서의 품종, 그룹, 계품명의 수립은 그 품종등급을 명명하기 위한 목록이나 출판물에 의해 시작되는 것으로 본다. 이 절차는 명명법과 품종등록을 위한 ISHS 위원회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되도록이면 관련된 국제품종등록기관의 제안이나 다른 적절한 기구의 협의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러한 승인된 목록이나 출판물이 없는 경우에는 Linnaeus's *Species plantarum*로 시작되며 이 규약(Linnaeus's *Species plantarum*)내 두개의 권(both volumes)은 ICBN에서와 같이 1753년 5월 1일에 동시에 출판된 것으로 본다.

예 1. *Syringa*의 품종과 그룹 명칭의 시점은 S.D. McKelvey, *The lilac*, Macmillan, New York, 1928이다. 이 결정은 본래 XII 국제원예학회(Berlin, 1936)에서 명명법 위원회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ISHS 명명법 품종등록 위원회에 의해 뒷받침 되었다.

18.2. 난(orchid) 계품의 시점(조항 3.3)은 1858년 1월 2일이며 이는 유럽에서 난의 첫 인공교배를 위해 명칭이 출판된 일자이다(*Gard. chron.*, 1858: 4, 1858 참고).

18.3. 속간 접목키메라 속명의 시점은 Linnaeus's *Species plantarum*로 시작이 되고 이 규약 내의 두개의 권은 ICBN에서와 같이 1753년 5월 1일에 동시에 출판된 것으로 본다.

조항 19: 명칭의 유지

19.1. 본 규약의 규칙에 위배되는 명칭이 (a) 국제품종등록기관에 의해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지정된다(조항 11.5와 조항 11.7), (b) 다른 기관에 의해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제안(조항 11.6), (c) 명칭이나 명칭의 제안된 승인이 분쟁 중인 것으로(조항 11.8) 밝혀지게 되면 IUBS 재배식물명명위원회에 신청이 되어 명칭이 채택명으로 유지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19.2. 유지 제안서의 근거는 신청 시 IUBS 재배식물명명위원회의 간사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이는 출판에 대한 참고문헌을 포함해야 하며 신청 시 이에 대한 복사본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19.3. 위원회의 결정은 출판이 될 것이며(조항 25.1) 유지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출판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조항 26.2).

제V장: 재배식물의 명명

조항 20: 재배화된 식물의 명명

20.1. 야생에서 채집하여 재배되고 차후에 품종이나 그룹으로 분류되지 않은 식물은 자연 상태에서 자라는 동일한 식물에 적용되고 있는 명칭을 유지한다.

예. 1. the common beech 또는 European beech로 불리는 *Fagus sylvatica*는 재배되면서 야생 식물의 명칭과 동일한 라틴명이 붙여졌다.

20.2. 재배된 종 또는 그 이하 분류군의 식물이 야생의 분류군과 관련된 변이의 범주를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만약 이런 식물들의 집합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구별할 만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면 품종명이나 그룹의 명칭을 부여받게 된다.

예. 2. *Quercus frainetto*처럼 the Sir Harold Hillier에서 구별할 수 있는 식물은 Hillier와 관련이 있는 묘포장에서 분양된 많은 식물들(라메트)을 위한 소스(오르테트)이고 그 결과로 발생한 품종은 *The Hillier manual of trees and shrubs*, ed. 6, 348, 1991.에서 A. J. Coombes에 의해 *Q. frainetto* 'Hungarian Crown'이라고 명명되었다.

예. 3. 특이한 은빛 잎과 분홍빛을 띤 연보라 색의 꽃이 피는 *Lessingia filaginifolia* 'Silver Carpet'은 캘리포니아 Monterey Country에서 해안 절벽에선 채집된 *L. filaginifolia*의 야생 집단에서 선발되었다.

예. 4. *Fagus sylvatica* *Atropunicea* 그룹은 그 종의 모든 잎이 보라색인 식물을 포함하는 데에 한정될 수 있다. 또한, *F. sylvatica* *Cuprea* Group은 구릿빛 잎을 가진 종의 모든 식물을 포함하는 데 한정될 수 있다.

조항 21: 품종의 명칭

§1: 일반규정

21.1. 품종의 명칭은 품종 소명(cultivar epithet)과 속의 정명 또는 ICBN에 따라 부여된 하위 분

류군 또는 확실한 일반명과의 조합이다.

예. 1. *Galanthus* 'John Gray'는 snowdrop 'John Gray'로 불릴 수 있다.

21.2. 품종 소명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는 라틴어 명칭과 확실한 일반명을 동반하는 것이다. 품종이 종 단위(species rank) 또는 그 이하의 식물군에 지정될 때, 분류군의 명칭(또는 분명한 일반명)은 식물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대신 품종 소명을 동반할 수 있다(조항 21.7 참고).

예. 2. *Achillea* 'Cerise Queen'은 *Achillea millefolium* 'Cerise Queen' 또는 yarrow 'Cerise Queen'; potato 'Sharpe's Express'는 *Solanum* 'Sharpe's Express' 또는 *Solanum tuberosum* 'Sharpe's Express'라고 불릴 수도 있다.

예. 3. *Camellia* 'Shōjō-no-mai', *Magnolia* 'William Watson', *Pisum* 'Consort', × *Triticosecale* 'Siskiyou'는 품종 소명을 동반한 라틴어 형식의 속명 조합이다.

예. 4. Apple 'James Grieve', potato 'Cara', poire 'Doyenné du Comice', 'Puzol' pepino, 'William Sim' carnation, 그리고 'Golden Harvest' daffodil는 *Malus domestica* 'James Grieve', *Solanum tuberosum* 'Cara', *Pynus* 'Doyenné du Comice', *Solanum muricatum* 'Puzol', *Dianthus* 'William Sim', 그리고 *Narcissus* 'Golden Harvest'와 대비가 되기 때문에 용인되는 명칭이다.

예. 5. *Geranium* 'Mrs Kendall Clark'은 종소명을 포함하기 위하여 *Geranium pratense* 'Mrs Kendall Clark'로 쓰일 수도 있다; *Cedrus* 'Mt St Catherine'은 부여된 아종명을 포함하기 위해서 *Cedrus libani* subsp. *atlantica* 'Mt St Catherine'으로 쓰일 수도 있다.

주석 1. 속명이나 그 이하 분류군의 명칭이 혼돈 없이 문맥이 분명할 때, 품종 소명은 단독으로 나오거나 라틴명이나 보통명에서 분리될 수 있다.

예. 6. 독일 잡지 *Gartenpraxis* (2008년 7월: 8-14)에 Taglilien에 대한 기사에서 *Hemerocallis* 속은 문맥으로부터 분명하여 'Knights in White Satin', 'Now and Forever', 'Potion for Passion', 'Pure and simple'과 'Trimmed in Gold'가 포함된 품종 소명을 본문에 속(genus)에 대한 캡션과 추가적인 참고 없이 명기 되었다.

21.3. 품종 소명의 각 단어는 언어학적 관계가 필요하지 않는다면 첫 문자를 대문자로 시작해야 한다. 소명의 첫 단어 외(조항 21.25 참고)에 고유명사, 접속사, 전치사가 없는 경우에 하이픈 다음에 오는 문자는 예외적이다(조항 35.11 참고).

예. 7. 네덜란드에 's-Hertogenbosch 마을을 기념하는 품종소명은 "S-Hertogenbosch"로 쓰인다; 마찬가지로, IJsselham마을(처음 두 글자가 대문자로 쓰임)을 기념하는 소명은 'IJsselham'이라고 쓰며 'Ijsselham'이라고 하지 않는다.

예. 8. *Malus domestica* 'Beauty of Bath', *Rosa* 'Pompon de Paris', *Prunus* 'Hikaru Genji'(10세기 문학적인 영웅을 기념하는 소명), 그리고 *Saxifraga fortunei* 'Akane-Fuji'는 허용되는 명칭들이다.

21.4. 품종소명은 조항 6.3에 따라 일어났던 것과 같이, 만약 소명이 다시 부여된 분류군 집합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지 않다면, 부여받은 분류군의 명칭이 변경될 때 바뀌지 않은 채 남는다. 이런 경우에는 새로운 소명이 요구되게 된다(조항 11.5와 조항 21.9 참조).

예. 9. 뒤에 나오는 모든 명칭은 같은 품종을 나타낸다. *Endymion hispanicus* 'Rose Queen', *Hyacinthoides hispanica* 'Rose Queen', *Hyacinthoides* × *massartiana* 'Rose Queen', *Scilla campanulata* 'Rose Queen', *Scilla hispanica* 'Rose Queen', *Scilla hispanica* var. *campanulata* 'Rose Queen'.

§2: 라틴어 형태로 품종 소명 형성

21.5. 종 또는 그 이하 분류군의 ICBN에 따른 정명의 라틴어 형태의 최종 소명은 만약 분류군이 계속적으로 품종으로서 재분류된다면 품종 소명으로 남는다(권고 21B 참조).

예. 10. *Mahonia japonica*와 *Primula denticulata* var. *cachmeriana*는 각각 종과 변종으로 여겨지는 ICBN에 따른 정명이다. 그러나 대신 명칭이 *Mahonia* 'Japonica'와 *Primula denticulata* 'Cachmeriana'로 할 경우에는 품종으로 간주된다.

예. 11. *Spiraea cantoniensis*의 겹꽃 형태는 1903년 Zabel에 의해 *S. cantoniensis* forma *lanceata*로 명명되었다. 이것은 품종 등급에서 ICBN에 따른 정명이다. 겹꽃 형태가 대신 품종으로 간주되고 같은 종으로 부여될 때에는 *Spiraea cantoniensis* 'Lanceata'라고 한다.

21.6. 조항 21.5가 적용되지 않는 상황에는 1959년 1월 1일 이전에 출판된 라틴어 형태의 어떤 명칭의 소명은 ICBN에 따라서 출판되지 않더라도 이 규약(조항 27.1)에 따라 품종으로서 수립 요구조건에 적합하고 적용된 식물이 현재의 품종 기준에 해당이 된다면 품종 소명으로 채택될 수 있다.

주석 2. 명칭이 ICBN에 따라서 출판되지 않은 이유는 기재나 기재에 대한 참고(조항 32.1과 반함)가 동반되지 않은 출판이나, 1953년 1월 1일 이후(조항 35.1에 반함) 또는 계층의 명확한 표시

가 없이 출판된 것이다. 현재 품종이라고 여기는 식물명의 출판에 대한 규정은 1959년 1월 1일 이전에 존재했고 품종명 수립을 위한 보편적 요건이 충족되었다. 그리고 ICBN에 따른 정명은 없고 이런 식물에 사용된 라틴어 소명은 품종의 소명으로 채택될 수 있다.

예. 12. "*Veronica Sutherlandii*"는 the New Zealand nursery Duncan and Davies(Ners. Cat. 1925: 23, 1925)에 의해 기재 또는 기재에 대한 참고("무자격명")가 없이 출판되었다. 출판은 이 규약(code)의 조항 27.1의 요건을 충족시켜서 종이 품종으로 취급될 때, 소명은 품종이 *Hebe pinguifolia* 'Sutherlandii'로 서술된 *The cultivation of New Zealand trees and shrubs* 267, 1972에서 L. J. Metcalf가 했던 것처럼 품종명으로 채택된다.

예. 13. *Weigela floribunda foliis purpureis*는 Carrière, *Rev. Hort.* 1921:278-9, 1921에 의해 출판되었다. 비록 이 명칭이 ICBN의 기준에 따라서 출판되지는 않았지만(그 규약의 조항 23.1과 24.2 참조), Carrière가 변종을 다뤘던 것처럼 품종명 *W. floribunda* 'Foliis Purpureis'는 이 규약의 규정에 따라서 수립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예. 14. *Juniperus excelsa viridis stricta*는 1867년 Adrien Sénéclauze에 의해 출판되었으나 (Les coniferes: 91), ICBN에 따라 어느 계급에서도 유효하게 출판된 이름이 없었다(그 규약의 조항 23.1, 23.6과 24.2 참조). 하종명 "viridis stricta"는 만들어졌지만 주격(主格) 형태로 두 개의 형용사가 나타나서 ICBN에 따라 받아들여지지 않고 품종명인 *Juniperus excelsa* 'Viridis Stricta'로 쓰였다.

21.7. 1959년 1월 1일 이전에 만들어진 라틴어 형태의 품종 소명이 분류군집합 내에 중복되었지만 다른 분류군이라면 이 품종의 소명은 해당 분류군의 명칭과 연결되어야만 한다.

예. 15. *Juniperus chinensis* 'Variegata', *Juniperus excelsa* 'Variegata', *Juniperus horizontalis* 'Variegata', *Juniperus procumbens* 'Variegat'와 *Juniperus sabina* 'Varietage'는 *Juniperus* 'Variegata'라고 쓰이지 않을 수 있고 혼돈을 피하기 위해 각각의 종소명을 항상 포함해야 한다.

21.8. 만약 품종 소명이 라틴어 형태의 소명에서 파생된 형용사라면 부여된 속명과 성(gender)이 일치해야만 한다.

예. 16. *Begonia* 'Elegantissima Superba'; *Calluna vulgaris* 'Aurea'; *Hibiscus syriacus* 'Violaceus'; *Malus floribunda* 'Amoldiana'

21.9. 만약 품종 소명이 다른 성의 속으로 이동되고 라틴명 형태로 된 소명으로부터 파생된 형용사라면 소명의 성은 새로운 속의 성과 일치하도록 변경이 된다.

예. 17. *Veronica virginica*(여성)이 속 *Veronicastrum*(중성)으로 이동할 때, 품종명은 *Veronica virginica* ‘Alba’가 *Veronicastrum virginicum* ‘Album’으로 변경된다.

21.10. 만약 명사가 품종 소명의 일부로서 사용되고 형용사 자격이 있다면 후자는 명사의 성과 일치하고 속명의 성은 고려하지 않는다.

예. 18. Reinhold Ambrosius(남성의 인명)을 따서 명명된 *Rhododendron* 품종은 *R.* ‘Ambrosius Superbus’이어야하며 중성인 *Rhododendron*의 성, ‘Ambrosius Superbum’가 될 수 없다.

§3: 라틴어 이외의 언어로 된 품종 소명의 형성

21.11. 1959년 1월 1일 이후에 수립된 품종명을 위해 그의 소명은 어떤 언어의 한 단어나 여러 단어들로 구성이 되지만 조항 21.5, 21.6과 조항 21.22에 허용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라틴어로 되지 않을 수도 있다(조항 21.14와 조항 21.25 참고).

예. 19. ‘Washington Bullatus’, ‘Loderi Red’, ‘Aurea Bennett’와 ‘Nani Baker’ 소명은 모두 수립될 수 있으나 “Aurea” 또한 스페인에서는 소녀의 이름이고 “Nani”는 외할머니를 뜻하는 힌디어이다.

21.12. 조항 21.11에도 불구하고 라틴어 또는 라틴어 형태로 된 문자, 예를 들어서 용어, 상투적 문구, 인명과 지명과 같은 라틴어 외의 현재 언어로 기재할 수 있을 때 새로운 품종 소명으로서 사용될 수 있다.

예. 20. Bicolor, campus, major, minor, museum과 peninsula는 최근에 현대어에 사용되는 라틴어이다. Aurora Borealis, Corpus christi과 Habeas Corpus는 품종 소명으로서 또는 품종 소명에서 사용할 수 있는 라틴어 용어이다.

예. 21. “Caveat emptor”, “nil desperandum”, “noli me tangere”와 “non sequitur”는 품종 소명으로서 또는 품종 소명에서 사용할 수 있는 현대어에서 사용 중인 라틴어 어구들이다.

예. 22. Cicero, Claudia, Claudius, Gordianus, Julia, Julius Caesar와 Paulus는 품종 소명으로 또는 품종 소명에서 사용할 수 있는 라틴어 인명이다.

예. 23. Africa, Bognor Regis, India, Londinium, Marston Magna, Mons와 Nova Scotia는 품종 소명으로 또는 품종 소명에서 사용할 수 있는 라틴어 지명이다.

21.13. 1996년 1월 1일 이후에 수립된 품종명을 위해서는 그것의 소명은 대체로 띄어쓰기와 구별 기호를 제외한 30자(로마체, 숫자, 그리고 허가된 구두점 또는 기호들)이내로 구성되어야만 한다.

예. 24. 1996년 1월 1일 이후로 품종 소명 ‘Madame la Comtesse Oswald de Kerchove de Denterghem’이라는 명칭은 성립이 될 수가 없다.

21.14. 품종명의 소명은 현존하는 단어나 단어들로 구성되어서는 아니 되지만 새로 고안된 것(a novel invention)은 될 수도 있다.

예. 25. ‘NuMex Arthur’, ‘NuMex Crimson’, ‘NuMex Freedom’과 ‘NuMex Solano’ 양파의 품종 소명에서 첫 문자는 New Mexico State University’s Agricultural Experiment Station이 이들 품종들의 원산지 지명을 알아볼 수 있게 하는 고안된 문자이다.

예. 26. ‘AC Avonlea’는 Agriculture Canad(AC)의 한 지소에서 개발된 듀럼밀의 품종이다. 한편 ‘OAC Baxter’는 the Ontario Agriculture College, Guelph, Ontario, Canada에서 개발된 맥주보리이다.

예. 27. 장미 ‘Harwestsun’, ‘Harwex’, ‘Harwharry’와 ‘Harwicklow’의 명칭은 장미 육종가에 따라 처음 세 글자가 육종가를 가리키는 관습을 이용하여 수립되었다. 위의 예와 같은 경우의 육종가는 R. Harkness & Co.이다(*Modern Roses* 11, 216, 2003 참고).

§4: 품종소명 금지규정

21.15. 품종명은 2004년 1월 1일이나 그 이후에 그의 소명이 오직 한 단어 또는 아라비아 숫자나 로마 숫자 또는 한 단어나 구두점과 함께 숫자 조합으로 구성되었다면 성립이 될 수 없다.

예. 28. 소명 ‘K’, ‘U!’, ‘400’, ‘21!’과 ‘MMIV’를 포함하는 명칭은 성립될 수 없으나, ‘Hundred’, ‘10 Downing Street’, ‘461 Ocean Boulevard’, ‘77 sunset Strip’, ‘Apollo 13’, ‘Catch 22’, ‘Henry VIII’, ‘Pope Leo X’, ‘4th July’, ‘M9’와 ‘Happy 21st Birthday’는 소명으로 성립될 수 있다.

21.16. 1959년 1월 1일 이후에 품종 소명이 “form”, “variety” 또는 이들의 약어나 다른 언어로 이에 해당하는 단어가 포함된다면 명칭으로서 성립되지 않는다.

예. 29. *Persicaria affinis* ‘Lowndes’s Variety’는 1958년 이후에 출간되었기 때문에 인정이 되지 않았다(인정된 명칭은 *P. affinis* ‘Donald Lowndes’). 또한 *Iris chrysographes* ‘Inshriach Form’도 1958년 이후에 출판되었기 때문에 인정이 되지 않았다(인정된 명칭은 *Iris chrysographes* ‘Inshriach’). 그러나 *Hebe* ‘Longacre Variety’와 *Hypericum* ‘Rowallane

Variety'는 모두 1959년 이전에 출판되었기 때문에 인정이 되었다.

21.17. 1996년 1월 1일 이후에 품종 소명이 어떤 언어로든 다음과 같은 단어를 포함할 경우 명칭이 성립되지 않는다: “cultivar”, “grex”, “group”, “hybrid”, “maintenance”, “mixture”, “selection”, “series”, “sport”와 “strain” 또는 이들의 복수 형태나 “improved”와 “transformed” 단어 또는 어떤 언어로든 이와 상응하는 단어.

21.18. 1996년 1월 1일 이후에 로마자로 쓰여질 때 품종 소명이 작은 따옴표(‘), 쉼표(,), 두 개까지의 인접하지 않은 감탄사(!), 마침표(.), 또는 하이픈(-), 사선(/)이나 역사선(≡) 기호를 제외한 구두점을 포함하면 명칭은 성립이 되지 않는다.

예. 30. 소명 ‘Beryl, Viscountess Cowdray’, ‘Jeanne d’Arc’, ‘Oh Boy!’, ‘E.A. Bowles’, ‘Sing, Sing, Sing’, ‘ENT/100’, ‘Go-go Dance’, ‘Westward Ho!’, and ‘Wham! Blam!’은 인정되지만, ‘Help!!!’와 ‘Simon Who?’는 인정되지 않는다.

예. 31. a San actor from Namibia를 기념하며, 품종소명 ‘N!xau’는 인정된다. 이 경우 감탄사 기호는 the San language의 “딸깍” 소리의 하나를 나타낸다.

21.19. 품종 소명이 조항 21.18에 명시된 것을 제외한 부호를 포함한다면 명칭은 성립이 되지 않는다(표기된 기호를 위해 조항 35.8 참고).

예. 32. 소명 ‘Happy@home.com’, ‘Sambuca®’, ‘\$Million’, ‘100%’, ‘Two+Two’와 ‘1/2 Empty’를 포함하고 있는 명칭은 인정되지 않으나, 소명 ‘Million Dollars’, ‘Two Plus Two’,와 ‘Half Empty’는 인정될 수 있다.

21.20. 언어학적 관례의 요구를 제외하고, 1996년 1월 1일 이후에 품종 소명에 라틴명이나 일반명을 포함할 경우에는 명칭으로서 성립이 되지 않는다.

예. 33. *Castanea* ‘Pale Chestnut’, *Gladiolus* ‘Pink Gladiolus’, *Narcissus* ‘Davis Daff’, *Narcissus* ‘Granny’s Daffodil’, *Paeonia* ‘Sussex Peony’, *Phlox* ‘Phlox of Sheep’과 *Rhododendron* ‘Rhododendron Mad’는 수립될 수 없다.

예. 34. *Dianthus* ‘Rupert’s Pink’는 인정이 된다. “pink”는 *Dianthus* 속의 모든 식물을 위한 일반명이 아니기 때문이다.

예. 35. *Prunus* ‘Sato-zakura’는 인정이 된다. “zakura”는 전체 속을 위한 명칭이기보다는 벚꽃의 일본어이기 때문이다.

예. 36. 소명에 포함된 “ya”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배(*Pyrus*)의 중국명칭 “li”이란 단어를 포함하는 *Pyrus bretschneideri* ‘Ya Li’는 인정이 된다.

21.21. 조항 21.20에도 불구하고 종의 토착어 명칭을 포함하고 있고 로마자로 기록된 일본어 명칭은 로마자로 쓰인 품종명으로 만들 수 있다.

예. 37. “Ögon-Setouchi-Gibōshi”는 *Hosta pycnophylla*의 노란 잎 품종을 위해 일본에서 사용되는 명칭이다. 품종 소명 ‘Ögon-Setouchi’는 “Gibōshi” 단어를 삭제하거나(속명인 *Hosta*와 동일시됨) 종의 토착명칭인 “Setouchi” 단어를 유지함으로써 파생될 수 있다.

예. 38. “Fuiiri-Tenjiku-Suge”는 *Carex*의 명칭이 다른 토착어 “Suge”와 *Carex phyllocephala*를 토착어 *Carex* ‘Fuiiri-Tenjiku’, “Tenjiku-Suge”로 되었다; *Nelumbo* ‘Öga-Hasu’는 일본어로 “Hasu”가 *Nelumbo(N. nucifera)*를 의미하여 *Nelumbo* ‘Öga’가 되었다.

21.22. 1959년 1월 1일 이후에 품종 소명이 속명이나 종의 일반명, 또는 다른 분류군집합의 명칭이 있고 이러한 소명의 사용상 혼돈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인정이 되지 않는다.

예. 39. *Erica* ‘Calluna’와 snowdrop ‘Snowflake’ 명칭은 시장에서 각각 ‘Calluna’ heather와 ‘Snowflake’ snowdrop을 나타내면서 사람들이 혼돈을 일으키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ash ‘Veronica’, *Dianthus* ‘Victoria’, *Lilium* ‘Erica’, *Magnolica* ‘Daphne’과 *Rhododendron* ‘Calypso’는 비록 소명이 속명이지만 각각 ‘Veronica’ ash, ‘Victoria’ *Dianthus*, ‘Erica’ *Lilium*, ‘Daphne’ *Magnolica*와 ‘Calypso’ *Rhododendron*로 쓰여도 혼돈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모두 인정될 수 있다.

예. 40. “heather”는 *Calluna* 속을 판 영어의 일반명이고 “herb robert”는 *Geranium robertianum*을 판 영어의 일반명이며 “jupiterbloem”은 *Silene flos-jovis*를 판 독일어의 일반명이기 때문에 *Calluna* ‘Heather’, *Geranium* ‘Herb Robert’와 *Silene* ‘Jupiterbloem’는 인정될 수 없다.

예. 41. 1959년 이전에 출판된 자두 품종 ‘Apricot’과 ‘Peach’ 명칭 또는 *Prunus domestica* ‘Apricot’과 *Prunus domestica* ‘Peach’(Hogg, 1866)는 인정된 명칭으로 간주 할 수 있다.

예. 42. *Cattleya warneri* ‘Poa’, *Dahlia* ‘Northwest Cosmos’(미국의 야구/축구팀 이름), *Dianthus* ‘Giulia Viola’와 *Rhododendron* ‘Nancy Stipa’는 명칭으로 인정되었다.

예. 43. *Lilium* ‘Henri’는 심지어 *Lilium henryi*가 있는데도 인정이 된다; *Clematis* ‘Florida Blue’는 *Clematis florida*(“Florida” 품종소명의 일부이고 지명)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이 된다.

21.23. 1996년 1월 1일 이후에 품종 소명이 분류군집합에서 현존하는 소명과 매우 유사해서 품종이 명칭상 혼돈을 일으킨다고 지적될 경우에는 이 명칭은 인정이 되지 않는다.

예. 44. 1996년 1월 1일 이후에 출판이 제청되면서, *Ilex* ‘Green Point’는 기존의 *I. crenata* ‘Greenpoint’와 혼돈되기 때문에 인정될 수 없다.

예. 45. ‘Susannah’라는 품종명은 같은 분류군집합에 기존의 ‘Susanna’가 있다면 인정이 될 수 없다. 그러나 ‘Susanne’처럼 발음상 차이가 뚜렷하다면 혼돈된다고 생각되지 않을 수 있다.

예. 46. *Erica carnea* ‘Mrs D. E. Maxwell’은 기존의 *E. vagans* ‘Mrs D. F. Maxwell’과 혼돈이 되기 때문에 인정이 될 수 없다. 그러나 *E. carnea* ‘S. A. Maxwell’은 인정 될 수 있다.

예. 47. 품종명 *Narcissus* ‘Miss Amy Johnson’은 기존의 *N.* ‘Amy Johnson’과 혼돈되기 때문에 인정 될 수가 없다.

예. 48. *Dianthus* ‘Sara’와 *D.* ‘Zara’는 인정 될 수 없다; *Dianthus* ‘Samur’과 *D.* ‘Samurai’는 인정 될 수 있다.

예. 49. *Rhododendron* ‘Lady White’와 *R.* ‘Ladies’ White’는 인정 될 수 있다.

21.24. 1959년 1월 1일 이후로 품종 소명이 품종의 가치를 과장하므로써 유사한 특성을 가진 새로운 품종의 차후 도입에 혼돈이 된다면 이 명칭은 인정 될 수가 없다.

예. 50. 1958년 이후에 출판된 apple ‘Earliest of All’, *Vicia faba* ‘Longest Possible’과 *Laburnum* ‘Latest and Longest’는 인정이 될 수 없다.

예. 51. *Epiphyllum* ‘Germany’s Best’는 인정 될 수 없지만 *Phlox* ‘Excellent’는 가능하다.

§5: 다른 규정

21.25. 품종 소명은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10 글자까지 규정 형식에 따른다. 단 문자 또는 문자들과 숫자 하나 또는 숫자 4개의 교호집합 이하로 구성되어야 한다.

예. 52. ‘12AB34CD’, ‘123-abcd4’, ‘123/ABCD4’와 ‘Abc1234de’를 가진 소명의 명칭은 성립이 될 수 있으나 ‘12-AB 34 CD 1’과 ‘1A2B/33’은 인정 될 수가 없다.

예. 53. 다수의 클론 대목은 ‘M9’, ‘M16’, ‘M25’, ‘M26’과 ‘M27’과 같이 연속적인 품종소명으로 발

표한 East Malling Research Station(영국)에 의해 이루어졌다.

예. 54. ‘E9730LM’, ‘HA-OL 9’, ‘NS-HA26’, ‘PF 090A’, ‘H 209 A/B’와 ‘PR64A82’라는 이름과 함께 쓰는 *Helianthus annuus* 품종은 식물육종가권리의 증서로서 품종명이 인정되었다.

주석 3. 간혹 문자와 숫자 또는 숫자 배열로 구성된 수집가 또는 육종가가 붙인 번호가 있는데 이는 품종소명으로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권고 21C 참고).

예. 55. 이 경우, 소명이 수집의 참고 번호이기 때문에 *Corydalis taliensis* ACE 2443은 *Corydalis taliensis* ‘ACE 2443’ 또는 *Corydalis taliensis* ‘Ace 2443’로 쓰일 수가 없다.

권고 21A

21A.1. 품종이 종의 계급 또는 그 이하의 분류군으로 지정될 수 있다면, 이 분류군의 명칭 또는 분명한 일반명은 사용자들에게 식물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려 주기 때문에 품종 소명과 동반해야만 한다.

예. 56. *Cyclamen hederifolium* var. *hederifolium* f. *albiflorum*(Bowles’s Apollo Group) ‘Artemis’는 *Cyclamen* ‘Artemis’보다 훨씬 유용한 정보가 제공된다.

권고 21B

21B.1. 종 또는 그 이하의 계급에서 품종명의 소명이 분류군의 ICBN에 따라 지정받은 정명의 라틴어 형태로 최종 소명을 중복해서는 안 된다. 품종에 적용된 조항 21.6에 따라서 채택된 다음 채택된 명칭의 최종 소명을 사용해야 한다. 만약 최종 소명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품종은 새 이름이 주어져야 한다.

예. 57. Ingram(*Baileya* 15(1): 29, 1967)에 의해 출판된 *Hosta sieboldii*는 그 자체 없이 얼룩덜룩한 식물에 근거한 *Hemerocallis sieboldii* of Paxton(*Mag. Bot.* 5: 25, 1838, 년 3월) 명칭에 기반을 두고 있다. Paxton이 현재 재배되는 품종과 관련이 있다면 이 품종은 *Hosta sieboldii* ‘Sieboldii’로 하면 아니 되고 *Funckia albomarginata* of Hooker, ICBN에 따라서 이후 효력이 인정된 출판물에 기록 되어진 명칭을 근거로(*Bot. Mag. tab.* 3567, May, 1838), ‘Albomarginata’이 사용되어야 한다.

예. 58. *Viburnum bodnantense* ‘Dawn’은 *Viburnum* × *bodnantense*(*V. grandiflorum*과 *V. farreri*)의 교잡에 의해 출현한 식물 명칭)에 기반을 두었으며 원래의 품종과 구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예. 59. *Epimedium* × *warleyense*는 W. T. Stearn(Journ. Linn. Soc. Bot. 51: 519–520, 1938)에 의해 출판되었고 *E. alpinum*과 *E. pinnatum* 사이에서 교잡된 후손을 아우른다고 할 수 있다. 명칭을 위한 명명기준은 E. S. Lyttel(My Garden 12: 486, 1937)에 의해 'Willmottiae'라고 따로 명명된 정원식물의 표본이다. 그래서 잡종 소명을 기준으로 한 품종의 전체 명칭은 *E.* × *warleyense* 'Willmottiae'이고 이 명칭은 동일 교잡 집단내에서 구별되는 다른 후손과 원래의 품종을 구분 짓는데 유효하다.

권고 21C

21C.1. 예를 들어서 식물을 선발 또는 평가하는 동안 사용이 되고 있고, 명명 업무가 진행되고 있는 이름은 다른 품종에 먼저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예. 60. *Dianthus* LADY MADONNA('WP04 Opal')는 "Opal"과 "Devon Opal" 모두 선발되는 동안 알려졌다. 아직 완료되지 않은 업무상 진행중인 명칭은 다른 품종에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권고 21D

21D.1. 품종 소명은 현실적이고 짧아야 하며 쓰고 읽기 어려운 지나치게 긴 단어를 포함하거나 구성해서는 아니 된다.

예. 61. 'Diplomgartenbauinspektor'는 지나치게 길고 읽고 쓰기에 어려울 수 있다.

권고 21E

21E.1. 소명이 현존하는 사람의 이름이거나 그것을 포함하는 품종명은 그 사람이 그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출판될 수 없다.

권고 21F

21F.1. 품종명은 소명이 시장에서 접하기 쉬운 용어로 구성되어 혼란을 일으킨다면 출판될 수 없다.

예. 62. 'Bonsai', 'Ten Dollars', 'Two Litres', 'Container Grown', 'Poisonous', 'Post Paid'와 'Tax Free' 품종 으로 된 것은 피해야 한다. 그러나 'Million Dollars'와 'Ten Bob Note' 는 마케팅 식물에서 혼란을 일으키지 않을 수도 있다.

권고 21G

21G.1. 품종명은 오직 한 단어이거나 형용사의 단어들로 구성이 된다면 출판해서는 아니 되며 일부 특징 또는 분류군의 집합 품종에서 공통된 특징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예. 63. 품종명 'Blanche'("White"라는 프랑스어 또는 여자 이름), 'Large', 'Large White', 'Double Red', 'Ogon'("gold" 또는 "golden"의 일본어)과 'Variegated'을 갖는 명칭은 피해야 한다.

권고 21H

21H.1. 품종명은 품종이 보유하고 있지 않는 특징을 하나 또는 그 이상을 가지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 경우에는 출판해서는 아니 된다.

예. 64. 정확한 "flag" iris("flag"는 아이리스 육종가들에 의해 특정한 종류의 아이리스 꽃을 지칭하기 위해 사용되는 용어)가 아니라면 *Iris* 'American Flag'라고 출판해서는 아니 된다. 붉은 과피를 가지지 않는 품종이라고 여겨진다면 apple 'Redskin'라고 출판해서는 아니 된다.

권고 21I

21I.1. 만약 품종의 이름이 그 품종이 실제로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품종과 연관되거나 파생된 느낌을 주게 되는 것이라면 이 품종명은 출판되어서는 아니 된다.

예. 65. *Lilium* 'Bellingham Supreme'은 품종이 *Lilium* Bellingham 그룹의 다른 것들과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출판해서는 아니 된다.

권고 21J

21J.1. 품종명은 명칭이 재배자, 육종가, 도입자 또는 출처의 독자성(identity)을 고려해서 거짓된 인상을 주는 것이라면 출판해서는 아니 된다.

예. 66. *Potentilla* 'Davidson's Red'는 재배자가 Davidson이라는 사람이 아니라면 출판해서는 아니 된다; apple 'East Malling Champion'은 만약 사과의 육종 작업을 기록하는 영국 East Malling 소재의 연구소와 관련된 이력이 없다면 출판해서는 아니 된다.

권고 21K

21K.1. 품종명은 명칭이 불쾌함을 초래한다면 출판해서는 아니 된다.

조항 22: 그룹(Group)의 명칭

22.1. 그룹의 명칭은 그룹 소명(Group epithet)과 함께 쓴 *ICBN*에 의거한 속의 정명 또는 애매하지 않는 보통명 또는 지정된 하위 분류군의 조합을 말한다(조항 8.1, 조항 11.4과 조항 32.2 참고).

예. 1. *Allium cepa* Shallot Group; *Brassica oleracea* Germmifera Group; *Dracaena Deremensis* Group; *Hydrangea* Lacecap Group; *Rosa Polyantha* Group.

주석 1. 속 또는 하위 분류군의 명칭이 혼란 없이 맥락으로부터 분명하다면 그 그룹의 소명은 단독 또는 라틴어나 일반명과 분리 할 수 있다.

22.2. 그룹 소명은 한 개의 단어 또는 다른 현대어의 단어 “Group”과 관련이 있고 이에 상응하는 단어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예. 2. *Abutilon Darwinii* Group; *Brassica rapa* Pak-choi Group; *Fagus sylvatica* Purple-leaved Group; *Solanum aethiopicum* Gilo Group; *Vicia faba* Elatae Group.

22.3. 그룹 소명의 각 단어는 언어학적 관계가 요구되지 않는 것이라면 첫 글자는 대문자로 시작해야 한다. 언어학적 관계에도 불구하고 “Group”이란 단어나 다른 언어로 이것과 상응하는 단어는 로마 문자인 경우, 첫 글자는 항상 대문자로 써야 한다.

22.4. 단어 “Group”과 관련된 그룹 소명의 일부를 작성하면서 조항 21.5–21.24와 권고 21A–K(권고 21G 포함) 경우와 같이 규칙(rules)은 품종 소명의 형성을 좌우하면서 적용(“cultivar”을 “Group”로 정정)될 것이다; 그러나 조항 21.20처럼 수립된 관습(established practice)은 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따라야 한다.

예. 3. *Beta*(비트)와 같은 채소작물에서 널리 알려진 관습에 따라서 *Beta Spinach Beet* Group 명칭이 채택된 것으로 간주한다.

예. 4. Cumberland and Westmorland Purple Group이라는 명칭은 채택이 가능할 것이다(조항 21.13).

22.5. 조항 21.17에도 불구하고 단어 “Group” 또는 어떤 언어로든 이와 상응하는 단어는 그룹 소명의 일부라고 간주된다(조항 15.1 참고). 이는 그룹 소명에서 오직 한 번 있을 수가 있다.

22.6. 그룹 소명이 2004년 1월 1일 이전에 만들어진 계품 소명으로 형성된다면 이전의 계품 소명은 그룹 소명을 만들기 위해 “grex”를 교체하면서 “Group”이라는 단어와 함께 사용된다.

예. 5. *Lilium Celica* Group은 *L.* ‘Pumpkin Sweet’과 *L.* ‘Unique’의 교잡으로 작출된 모든 후손들을 아우르기 위해 계품으로 되었다. 이는 *International lily register*, Suppl. 11:8, 1993에서 기재된 특징을 공유한다.

예. 6. 본 규약 이전 판의 규정에 따라서 *Lilium Mount Shasta grex*은 *L. kelloggii* 와 *L. pardalinum* 사이의 잡종으로 지정되었다. 계품 체계가 더 이상 백합으로서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명칭은 *Lilium Mount Shasta* Group이다.

예. 7. *Rhododendron Jacqueline* Group은 *R.* ‘Albatross’와 *R. facetum*가 교잡된 모든 후손을 위해 지정된 것이다(*International rhododendron register* 124, 1958 참고).

권고 22A

22A.1. 만약 그룹의 범주가 품종의 범주보다 더 적합하지 못하다고 생각되어 분류군집합에서 이전에 만들어진 품종명의 소명과 그룹의 소명이 혼란될 정도로 유사하거나 동일하다면 그룹의 명칭은 출판되어서는 아니 된다.

예. 8. *Hosta* ‘Frances Williams’이 제정된 이후에 품종으로 유지되고 있는 한 *H. Frances Williams* Group은 출판될 수 없다.

예. 9. *Ranunculus ficaria* Brazen Hussy Group은 만약 *R.* ‘Brazen Hussy’가 품종명으로서의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결과로서 같은 특성을 지니고 있는 다른 식물과 더 이상 구별이 되지 않는다면 출판을 할 수 있다.

조항 23: 계품(Grexes)의 명칭

23.1. 계품명은 계품 소명과 함께 쓴 *ICBN*에 따른 속의 정명 또는 애매하지 않는 일반명과 조합이다.

23.2. 계품 소명의 각 단어는 특별히 언어학적 관계가 요구되지 않는다면 첫 글자를 대문자로 시작해야 한다(권고 23A 또한 참고).

23.3. 계품 단어와 관련된 계품 소명의 일부를 작명하는데 있어서 조항 21.5–21.24와 권고 21A–K 경우와 같이 품종 소명의 작명을 좌우하는 규칙이 적용될 것이다(“cultivar”를 “grex”로 정정).

예. 1. *Paphiopedilum Greenteaicecreamandraspberrries grex*은 채택명이다(조항 21.13).

23.4. 조항 21.17에도 불구하고, 단어 “grex” 또는 “gx”는 계품 소명에서 단 한번만 쓸 수가 있다.

23.5. 2010년 1월 1일 부터 계품 소명은 같은 계통을 가진 중간잡종 소명(nothospecific epithet)과 동일하다면 성립이 될 수 없다.

주석 1. 동일한 혈통을 가진 계품과 중간잡종은 중간잡종이 여교잡을 포함하기 때문에 동등하지 않지만 여교잡된 계품은 다른 계품의 소명을 필요로 하는 다른 분류군으로서 간주된다.

주석 2. 계품과 동일한 혈통의 중간잡종 사이의 교배 후대는 새로운 계품을 형성하지 못한다. 이러한 교배 후대들을 위해서 사용되는 명칭은 중간잡종의 명칭이다.

예. 2. *Pleione × lagenaria (P. maculata × P. praecox)*는 수립된 계품들을 포함한다: Confirmation grex (*P. maculata × P. praecox*); Liz Shan grex (Confirmation grex × *P. praecox*); Lassen Peak grex (*P. praecox × P. × lagenaria*)(Orchid review 116(1282): 210–214 (2008) 참고).

주석 3. 2010년 1월 1일 이전에 만들어진 중간잡종과 계품은 같은 소명을 공유할 수 있다. 소명은 중간잡종의 경우, 앞에 곱하기 기호의 사용, 이탤릭체와 첫 글자의 소문자 사용 그리고 계품(또는 계품들)의 경우에는 곱하기 기호, 이탤릭체와 첫 글자 대문자 사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서 인쇄상 구분될 수가 있다.

예. 3. *Cattleya × claesiana* Rolf. (*C. intermedia × C. loddigesii*)는 계품 *C. claesiana* grex과 동등하다.

권고 23A

23A.1. 조항 23.2에도 불구하고 “grex” 또는 “gx”는 이미 정해진 관습에 따라서 소문자로 시작해야 한다.

조항 24: 접목키메라(Graft-Chimeras)의 명칭

24.1. 접목키메라가 두 속 조합일 때 접목키메라는 공식 또는 라틴어 형식의 속명에 의해 지정된다.

24.2. 접목키메라를 위한 공식은 더하기 기호 “+”와 연결된 알파벳 순서로 배열된다. 띄어쓰기는 위와 같은 공식에서 더하기 기호의 양쪽에 한 글자 정도의 여백을 남겨 두어야 한다.

예. 1. *Crataegus + Mespilus, Cytisus purpureus + Laburnum anagyroides*, 그리고 *Syringa × chinensis + S. vulgar*는 접목키메라를 위한 공식이다.

24.3. 접목키메라의 구성 분류군이 다른 속에 속할 때 라틴어 형태로 된 유일한 명칭은 더하기 기호 “+”가 접두사로 되면서 다른 구성요소 속의 전체 명칭의 모음과 연결된 구성요소 속들의 하나의 속 명칭의 일부를 조합하여 형성할 수 있다. 더하기 기호와 속명 사이는 한 글자 정도의 여백이 있어야 한다. 이처럼 만들어진 속명은 ICBN 조항에 따라서 유효하게 출판된 잡종 속 또는 다른 속의 명칭과 동일해서는 아니 된다.

예. 2. + *Crataegomespilus*는 *Crataegus*와 *Mespilus* 사이의 접목키메라를 위한 명칭이나, ICBN 조항에 따라 유효하게 출판된 × *Crataemespilus*는 *Crataegus*와 *Mespilus* 사이의 교잡종 명칭이다.

24.4. 새로운 속명이 조항 24.3에서 제시된 것과 같이 형성 되었다면 접목키메라 품종명은 품종의 소명 뒤에 접목키메라의 속명으로 구성된다.

예. 3. + *Laburnocytisus ‘Adamii’*는 *Cytisus purpureus*와 *Laburnum anagyroides*의 접목키메라 명칭이다.

예. 4. + *Crataegomespilus ‘Dardarii’*는 *Crataegus monogyna*와 *Mespilus germanica*의 접목키메라의 명칭이나 × *Crataemespilus gillottii*는 두 종 사이의 잡종 명칭이다.

24.5. 접목키메라의 분류군 구성이 같은 속에 속할 때, 접목키메라의 명칭은 속의 명칭 뒤에 품종 소명이 따른다.

예. 5. *Camellia ‘Daisy Eagleson’*은 *C. japonica* 의 조직과 결합된 *C. sasanqua ‘Maiden’s Blush’*의 조직을 가지고 있는 접목키메라이다.

24.6. 분리된 품종으로 취급되고 그에 따라 명명 되었을 경우에 독특한 접목키메라는 같은 분류

군 구성에서 발생할 수 있다.

예, 6. + *Crataegomespilus 'Dardarii'*와 + *Crataegomespilus 'Jules d'Asnieres'*는 접목키메라 *Crataegus monogyna* + *Mespilus germanica*에서 나온 독특한 품종이다.

제Ⅵ장: 출판과 수립

조항 25: 출판 조건

25.1. 출판은 일반인 또는 식물학자, 농학자, 수목관리원 또는 원예가가 접근이 쉬운 공공 기관이나 도서관이 있는 최소한 식물학, 농학, 임학 또는 원예 관련 기관의 인쇄물 또는 지워지지 않는 자필(판매, 교환 또는 기증품)을 포함한 유사 매체나 인쇄물의 배포에 의해서만 성립이 된다. (a) 공개 회의에서 새로운 명칭의 알림 (b) 대중에게 공개된 수집품 또는 정원 내 명찰의 명칭 (c) 원고, 타자인쇄물, 또는 다른 미출판 자료로 된 마이크로폼(미소 축쇄판)의 발행 (d) 전자매체를 통한 출판(권고 2B.2와 조항 26, 주석 1을 참고) 또는 (e) 일반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비밀교역 목록으로 출판된 것은 성립되지 않는다.

주석 1. 본 조항에서 인쇄물은 다수의 동일하고 명확하고 지워지지 않는 사본이 만들어지는 기계적 또는 컴퓨터 그래픽으로 복사된 출판물을 말한다.

주석 2. 본 조항에서 지워지지 않는 자필은 기계적 또는 컴퓨터 그래픽(석판인쇄, 오프셋인쇄, 또는 금속식각과 같은)을 통해서 의해 복사된 자료를 의미한다.

25.2. 조항 22.1에도 불구하고, 중국, 일본과 한국의 책들은 1900년 1월 1일 이전에 원본을 손으로 옮겨 쓴 필사본의 경우는 출판된 것으로 간주한다.

25.3. 속간 접목키메라의 일반 명칭이 1953년 1월 1일 이후에 필사본 또는 교역 목록(trade catalogues), 전문지가가 아닌 신문에 발간되거나 1973년 1월 1일 이후에 작성된 종자교환 목록에 발간되었다면 이 일반명칭은 출판이 되지 않는다.

권고 25A

25A.1. 저자들은 특히 제한되고 명확하지 않은 부수로 계속 늘어나고 원고의 연속성이 없으며 사본의 경우, 숫적인 면으로 볼 때 출판된 것이 분명하지 않거나 인쇄물이 조항 25.1에 제시된 바 임시적 성격이 있는 인쇄물에 그룹 또는 품종의 새로운 명칭을 출판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

권고 25B

25B.1. 출판 사본, 특히 새로운 품종 또는 그룹 명칭을 포함한 교역 목록은 국제품종등록기관에 보낼 것을 권고한다.

25B.2. 교역 목록이 전자매체로 출판되었다면 이에 대한 공식적인 출판은 지정된 도서관에 두 별의 사본과 인쇄물을 제출함으로써 출판된 것으로 본다(부록6 참고). 목록을 출판한 출판사는 이의 사본은 인쇄하여 배포하는 것을 강력히 권장하지만 한 출판인은 먼저 출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25B.3. 권고 25B.2와 더불어 사본은 적어도 5곳의 도서관에 배포하기를 권장한다.

조항26: 출판 일자

26.1. 1959년 1월 1일 이후부터 출판된 품종, 그룹, 계통, 또는 속간 접목키메라의 속명 등의 출판 날짜가 분명하게 기입되었다면 이는 출판된 것으로 간주한다.

26.2. 출판 일자 는 조항 25.1에서 정의한 것처럼 출판이 이루어진 날짜를 말한다. 출판사 또는 출판 대리인이 일반인들에게 배포 하기 위해서 일반 운송업체에 인쇄물을 배달한 일자와 같이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출판된 것 그 자체로 인정 될 수 있다.

주석 1. 교역 목록이 전자 매체로부터 인쇄되었을 때(권고 25B.2), 출판 일자 는 그들이 받은 두 개의 사본이 지정된 도서관에 의해서 입수 확인이 기록된 날짜로 해야한다.

26.3. 연대가 표시된 교역 목록이나 다른 출판물이 1년 이상 2년에 걸쳐 지속될 때 특별히 반대할 근거가 없다면 앞서 표시된 날짜를 출판 일자 로 인정한다.

예. 1. 1993년 여름에서 1994년 봄까지 걸쳐 이어진 교역 목록은 1993년 여름에 출판된 것으로 간주한다.

26.4. 조항 26.1에 불구하고, 만약 인쇄된 교역 목록이 날짜에 대한 증거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그 다음에 출판된 연구(research)결과의 출판일이 이 출판의 유효 날짜로 결정될 수도 있다.

예. 2. 다수의 종묘회사 목록과 아일랜드, the Daisy Hill Nursery로부터 나온 다른 간행물은 날짜가 없이 출판이 된다. 그들의 날짜의 일부는 차후 연구에 의해 수립되거나 E. Charles Nelson & Alan Grills, *Daisy Hill Nursery, Newry: a history of 'the most interesting nursery*

probably in the world', Northern Ireland Heritage Gardens Committee, Belfast, 1998의 부록에서 출판이 된다.

권고 26A

26A.1. 인쇄된 교역 목록이나 다른 간행물이 영구적이지 않을 것 같은 시트(sheets)들로 구성된 경우에는 각 시트는 최소한 연도가 분명하게 기입되도록 해야 한다.

조항 27: 수립(Establishment)의 조건

27.1. 이 규약에 의해 명칭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a) 의미있는 분류군집합(조항 6.1)에 시점(starting-point) 또는 그 이후에 출판되어야 한다. (b) 일자가 기입된 간행물에 나와야한다(조항 26), (c) 품종을 위한 조항 21.5-21.25, 그룹을 위한 조항 22.4-22.6, 계통을 위한 조항 23, 속간 교잡 접목키메라의 속명을 위한 조항 24.3의 규정이 준수된 형태이어야 하고 (d) 1959년 1월 1일 이후에 출판된 품종 또는 그룹을 위해서는 이전에 출판된 사항에 대한 언급 또는 기재가 동반되어야 한다(조항 27.3-27.5 참고).

27.2. 이 규약의 목적을 위한 기재는 (a) 품종이나 그룹의 한 가지 또는 그 이상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특징이 있거나 (b) 이전 또는 동시에 수립된 명칭으로부터 새로운 품종과 그룹을 구별 할 수 있는 1개의 단어 또는 그 이상의 단어들 을 말한다.

27.3. 계통의 명칭(4.1조항)과 속간교잡 접목키메라(24.3조항)의 속명은 만약 계통 또는 관련된 접목키메라 양친의 모든 채택명이 27.1(a)-(c) 조항의 규정을 충족하는 출판 시기가 명시되었다면 이는 성립이 된다.

예. 1. *Thrixspermum* Eric Holttum grex는 어떠한 기재(24.1(d)조항)도 없이 Alex Hawkes (*Orch. Rev.* 63(742): 58, Apr. 1955)에 의해 만들어졌지만 단지 *T. amplexicaule* × *T. scopae*인 혈통이라고 명시되어 이루어졌다.

예. 2. + *Crataegomespilus*은 Simon-Louis (*Rev. Hort.* 1899: 403, 530, Sept. 1899)에 의해 구성 분류군이 *Crataegus*와 *Mespilus*이라고 명시되면서 이루어졌다.

27.4. 27.1조항과 27.3조항 에도 불구하고, 계통 명칭(4.1조항)은 만약 한 부모의 전체 명칭이 알려져 있지만 다른 한 부모의 속명 또는 속간잡종만 알려져 있고 27.1 (a)-(c)조항의 규정을 충족 하면서 출판 시기가 명시된다면 성립이 될 수 있다.

27.5. 27.1조항에도 불구하고 만약 법정식물등록기관(SPRA)에 의해 유지되는 등록에서 동등한 용어로 채택된다면 품종의 명칭은 수립이 된다.

주석 1. 일부 규칙(regulations)에서 “variety denomination”이란 용어는 “마케팅을 위해 승인된 명칭”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고 이 규약에서 정의한 것처럼 “cultivar name” 용어와 동일시 취급한다.

27.6. 국제품종등록기관이나 법정식물등록기관에 일시적으로 등록해서 출판한 저자에 의해 채택되지 않은 명칭은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예. 3. Preliminary checklist of *Erodium cultivar names*, issue 2: 6. 1999에서 국제품종등록기관에 의해 등록된 *Erodium daucoides* ‘Pico de Fraile’은 분명하게 “상황: to be confirmed(확정됨)”라고 표시되고 자세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출판물에서는 정식 명칭으로써 성립이 되지 않는다.

주석 2. 식물육종가권리의 부여 이전에 제청된 품종명(variety denominations)은 수립되지 않는다. 단지 그러한 권리를 부여 받고난 다음에 인쇄되거나 전자문건으로 결정이 공표되었을 때만 품종명(variety denominations)이 수립되는 것으로 본다. 명칭의 일자는 그러한 권리를 부여받은 일자를 말한다.

예. 4. 네덜란드(Publikatieblad 432: 3. 2003)에 식물육종가권리보호를 위한 신청서에 등록된 *Delphinium* ‘Princess Caroline Sunrise’는 신청서가 이 명칭으로 받아들여졌다는 것만으로는 성립되지 않고 이름이 권리 부여의 하나로서 출판이 될 때에 가능하다.

27.7. 이 규약에 의거한 명칭은 출판 시기에 그 명칭을 제청한 식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성립이 될 수가 없다.

27.8. 조항 11.4와 32.2에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품종, 그룹, 또는 계품은 저자가 같은 품종, 그룹, 또는 계품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같은 동일한 방법으로 동시에 출판 할 수 없고, 다만 하나만 성립이 될 수 있다. 한편 채택명이 되어야 하는 분명한 시사점이 없는 경우에는 성립이 되지 않는다.

권고 27A

27A.1. 어떤 새로운 품종 또는 그룹의 기재는 그 품종 또는 그룹이 유사한 품종 또는 그룹과 명료한 차이가 있어야 한다.

권고 27B

27B.1. 이전 출판시 기재된 명칭에 대한 언급은 (a) 저자명, (b) 간행물의 전체 제목, (c) 기재가 나온 페이지 번호와 (d) 출판 년도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권고 27C

27C.1. 컬러삽화 또는 이전에 출판된 컬러 삽화에 대한 언급은 새로운 품종 또는 그룹의 기재를 동반해야 한다.

권고 27D

27D.1. 새로운 품종명을 출판할 때 품종의 혈통과 역사, 품종 소명의 어원이나 의미, 재배자 또는 육종가, 명명자, 도입자의 이름을 명시해야 한다.

27D.2. 새로운 그룹 또는 계품명을 출판할 때 권고 27D.1.의 적절한 원리는 지정된 곳에 명시해야 한다.

권고 27E

27E.1. ICBN에 따라서 형성된 소명에 근거하여 새로운 그룹 명칭을 출판할 때 ICBN에 따른 전체 명칭이 인용되어야 한다.

예. 5. *Cucumis melo* Flexuosus Group은 *Cucumis flexuosus* L.에 근거하고 있다.

권고 27F

27F.1. 만약 새로운 품종, 그룹, 또는 계품명이 로마 문자 외의 문자로 사용된다면, 이 규약에서 권고하는 기준의 하나를 이용하고 소명을 로마 문자로 음역(조항 33.1)이나 표기(조항 43.1)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27F.2. 품종, 그룹, 계품 소명을 수립함에 있어서 로마 알파벳이나 문자가 아닌 다른 문자를 사용할 때 등록자는 이를 제공해야 하며 국제품종등록기관은 적절하게 로마 문자로 음역, 표기 또는 번역된 것 뿐만 아니라 본래의 문자 형태로 소명을 기록해야 한다.

권고 27G

27G.1. 새로운 품종 또는 그룹의 표본은 살아있든지 죽어있든지 간에 적절한 국제품종등록기관이나 어느 컬러 사진, 삽화 또는 다른 유사 자료와 함께 명명기준(제 V절과 부록 III 참고)의 수집품을 보유하는 공공 식물표본관에 보내져야 한다.

권고 27H

27H.1. 품종 또는 그룹을 위한 명명 기준을 유지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품종 또는 그룹을 정리할 때 이러한 사실을 언급해야 한다.

조항28: 저자명의 인용

28.1. 이 규약에 의해 통제받는 명칭을 수립한 저자의 이름은 언급할 필요가 없다.

28.2. 만약 품종, 그룹, 또는 계품의 명칭의 저자 인용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면 저자명은 품종, 그룹, 또는 계품명의 소명 뒤에 놓고, 이 경우 명칭의 수립에 기여한 저자명은 그 소명의 본래 분류학적 위치를 고려하지 않고 언급하도록 한다.

예. 1. *Larix decidua* ‘Cervicornis’ Beissner 인용은 비록 명칭이 본래 Beissner, *Handb. Nadelholzk.*, ed. 1, 328, 1891에 의해 *L. europaea* var. *cervicornis*로 출판되었다고 할지라도 사용될 수 있다.

28.3. 만약 라틴어를 제외한 언어로 형성된 그룹 소명이 번역되거나(조항 32.2), 품종, 그룹, 계품 소명이 음역(조항 33.1) 또는 복사되거나(조항 34.1), 조항 21.8–21.7, 조항 35가 제공하는 것처럼 개정된다면, 개정된 명칭(the resulting name)은 본래 이름처럼 같은 저자와 일자(조항 9.1)로 간주한다.

28.4. 만약 명칭이 등록자를 대신하여 국제품종등록기관에 의해서 수립이 된다면 명명자는 명칭을 출판하였더라도 등록자로서 인정되지는 않는다.

예. 2. *Narcissus* ‘Alnwick Beauty’는 *the International daffodil register and classified list* (1998), 10th Supplement in 2007에서 수립되었다. 소명의 저자는 그 출판에서 명칭의 등록자로 언급된, D. C. MacArthur이다.

28.5. 법정식물등록기관(조항27.5)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품종명의 저자는 권리를 수여하는 기

관이나 명명자로 인정한다.

예. 3. Kathleen K. Meserve가 창시자에게 식물 특허의 부여를 동반한 the 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에 의해 발행된 서류에서 품종 둘 다 “the inventor”로 언급되었기 때문에, *Ilex* × *meserveae* ‘Blue Angel’와 *Ilex* × *meserveae* ‘Mesog’의 저자는 각각 *Ilex* × *meserveae* ‘Blue Angel’ K. K. Meserve와 *Ilex* × *meserveae* ‘Mesog’ K. K. Meserve로 쓰여졌다(각각 1974년 10월 17일에 부여받은 특허번호 3662와 1982년 8월 17일에 부여받은 특허번호 4878).

예. 4. 뒤에 나오는 사과와 전체 품종명과 저자는 P. Brindle가 권리의 “소유자”로 언급된 뉴질랜드식물품종권한기관의 공식적 저널에서 명칭이 수립된 것처럼 *Malus domestica* ‘Star Lady’ P. Brindle로 쓰여 진다(*New Zealand Plant Variety Rights Journal* 86: 5, 2001).

28.6. 만약 속간교잡 접목키메라의 속명에 대한 저자 언급이 바람직하다고 여긴다면 저자명은 속명 뒤에 놓일 수 있다.

권고28A

28A.1. 만약 저자명이 품종, 그룹, 계품, 또는 속간교잡 접목키메라의 속명 이후에 언급된다면 기호에 따라 저자 약어를 포함하는 ICBN의 조항 46, 47, 과 50의 규정이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어떤 곳이든 쓰여야 한다.

제Ⅷ장: 명칭의 선택, 재사용과 기각

조항29: 명칭의 선택

29.1.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품종, 그룹, 또는 계품 명칭이 조항 21.5 또는 22.4의 규정에 따라 라틴 형식으로 소명이 수립될 때, 경쟁적인 사용이 계속되기 때문에 제일 먼저 유효하게 출판된 라틴어 소명을 근거로 하며 명칭은 원래 계급과 상관없이 받아들여진다.

예. 1. ICBN에 따라 변종(*varietas*)의 계급(rank)에서 purple beeches를 위한 가장 빠른 사용 가능한 명칭은 1770년에 Weston에 의해 출판된 *Fagus sylvatica* var. *atropunicea*이지만 품종(*forma*)의 계급에서는 1864년 Kirchner에 의해 출판된 *F. sylvatica* f. *atropurpurea*으로서 두 명칭 모두 널리 이용되어 왔다. 만약 이 분류군이 나중에 품종(조항 2) 또는 그룹(조항 3)의 둘 중 하나로 된다면 사용 명칭은 *F. sylvatica* 'Atropunicea' 또는 *F. sylvatica* Atropunicea Group이다.

29.2. 동일한 품종 또는 계품을 사용함에 있어서 같은 언어로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명칭이 존재한다면 기존 사용이 가장 잘 보존된 명칭이 그것의 소명이 수립된 어떤 계급(조항 27.1), 선취권의 원리(조항 11.1, 조항 11.5 참고)를 무시하고 국제품종등록기관에 의해 채택명으로서 선택이 된다.

예. 2. *Erica vagans* var. *kevernensis*는 ICBN의 규정에 따라 1922년에 출판되었으며 조항 21.5의 규정에 따라 *E. vagans* 'Kevernensis'이 품종명으로 사용되어 왔다. 그로부터 3년 후에 같은 식물에 대해 *E. vagans* 'St Keverne'의 이름으로 출판이 되었는데 현재는 이 명칭이 더 널리 사용되고 있다. 국제품종등록기관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두 번째 소명을 Heathers(*Erica vagans*의 일반명)의 채택명으로 선택하였다.

29.3. 동일한 분류군집합에서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품종, 그룹, 또는 계품이 같거나 유사한 소명, 품종, 그룹 또는 계품을 받아드릴 때 그의 채택명은 소명이 국제품종등록기관에 의해 선택된 것을 포함한다(그러나 조항 11.5와 조항 31.2 참고). 명칭은 출판(조항 25.1)과 지정된 명명기준의 언급에 의해 확고해진다.

29.4. 만약 현재까지 인식된 종 또는 종 내의 분류군, ICBN에 따라 준비된 명칭이 더 이상 뚜렷한 분류군을 나타낸다고 생각되지 않거나, 만약 품종 또는 그룹을 위한 소명의 원치 않는 변화를

집행하지 않았다면, 이전 분류군 명칭의 소명은 후자가 라틴어 형태로 되었을 경우에 현재 품종 소명에 포함될 수 있는(a) 한편 품종 소명(조항 21.5)을 형성할 수 있고(b), 그룹 명칭의 소명(조항 3.3)을 형성할 수도 있다(c). 이러한 조치는 저자 인용에서 어떠한 변화도 포함하지 않는다(조항 28.2).

예. 3. 분류학적 이유로 *Cedrus atlantica*가 *C. libani*의 일부로 포함되고 *C. libani* Atlantica Group을 형성하는 것이 가치가 없는 한(조항 3.3), 본래 1900년에 A. H. Kent에 의해 부여된 재배품종 *C. atlantica* 'Aurea'는 1868년에 출판된 A. SÉNÉCLAUZE의 *C. libani* 'Aurea'와 혼란을 피하기 위해 *C. libani* 'Atlantica Aurea' Kent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예. 4. *Retinospora squarrosa*는 von Siebold에 의해 일본으로부터 벨기에로 수출된 식물인데 이는 1844년에 Zuccarini에 의해 유효하게 출판되었다. 이 식물은 현재 *Chamaecyparis pisifera*의 재배품종으로 취급되어지고 있으며 *C. pisifera* 'Squarrosa'로 명명되었다.

예. 5. *Hosta fortunei*는 더 이상 종으로서 여겨지지 않고 있지만 소명이 그룹의 명칭을 형성하기 위해 사용된다면(조항 3.3), *H. fortunei* 'Albopicta' 명칭은 *Hosta* (Fortunei Group) 'Albopicta'로 쓰여 질 수 있다.

권고 29A

29A.1. 같은 품종, 그룹, 또는 계품을 위해 쓰이고 있는 명칭에 대한 선취권을 취하는 품종, 그룹, 또는 계품들을 위해서 오래 전에 잊혀 졌거나 더 이상 쓸모가 없는 명칭의 부활은 피해야 한다. 만약 옛날 명칭이 현존하는 명칭에 대한 선취권이 있다면(조항 11.1), 조항 19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예. 6. H. Mullins에 의해 우연하게 실생묘에서 발견된 *Malus domestica* 'Mullins's Yellow Seedling'는 1914년에 소개되었고 1916년에 'Golden Delicious'로 재 명명되었다. 소명 'Golden Delicious'은 매우 잘 알려져 있어서 명칭이 본래 소명을 위하여 변경되지 않을 수 있다.

조항 30: 소명의 재사용

30.1. 만약 품종, 그룹, 또는 계품 소명 재사용이 적절한 국제품종등록기관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품종, 그룹, 또는 계품의 소명은 어떤 다른 품종, 그룹, 또는 계품을 위해 같은 분류군의 집합에서 재사용 되어서는 아니 된다.

주석 1. 만약 이러한 재사용이 법정등록기관의 규칙(regulations)에 따라 인정받는다면 이 소명은 재사용될 수 있다.

30.2. 만약 권한이 본래의 품종, 그룹, 또는 계품이 (a) 더 이상 재배되지 않거나, (b) 육종 소재로 존재하는 것이 금지되었거나 (c) 유전자 또는 종자은행에서 찾을 수 없고 (d) 다른 품종, 그룹, 또는 계품들의 족보에서 알려진 구성이 아니며 (e) 좀처럼 간행물에서 사용되지 않는 명칭이거나 (f) 재사용이 혼돈을 야기할 것 같지 않는다는 조건이 충족된다면 국제품종등록기관은 단지 품종, 그룹, 또는 계품 소명의 재사용을 받아드릴 수 있다.

30.3. 국제품종등록기관에 의해 재사용이 인정된 소명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the IUBS International Commission for the Nomenclature of Cultivated Plants는 최종적인 판결을 의뢰 받을 수 있다. 이런 경우 the Secretary of that Commission은 위원회가 판결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30.4. 국제품종등록기관에 의해 재사용이 받아드려진 소명은 나중에 그 품종계급에서 재사용할 수 없다.

30.5. 만약 같은 품종의 소명이 분류군집합에서 한 품종보다 더 많이 적용되어 왔다면(조항 6.1), 각 명칭의 적용은 도입 일자 또는 명칭의 일자를 넣거나 넣지 않은 재배자의 명칭과 같은 방안을 첨부함으로써 정확해진다(조항 21.7 참고). 명칭에 그러한 방안을 첨부하는 것이 꼭 인정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예. 1. *Tulipa* 'Liberty'는 1926년 전에 Krelage & Son에 의해 이루어졌으나, 그 명칭은 1988년에 또 다른 품종을 위해 P. Vooren에 의해 수립되었다. 명칭들은 혼돈을 막기 위해 *Tulipa* 'Liberty' [Krelage, pre-1926]와 *Tulipa* 'Liberty' [Vooren, 1988] 쓰여졌다.

예. 2. 괄호에 재배자의 명칭을 첨가함으로써 *Rhododendron* 'Madonna' (Brooks)과 *R.* 'Madonna' (Gable)은 구별이 될 수 있다.

조항 31: 명칭의 기각

31.1. 이 규약에 의해 지배를 받는 명칭의 경우, 만약 이 규약에 위배가 된다면 기각되거나 사용하지 못한다(조항 11.4-11.7, 조항 19.1과 조항 29.2-29.3).

31.2. 조항 31.1에도 불구하고 법정식물등록기관에 의해 출판되거나 인정된 품종의 명칭은 대안적 용어를 사용할지라도(조항 2, 주석 4) 이 규약의 규정에 따라 기각되어서는 아니 된다.

예. 1. Rose Ausburton는 “new and distinct variety”이라고 출원자의 신고서와 함께 1994년 7월 19일자 특허 번호 8838으로써 the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에 의해 출판되었다. 비록 품종 단어가 특허 부여에 대한 출판에 나타나지 않았지만(조항 2, 주석 4), 품종 명

칭은 Rose 'Ausburton'로서 기각되지 않을 수도 있다.

예. 2. *Chrysanthemum* 'Dewwhite Improved'은 1996년 1월 23일(Grant No 15798) 네덜란드에서 식물육종가권리를 위한 규정에 따라 수립되었다. 비록 품종 소명이 이 규약의 조항 21.17과 위배되지만 그 명칭은 기각되지 않을 수 있다.

31.3. 만약 수립된 명칭이 국제적 관례에 의해 보호받는 상표를 배제한 상표 또는 이미 알려진 명칭 또는 정부 간 또는 국제적 기구의 축약형의 사용과 같은 이전 권리와 충돌하기 때문에 나중에 적절하게 이의가 제기되었다면 수립된 명칭은 기각되거나 대체 명칭을 제공해야 한다.

예. 3. Parkway®은 “cultivated deciduous trees”로 마케팅에 사용되기 위해 J. Frank Schmidt & Son Co.에 의해 소유되면서 1986년 12월 8일에 the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에 의해 번호 1405184로 인정된 상표이다. 회사 또는 그것의 양수인이 재배품종 또는 그룹 명칭의 일부로 “Parkway” 사용에 반대하는 것이 인정된다면 이의 품종 또는 그룹 명칭은 대체 되어야만 한다.

예. 4. Glendoick Gardens Ltd는 “agricultural, horticultural, and forestry products; seeds; natural plants, and flowers; propagation material for plants; fresh fruits, and vegetables”에서 사용하기 위해 1999년 2월 19일에 the Patent Office에 의해 the “proprietor(소유주)” of Glendoick®로 등록되었다. “Glendoick” 단어를 사용하고 그 일자 이후로 수립된 어떤 품종, 그룹, 또는 계품 명칭은 이의를 제기 받을 수 있으며 기각될 수 있다.

예. 5. “United Nations”와 “World Bank” 단어나 “UNESCO” 또는 “WIPO” 두 문자어를 포함하는 품종 명칭은 명칭 자체가 파리조약의 6 ter (1)(b)조항에 의거 상표 보호로부터 제외되는 기구의 이름 때문에 기각될 수 있다.

31.4. 만약 그것의 출판이 재배자 또는 육종가에 의하여 명시된 의도와 위배가 된다면 품종, 그룹, 또는 계품 명칭은 기각이 된다.

예. 6. *Coprosma* 'The Shiner'는 선취권 있는 명칭의 식물을 유통시켜온 재배자의 의도와 다르게 본래 소명 'Shiner'로 출판되었다. 재배자의 선취권이 있는 명칭은 *The cultivation of New Zealand trees and shrubs* ed. 3, 96, 1987에서 L.J. Metcalf에 의해 수립되었다.

예. 7. × *Coryhopea* Butler's Balzac grex은 인위적 교잡 *Coryanthes macrantha* × *Stanhopea wardii*을 위해 수립되었다. 계품의 본래 교배자로부터 명칭에 대해 이의 제기가 뒤따르면서 그 명칭은 교배자의 선택인 × *Coryhopea* Off the Wall grex (see *Orch. Rev. Suppl.* 110: 110, 2002)을 지지하게 됨으로써 기각이 되었다.

31.5. 본 규약 이전 판의 규정에 따라 명칭이 기각되거나 대체 명칭이 제공되어 온 경우, 그 기각된 명칭은 현재의 규정에 따라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

예. 8. 본 규약의 1995년 판 17.13조항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Erica cinerea* 'Lily'는 국제품종등록 기관에 의해 기각되었다. *E. cinerea* 'Lily Evelyn'는 대체 명칭으로서 출판되었고(*International register of heather names* 1(3): 42, 2000 참고) 현재 21.22조항에 따라 이후의 명칭은 선취권을 이유로 기각된 명칭이기 때문에 이를 대신할 수는 없다.

예. 9. 1976년 the Shibamichi Kanjiro Co., Angyo, Japan는 *Styrax*의 품종명으로 여겨지는 "Benibana Ego-no-ki" 명칭을 소개하였다. "benibana"란 단어는 영어로 "red-flowered"를 의미하고 "ego-no-ki"는 *Styrax japonica*의 일본 보통명의 로마자 표기이다. 본 규약 1995년 판의 17.11조에 따라 "benibana"란 단어는 저절로 품종 소명을 형성하지 못한다. *Styrax japonica* 'Pink Chimes'는 이 품종을 위한 대체 명칭으로 수립되어왔고(*Arnoldia* 43(4): 17, 1983) 이 이후의 명칭은 선취권 때문에 *S. japonica* 'Benibana'로 대체하지 못한다.

31.6. 소명이 라틴어 이외의 언어로 되어 있고 지정된 분류군집합에서 또 하나를 정확하게 복제된 품종명은 기각된다. 대체 명칭은 30조(명칭의 재사용)의 규정이 적용(그러나 조항 31.2 참고)되지 않는 경우라면 수립될 수가 있다.

31.7. 수립에 불필요한 대체 명칭은 기각된다.

예. 10. 1942년, Harlan Kelsey and William Dayton (*Standardized plant names*, ed. 2: 507)는 *Q. robur* 'Concordia' Kirchn.(1864)라고 명명된 이름을 대체하기 위해 *Quercus robur* 'Golden'이란 명칭을 제안했지만 이후의 명칭은 불필요하여 기각 되었다.

31.8. 만약 품종, 그룹, 또는 제품 소명이 과도한 위법 행위를 초래한다면 소명이 기각 여부의 신청은 the IUBS International Commission for the Nomenclature of Cultivated Plants에 제출할 수 있다.

주석 1. 기각에 대한 어떤 제안의 기준은 신청 시기에 식물의 명명을 위해 the Secretary of the IUBS International Commission에 제공 할 수 있다. 이때 가능한 한 사본과 함께 신청을 원하는 어떤 간행물에 대한 언급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위원회의 결정은 출판이 되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기각 여부는 위원회의 결정이 출판되는 날짜로부터 효과가 있다.

조항 32: 소명의 음역

32.1. 품종 또는 제품 명칭이 본래 출판된 것과 다른 언어를 사용하여 출판 되었을 때 소명은 번역할 수 없다(그러나 음역(조항 33) 또는, 복사(조항 34)할 수 있다).

예. 1. the kohlrabi *Brassica oleracea* 'Nichtschiessender'을 위한 품종 소명은 번역할 수 없다.

예. 2. 이후 명칭이 웨일스 언어로 선취권이 있는 철자이지만 'Owen Glendower'(웨일스 역사의 전설적인 사람) 소명인 품종명은 'Owain Glyndwr'로 바꾼 소명은 소유할 수 없다.

주석 1. 조항 32.1에도 불구하고 마케팅 때문에 품종 또는 제품 소명이 다른 언어로 번역될 경우에 번역된 소명은 상용 명칭으로 간주된다(조항 13.1).

예. 3. 마케팅 목적을 위해서 *Hibiscus syriacus* 'L'Oiseau Bleu'는 *H. syriacus* BLUE BIRD ('L'Oiseau Bleu')라고 부르는 상용 명칭으로서 *H. syriacus* BLUE BIRD를 소유했는지도 모른다; *Clematis* BLUE ANGEL ('Blekitny Aniol')와 *Cucumis sativus* NOA'S FORCING ('Noas Treib')은 본래 언어를 번역했기 때문에 상용 명칭으로 간주된다.

32.2. 라틴어 이외의 언어로 명명이 될 때, 그룹 명칭의 소명은 번역될 수 있지만 이런 소명과 상응하는 것 중에서 하나만이 각각 현대 언어에서 존재할 수 있다.

예. 4. *F. sylvatica* Purple-leaved Group(영어)은 *F. sylvatica* Groupe a Feuilles Pourpres (프랑스어), *F. sylvatica* Purpurblatterige Gruppe (독일어), and *F. sylvatica* Gruppo con Foglie Purpuree (이탈리아어)로 번역될 수 있다.

예. 5. *Brassica oleracea* Brussels Sprout Group(영어)는 *B. oleracea* Groupe du Chou de Bruxelles(프랑스어)와 *B. oleracea* Rosenkohl Gruppe(독일어)로 번역될 수 있다.

주석 2. 그룹 소명이 라틴어 형태라면 번역될 수가 없다. 그러나 라틴어 이외의 언어로 된 대체 그룹의 소명은 조항 11.4에 따라 이루어 질 수 있다.

권고 32A

32A.1. 또 다른 현대 언어로 된 현존하는 그룹 명칭으로부터 채택된 새로운 그룹 명칭이 출판될 때(조항 32.2), 참조는 본래 명칭이 사용된 간행물을 제시하는 것을 강력히 권장한다.

예. 6. *Cucurbita Kabocha-Gruppen*(스웨덴어)는 Hanelt, *Mansfeld's encyclopedia of agricultural and horticultural crops* (2001)를 참고로 하여 C. Kabocha Group으로 채택되었다.

조항 33: 소명의 음역

33.1. 한 알파벳 글자로 된 품종, 그룹, 또는 계통 소명이 다른 알파벳 글자로 표현되어야만 할 경우에 문자 대 문자로 음역을 할 수 있다.

주석 1. 반대 음역(reverse transliterations)은 불일치를 초래한다.

권고 33A

33A.1. 다른 알파벳으로 또는 그 알파벳으로부터 문자 변환을 위해서 로마 알파벳으로 된 글자는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되어야 함을 권고 한다: (a) the United States Library of Congress 에서 출판된 the *ALA-LC Romanization Tables*, 또는 (b) 국제표준화기구 기준 중 어느 간행물 내에서 사용된 음역 체계는 동일해야 한다.

주석 2. the *ALA-LC Romanization Tables*⁸⁾의 1997년 판은 로마자가 아닌 글자로 쓰여진 150개 이상의 언어를 포함하는 54개 로마자화 체계를 포함한다.

주석 3. 국제표준화기구는 다양한 주제로 17,000자 이상의 국제적 기준⁹⁾을 가지고 있다. 문자 전환은 th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for Standards, “ICS 01.140.10: 쓰기과 음역”에 속한다.

예. 1. the *ALA-LC Romanization Tables*을 이용해서 로마자로 음역할 때, 러시아어 소명(키릴문자 글자) ‘Белоснежка’와 ‘Голубое Веретено’는 각각 ‘Belosnežka’와 ‘Goluboe Vereteno’가 된다.

8) The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 Library of Congress Romanization Tables은 <http://www.loc.gov/catdir/cpso/roman.html>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9) The ISO International Standards는 온라인상에서 문자변환 기준을 찾을 수 있다. http://www.iso.org/iso/iso_catalogue.htm

예. 2. 1995년 ISO 9를 이용하여 로마자로 음역할 때, 러시아어 소명(키릴문자 글자) ‘Белоснежка’와 ‘Голубое Веретено’는 각각 ‘Belosnežka’와 ‘Goluboe Vereteno’가 된다.

조항 34: 소명의 복사

34.1. 알파벳으로 되어 있지 않은 글자에서 품종, 그룹 또는 계통 소명은 음성기호로 표기된 알파벳 글자이어야 한다(또한 권고 27F 참고).

주석 1. 반대 복사는 불일치를 가져올 수 있다.

권고 34A

34A.1. 간행물에서 사용된 복사체계는 일관되게 사용되기를 권장한다.

권고 34B

34B.1. 로마자 알파벳으로 쓴 글자로 중국 글자(한자)의 표기는 the Hanyu Pinyin Fang'an (짧게 “Hanyu Pinyin” 또는 “Pinyin”) 로마자화 체계에 의해 되지만 톤(tone)의 표기는 간편함을 위해 생략할 수 있다.

예. 1. 각 명칭에서 梅 글자는 *Prunus mume*란 중국어, “mei”라고 옮겨지면서, ‘雪海官粉梅’, ‘榴紅照水梅’와 ‘早玉蝶梅’ 명칭에서 소명은 각각 ‘Xuehai Gongfen’ (“snow sea palace pink”란 의미), ‘Yanhong Zhaoshui’ (“brilliant red reflected in water”), and ‘Zao Yudie’ (“early jade butterfly”)으로 옮겨졌다(*Annual report of international mei (Prunus mume) register (2000)* 참고).

권고 34C

34C.1. 로마자 알파벳으로 된 글자로 한국 글자(한글)의 복사는 한국, 문화관광부의 2000-8 선언서에 포함된 로마자화 체계에 의한다.

예. 2. 이 로마자화 체계를 사용하여 *Hibiscus syriacus*의 품종 ‘한겨레’, ‘한보라’와 ‘한소미’와 같은 소명은 각각 ‘Hangyeore’, ‘Hanbora’와 ‘Hansomi’로 쓴다.

예. 3. 한국어로 얘기할 때, a *Lycoris* 품종의 ‘댄싱스완’의 소명은 “dancing swan”처럼 발음한다. 권고된 기준을 사용한 로마자로 옮겨질 때의 명칭은 *Lycoris* ‘Daensingswan’ (see *Korean*

권고 34D

34D.1. 로마자 알파벳(로마자)을 사용한 원고로 일본 글자(간지, 히라가나와 가타가나)의 복사는 Kenkyusha's New Japanese-English Dictionary(3판과 그 이후)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변형된 로마자화의 헵번 체계에 의해 이루어진다.

예. 4. Prunus 품종을 위한 일부 간지가 있는 '天の川', 히라가나로 된 'あまのがわ'와 카타가나로 된 'アマノガワ' 소명은 'Ama-no-gawa'로 각각 한다; the *Hepatica* 재배품종을 위한 히라가나 'にいがたのゆき' 소명은 'Niigata-no-yuki'로 한다; the *Paeonia* 품종을 위한 히라가나로 된 'こくりゆうにしき' 소명은 'Kokuryū-nishiki'라고 한다; the *Prunus* 품종을 위한 히라가나로 된 'たきにわい' 소명은 'Taki-nioi'라고 한다; the *Tricyrtis* 품종을 위한 히라가나로 된 'とうげん' 소명은 'Tōgen'이라고 쓴다.

예. 5. the *Hosta*를 위한 히라가나로 된 'わうごんせとうち' 또는 가타가나로 된 'オウゴンセトウチ' 소명은 'Ōgon-Setouchi'라고 한다. the *Neofinetia* 품종을 위한 히라가나로 된 'おなみせかい' 소명은 'Ō-nami-sekai'라고 한다; the *Prunus* 품종을 위한 히라가나로 된 'ちょうしゅうひぎくら' 또는 가타가나로 된 'チョウシュウヒザクラ' 소명은 'Chōshū-hizakura'라고 한다. the *Prunus* 품종을 위한 히라가나로 된 'こじょうのまい' 또는 가타가나로 된 'コジョウノマイ' 소명은 'Kojō-no-mai'라고 한다.

34D.2. 만약 발음구별기호가 모음이 간지, 히라가나 또는 가타가나로 옮겨진 로마자 소명에서 길게 발음되어야 할 때를 가리키기 위해 사용된다면, 그 뎀 장음기호(ˉ)는 사용될 수 있고 곡절 약센트나 어느 다른 발음구별기호는 사용하지 않는다.

예. 6. *Prunus* 'Chōshū-hizakura'의 소명은 'Chōshū-hizakura'로 쓰면 아니된다.

제Ⅸ장: 철자(철자법)

조항 35: 소명의 철자

35.1. 본래 ICBN의 규정에 따라 출판되었지만 나중에 품종, 그룹 또는 계품 소명(이 규약의 조항 21.5)으로 사용된 라틴어 형태에 소명의 정확한 철자는 ICBN의 조항 50의 규정에 따른다.

35.2. 라틴어 이외의 언어로 형성된 소명은 정확한 철자(철자법)는 조항 27.1과 같다. 이는 로마자가 아닌 알파벳 또는 글자를 소명으로 사용하는 품종, 그룹, 또는 계품 소명의 경우 오기에 대한 수정 그리고 음역, 복사, 또는 번역에서 오는 실수를 정정하기 위한 근거가 된다(조항 32, 조항 33, 그리고 조항 34 참고).

예. 1. 중국의 재배품종 명칭인 *Prunus mume* '紅(고울염-뜻은 같으나 책자에 있는 한자 모양과 같은 한자가 없음)官粉'에서 소명은 'Hong'yan Gongfen'이라고 표기 되었는데, 아포스트로피는 불필요하다; 로마자로 된 소명은 중국 글자로 된 본래 글자를 근거로 하면서 'Hongyan Gongfen'로 수정되어야 한다.

35.3. 조항 35.2에도 불구하고, 품종, 그룹, 또는 계품 소명의 본래 글자(철자법)에서 고의가 아닌 실수는 정정해야 한다.

예. 2. 1983년 *Rhododendron*을 위해 국제품종등록기관에 등록된 *Rhododendron* 'Sherbrook'은 품종이 명명된 이후 장소의 명칭이 뒤의 철자라는 것을 알고 선취권에 따라서 *R. 'Sherbrooke'*로 수정되었다.

예. 3. *Philadelphus* 'Deberoux'는 품종이 Monsieur Gerard Debureaux를 따서 명명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는 *P. 'Debureaux'*로 수정했다.(*The sport* 29:11, 2002 참고).

예. 4. *Argyranthemum* 'Quinta White'은 본래의 철자가 의도적이었기 때문에 'Quinta White'로 변경 되어서는 아니된다; *Calluna vulgaris* 'Redgauntlet'은 의도적으로 한 단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두 단어로 나뉘어서는 아니된다; *Pinus sylvestris* 'Hexguld'은 의도적으로 출판되었고 심지어 소명의 어원이 "Witches' gold"란 스웨덴 단어에서 왔다는 것이 출판 시기에 명시되었기 때문에 *P. sylvestris* 'Haxguld'로 변경되지 않는다.

35.4. 악센트와 기타 발음의 구별기회는 조항 35.5와 권고 34B에 따라 제공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품종, 그룹과 계품 소명 자체가 보유하는 바에 따른다.

35.5. 모음이 바로 앞 모음과 따로 발음되는 것을 나타내면서 분음 부호표는 생략될 수 있다.

예. 5. 'Chloë'와 'Zoë' 품종명은 'Chloe'와 'Zoe'로 쓸 수 있다.

35.6. 분음 부호표를 제외하고 악센트와 다른 발음구별기호는 만약 언어학적 관례의 요구가 추가되었을 때 도움이 된다고 생각된다면 소명에 추가될 수 있다.

예. 6. 분음 부호표 없이 본래 출판된, *Aster amellus* 'Veilchenkoenigin'와 *Phlox paniculata* 'Kirchenfuerst'는 이러한 움라우트(umlaut) 경우에, 각각 *Aster amellus* 'Veilchenkonigin'와 *Phlox paniculata* 'Kirchenfurst'로 쓸 수 있다.

예. 7. *Syringa* × *hyacinthiflora* 'La Canada'의 품종명은 품종이 La Cañada라고 명명된 지역을 따서 명명되었다고 인식하여 'La Cañada'라고 변경되었다.

35.7. 문자들이 함께 발음하는 것을 가리키는 연자활자 “æ” and “œ”는 각각 분리된 문자들 “ae”와 “oe”로 표기할 수 있다.

35.8. 소명에서 독일 문자 “ß”는 “ss”로 표기될 수 있다; 앰퍼샌드 “&”는 “and” 또는 수립이 일어난 발간물에서 사용된 언어에 따라 다른 언어에서 이것에 상응하는 것으로 표기할 수 있다; 소명에서 “number”란 의미를 지닐 때 #기호는 “No”의 축약형으로 쓰거나 다른 언어로 이에 상응하는 축약형 또는 수립이 일어난 간행물에서 사용된 언어에 따라 전체 철자를 쓸 수 있다.

35.9. 품종, 그룹, 그리고 계품 소명 또는 이러한 소명의 일부는 축약할 필요는 없다(조항 14.2와 조항 16.1에 따라 부여되는 것은 예외). 예외는 언어학적 관례에 따라 보통 축약되는 주소 형태나 단어를 포함하는 이름은 허용을 한다.

예. 8. *The modern florilegium* ed. 3: 11, 1966에서 G.S. Thomas에 의해 수립된 *Astrantia major* 'Sunningdale Variegated'은 *A. major* 'Sunningdale Var.'라고 축약해서는 아니된다.

예. 9. *Nerium* 'Professeur Durand'와 *Cedrus* 'Mount Saint Catherine'은 각각 *Nerium* Prof. Durand'와 *Cedrus* 'Mt St Catherine'로 쓸 수 있다. *Clematis* 'Ed. André'와 *Nymphaea* 'Dr Florence'가 빠짐없이 쓸 때 두 명칭 모두 발간된 간행물의 언어가 프랑스어이기 때문에 각각 *Clematis* 'Edouard André'와 *Nymphaea* 'Docteur Florence'로 써야 한다.

35.10. 조항 35.9에도 불구하고 본래 사람 이름의 약성어를 사용하여 만들어진 품종, 그룹, 또는 계품 소명의 두음글자는 철자를 생략하지 않으며 전부 쓰지도 않아야 한다.

예. 10. *Crocus chrysanthus* 'E.A. Bowles'는 *C. chrysanthus* 'Edward Augustus Bowles'로 변경하지 않을 수 있다; 'M. Charles Coëz' 소명은 'Monsieur Charles Coëz'에 상응하는 소명이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 *Dianthus* 품종에 경우와 같이 조항 35.9에 따라 the “M”이 Monsieur를 의미하지 않는다면 확대하지 않을 수 있다; *Picea pungens* 'J. James'은 십이지어 소명이 미국 역사의 유명한 인물을 기념하기 위해 알려졌지만 *P. pungens* 'Jesse James'로 변경되지 않는다.

35.11. 라틴어 이외의 언어로서 된 하이픈으로 연결된 품종, 그룹, 또는 계품 소명은 만약 문법적 오류나 본래 철자에서 오류를 수정하지 않는다면 한 단어나 분리된 단어로 변경되지 않을 수 있다(조항 35.3).

예. 11. *Narcissus* 'Commander-in-Chief'는 *N. 'Commander in Chief'*로 변경될 수 없다.

35.12. 또 다른 언어적 관습이 요구하지 않는 이상, 하이픈으로 연결된 단어의 두 번째와 그 다음의 요소는 소문자로 시작한다.

예. 12. *Achimenes* 'Show-off' *Alonsoa warscewiczii* 'Peachy-keen' *Crocus chrysanthus* 'Eyecatcher'; *Galanthus* 'Celia Blakeway-Phillips' *Pelargonium* 'Chi-Chi' (a famous panda); *Erica* × *williamsii* 'Cow-y-Jack' (a place in Cornwall, England); *Fuchsia* 'Shangri-La' *Hedera helix* 'Baden-Baden' *Nymphaea* 'Gloire du Temple-sur-Lot' *Narcissus* 'Commander-in-Chief' *Rhododendron* 'Tri-Lights' (a member of *R. Northern Lights* Group).

예. 13. *Carex* 'Yodo-no-yuki' (“the snows of Yodo”를 의미하는 이름); *Prunus* 'Benichidori' (“crimson plover”을 의미하는 이름); *Saxifraga fortunei* 'Akane-Fuji' (“rose madder Mount Fuji”을 의미하는 이름).

35.13. 일관성을 위해서 언어의 관습이 달리 요구되지 않는 한 품종, 그룹, 또는 계품명은 단수형으로서 소유 형용사 명사를 포함할 때, “s” 글자와 함께 아포스트로피는 명사 뒤에 쓴다. 소명이 복수로 소유 형용사 명사를 포함할 때 아포스트로피는 복수 명사 뒤에 쓴다.

예. 14. 'Anne's Gold' (Anne라고 불리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명명됨); 'Mrs Parris's Gold' (Mrs Parris의 이름을 따서 명명됨); 'Nelsons' Garden' (the garden of Mr and Mrs Nelson의 이름을 따서 명명됨); 'Richards' Blue' (Mr and Mrs Richards의 이름을 따서 명명됨).

예. 15. 전통적인 독일어의 관습을 따르면 'Kramers Rote'(Kramer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명명됨)은 아포스트로피를 쓰지 않았지만 'Klaus' Weisse'(Klaus라고 불리는 사람의 이름을 따)라고 하였다.

35.14. 품종, 그룹, 또는 계품 소명에서 아포스트로피나 하이픈의 잘못된 사용은 관련된 단어의 어원을 검토한 이후에 수정될 수 있다.

예. 16. *Hosta* 'Shelley's'와 *Osteospermum* 'Hopley's'는 둘 다 사람들의 이름을 따서 명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각각 *H.* 'Shelleys'와 *O.* 'Hopleys'로 수정되었다; 품종이 캐나다의 식물 육종가인 Henry H. Marshall (*HortScience* 24(3): 525, 1989)을 기리기 위해 *M.* 'Marshall's Delight'로 수정되었다.

예. 17. *Rhododendron* 'Terra-Cotta'는 꽃색을 따서 명명되었음 확인되었기 때문에 *R.* 'Terracotta'로 수정되었다.

예. 18. *Polypodium vulgare* 'Bifido-cristatum'는 *P. vulgare* 'Bifidocristatum'로 수정되었다.

권고 35A

35A.1. 만약 변화가 첫 음절에 영향을 주고 이러한 소명의 모든 첫 글자에 영향을 준다면 품종, 그룹, 또는 계품 소명의 철자 수정이 가능하다.

권고 35B

35B.1.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품종, 그룹, 또는 계품 소명이 축약된 단어를 포함할 때 축약이 약성어(명칭의 첫 글자로 부터 파생된 발음할 수 있는 단어), 두문자어(각자 발음되는 각 하나씩 명칭의 첫 글자로부터 파생된 신규 단어), 조합(다른 문자의 일부와 결합되어 파생된 신규 단어), 또는 마침표가 적용되지 않는 단어의 축약형이 아니라면 마침표는 축약형 뒤에 추가되어야 한다.

예. 19. 영어로 "Professor"란 단어가 축약될 때 Prof.라고 쓰인다, 반면에 축약할 때 "Doctor", "Mister", and "Saint" 단어들은 축소형이 되면서 그들의 축약형인 Dr, Mr와 St로 쓰인다.

예. 20. 'G. K. Chesterton' 'Mrs M. L. Bland' 'MCC' (로마 숫자가 아니고 Marylebone Cricket Club을 나타내는 두문자어); 'USS Enterprise' ("United Star Ship"을 나타내는 약성어); 'Pride of NASA' (National Aeronautical and Space Agency를 위한 약성어); 'City Smog' and 'Brunch Time' (smog와 brunch가 조합된 것).

제 III 절: 속간잡종(Hybrid Genera)의 명칭

1. 속간잡종식물의 명칭은 국제식물명명규약(ICBN)의 규정(Provision)에 따른다. 참고로 이 규정들을 아래에 요약 하였지만 최신 국제식물명명규약의 전문을 확인하기 바란다.
2. 잡종은 서로 다른 분류군의 명칭 사이에 곱하기 기호인 "×"을 사용하여 나타내거나(hybrid formula: 정형적 잡종명), 또는 앞에 "×"를 접두어처럼 붙여 사용한다(condensed formula: 축약적 잡종명¹⁰⁾) (ICBN, 조항 H.6.1 참고).

주석 1. 잡종은 계급(rank)의 표시에 접두어"notho"를 붙여 나타낼 수 있다(ICBN, 조항 H.1.1 참고).

예. 1. *Ascocentrum* × *Rhynchostylis* × *Vanda*는 정형적 잡종명이며 × *Vascostylis*는 축약적 잡종명이다.

3. 축약적 잡종명을 나타낼 때, 국제식물명명규약에서는 곱하기 표시가 명칭이나 소명과 관계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포함 되어 있지 않게 배치 할 것을 권장 한다(ICBN, 권고. H.3A). 곱하기 표시와 명칭 또는 소명의 첫 글자 사이에 적당한 거리는 가독성을 가장 좋게 하는 것에 따라 정한다. 수학 기호인"×"를 쓸 수가 없다면 소문자 "x"로 표시해야 한다(이탤릭이 아님). 정형적인 잡종명에서의 곱하기 기호는 항상 양친의 명칭 중간에 분리하여 위치하도록 한다(ICBN, 조항 H.1와 H.3.1 + H.3A 참고).

4. 축약적 잡종명은 두 가지 속의 식물간 교잡을 통해 만들어진 속간잡종의 명칭이며 양친의 속명을 차용하여 하나의 단어로 결합한 것이다. 한 부모의 속명 앞부분 또는 전체와 다른 부모의 속명 뒷부분 또는 전체(양친의 속명을 모두 사용 할 수는 없음)를 결합하여 만드는데 선택적으로 연결 모음을 사용한다(ICBN, 조항 H.6.2 참고).

예. 2. × *Agropogon* (= *Agrostis* × *Polypogon*); × *Gymnanacamptis* (= *Anacamptis* ×

10) 종(species)간에 또는 종 이하의 계급군(infra-specific taxa)간에 잡종에 부여된 명칭은 축약적 잡종명이 아니지만 동등한 계급의 명칭을 위한 국제식물명명규약의 모든 규정에 따라야한다.

Gymnadenia); × *Alpingera* (= *Alpinia* × *Etlingera*); × *Seleniphyllum* (= *Epiphyllum* × *Selenicereus*); × *Rhaphiobotrya* (= *Rhaphiolepis* × *Eriobotrya*).

예. 3. *Amaryllis* × *Crinum*을 축약적 잡종명으로 나타내는데 있어 × *Amarcrinum*은 맞지만 “× *Crindonna*”은 옳지 않다. “× *Crindonna*”가 동일한 속간잡종을 나타내기 위해 제안된 축약적 잡종명이지만, 한쪽 부모의 속명(*Crinum*)과 다른 부모(*Amaryllis*)의 속명의 이명(*Belladonna*)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이는 ICBN의 조항 32.1(b)에 위배가 되어 유효한 출판이 될 수 없다.

예. 4. *Leucorchis* × *Gymnadenia*를 나타내는데 있어 × *Leucadenia*은 옳지만 속명으로 *Leucorchis*대신에 *Pseudorchis*를 차용한다면 × *Pseudadenia*로 하는 것이 옳다.

5.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속으로부터 유래된 속간 잡종명은 사람의 이름 뒤에 -ara를 붙여 나타낸다. 그러한 명칭은 여덟 음절을 넘지 않게 하는데 축약적 잡종명으로 간주된다(ICBN, 조항 H.6.3 참고).

예. 5. × *Beallara* (= *Brassia* × *Cochlioda* × *Miltonia* × *Odontoglossum*); × *Brilliandeara* (*Aspasia* × *Brassia* × *Cochlioda* × *Miltonia* × *Odontoglossum* × *Oncidium*).

6. 세 개의 속으로부터 유래된 속간잡종의 명칭은 (a) 세 부모의 속명을 차용하여 하나의 명칭으로 만들되 여덟 음절을 넘지 않게 하는 축약적 잡종명으로 나타낸다. 한 부모의 앞부분 또는 전체 속명과 그 뒤에는 다른 부모의 부분 또는 전체 속명, 나머지 세 번째 부모의 뒷부분 또는 전체 속명(세 부모의 모든 속명을 사용할 수는 없음)을 사용하되 선택적으로 하나 또는 두 개의 연결모음을 사용한다. 또는 (b) 여덟 음절을 넘지 않게 사람의 이름 뒤에 -ara를 붙여 나타낸다(ICBN, 조항 H.6.4 참고).

예. 6. × *Sophrolaeliocattleya* (= *Cattleya* × *Laelia* × *Sophranitis*); × *Vascostylis* (= *Ascocentrum* × *Rhynchostylis* × *Vanda*); × *Rodrettiopsis* (= *Comparettia* × *Ionopsis* × *Rodriguezia*); × *Devereuxara* (= *Ascocentrum* × *Phalaenopsis* × *Vanda*); × *Wilsonara* (= *Cochlioda* × *Odontoglossum* × *Oncidium*).

7. ICBN에서는 사람의 이름에 -ara를 붙여 명명하는 속간잡종명을 나타낼 때 그 이름이 수집가, 농업인 또는 집단의 학생일 것을 권고한다(ICBN, 권고. H.6A.1. 참고).

8. 축약적 잡종명이 속명으로부터 파생된 것일 경우에 사용된 부모의 명칭은 부모의 분류군으로서 축약적 잡종명의 저자에 의해 채택된 것이어야 한다(ICBN, 권고. H.8.1. 참고).

예. 7. 만일 *Triticum*속이 계통학적으로 *Triticum*(좁은 의미)와 *Agropyron*을 포함하고 있는

것 이라고 해석이 되고, *Hordeum*도 마찬가지로 *Hordeum*(좁은 의미)와 *Elymus*를 포함하고 있다면 *Triticum*(좁은 의미)과 *Hordeum*(좁은 의미)의 잡종 뿐 만 아니라 *Agropyron* 와 *Elymus*의 잡종은 동일한 속간잡종인 × *Tritordeum*이다. 그러나 만일 *Agropyron* 가 *Triticum*에서 분리 된다면 *Agropyron* 와 *Hordeum*(좁은 또는 넓은 의미)의 속간잡종은 × *Agrohordeum*이다. 비슷하게 만일 *Elymus* 가 *Hordeum*로부터 분리 된다면 *Elymus* 와 *Triticum*(좁은 또는 넓은 의미)의 속간잡종은 × *Elymotriticum*이다. 만일 *Agropyron*와 *Elymus*에 속(generic rank)이 주어진다면 × *Agroelymus*가 두 양친간의 속간잡종이 되며 × *Tritordeum*이 *Hordeum*(좁은 의미)와 *Triticum*(좁은 의미)의 잡종으로 제한 된다. 그리고 *Elymus*와 *Hordeum*의 잡종은 × *Elyhordeum*이 된다.

9. 축약적 잡종명과 동급인 -ara로 끝나는 속간잡종의 명칭은 명명된 부모의 명칭이 분류학적으로 채택된 식물에 한해서만 적용이 가능하다(ICBN, 조항 H.8.2 참고).

예. 8. 만일 *Euanthe*가 구별된 하나의 속(genus)이라고 여겨진다면, *E. sanderiana* (*Euanthe*의 유일한 종)과 세 개의 속 (*Arachnis*, *Renanthera*, *Vanda*)의 잡종은 × *Cogniauxara*(= *Arachnis* × *Euanthe* × *Renanthera* × *Vanda*)이다. 반면 *E. sanderiana*가 *Vanda*에 포함되어 있다면 동일한 잡종의 명칭은 × *Holttumara*(= *Arachnis* × *Renanthera* × *Vanda*)이다.

10. 속간잡종의 명칭이 유효하게 출판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모의 속명이 명시(ICBN, 조항 29-31)되어야 한다. 그 부모의 속명에 대해서 기재(description)또는 표징(diagnosis)을 요구하지 않으며 라틴어나 또는 그 외 다른 언어로 표현이 되면 된다(ICBN, 조항 H.9.1 참고).

예. 9. 1872년 Maxwell의 석사학위논문에서 × *Philageria*(유효출판명)의 계통이 *Lapageria* × *Philesia*로 표기되어 출판되었고 × *Agrohordeum*은 1927년 Aimee Camus에 의해 출판되었다(= *Agropyron* × *Hordeum*).

11. 속간잡종의 명칭이 축약적 잡종명이나 또는 그와 같이 취급되기 때문에 이것은 명명기준표본을 가지고 있지 않고 이것의 적용은 전적으로 표기된 계통으로 결정된다.

12. 선취권을 위해 속간잡종의 명칭은 속간잡종이 아닌 종에 적용되는 규칙들에 의해 동일하게 적용된다.

예. 10. *Secale*와 *Triticum*의 잡종의 경우, × *Triticosecale*(1899)이라는 명칭이 × *Triticale*(1936)보다 우선권을 가진다.

13. 1953년 1월 1일과 그 이후의 교역 목록, 비전문과학신문에 등장한 속간잡종의 명칭, 그리고 1973년 1월 1일과 그 이후에 종자교환목록에 등장한 속간잡종의 명칭은 유효출판(수립)된 것이 아

닌 것으로 본다(ICBN, 조항 30.3 참고).

14. 단지 속간잡종의 존재를 예상하고 출판된 명칭은 ICBN 조항 34.1(b)에 따라 유효출판(수립)된 것이 아닌 것으로 본다(ICBN, 조항 H.9, 주석2 참고).

제 IV 절: 명칭의 등록

1. 이 규약의 목적은 명칭 등록에 책임이 있는 기관에 의한 품종, 그룹, 또는 계품명의 수락을 말한다.
2. 국제품종등록기관(International Cultivar Registration Authority)은 명명법 및 품종등록을 위한 ISHS 위원회에 의해 지정된 기관으로서 명칭, 그룹, 계품명의 등록 업무를 담당한다. 등록이라고 하는 것은 그 품종의 명칭이 기재된 출판에 의해 완료가 되는 것으로 본다(국제품종등록기관의 목록은 부록 I을 참고 할 것).
3. 법정식물등록기관(A statutory plant registration authority)은 국가 법률 제정이나 국제 조약에 의해 설립된 기관이다. 이 기관은 다양한 분류군집합이나 식물 명칭들을 수립하는 업무를 담당한다(법정식물등록기관은 부록 II를 참고 할 것). 법정식물등록기관에 의해 수립된 명칭은 관련 등록부나 체크 리스트에 인용이 되어야 한다.
4. 만일 그 명명이 명명규약에 위배된 것이라면 국제품종등록기관은 법정식물등록기관에 의해 수락된 명칭을 등록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명칭은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조항 31.2참고).
5. 국제품종등록기관에 의해 품종 또는 그룹 명칭이 채택된 것은 특정 품종이나 그룹의 구별성(distinctness)에 대한 판단을 의미 하지 않는다. 또한 농학, 원예, 임학적인 가치를 의미하지도 않는다.
6. 만일 상표가 명칭, 그룹, 계품을 위한 마케팅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국제품종등록기관은 동일하게 상표를 등록할 수가 있다. 만일 등록이 된다면 그 같은 상표는 절대로 명명 계급이 주어지면 아니 되며 국제 품종 등록 기관에 의한 간행물에 출판되어 명칭이나 소명에 혼동을 주어서도 아니 된다.
7. 등록 담당자는 등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제 품종 등록 기관이 임명한 사람을 말한다.
8. 등록인은 국제 품종 등록 기관에 식물명을 제안하는 사람이나 기관을 말한다.

제 V 절: 명명기준(nomenclatural standards)

1. 명명기준은 가급적 품종이나 그룹의 명칭이 영구적으로 부착되어 있는 표본관의 식물표본을 기준으로 한다.

주석 1. ICBN에 적용된 분류군의 명칭은 1958년 이후부터 유효출판(수립)을 위한 요구사항 중 일부의 지정, 명명기준형(nomenclatural type)의 신청(application)으로 규정한다(ICBN, 조항 37), 명명기준형이란 지정된 분류학적 기준의 변이 범주 안에서의 명칭이 영구적으로 부착된 명확한 기준(a precise reference point)을 말한다.

주석 2. 복제품을 포함한 많은 품종들은 그들의 범위(circumscription) 안에서 다양한 특징을 가질 수 있고 식물을 동정 할 때에 명명기준을 포함하는 모든 사항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주석 3. 계품명은 오직 계통 서술로 정의되기 때문에 명명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다.

2. 명명기준은 ICBN의 규정(Provision)에 의거하여 확증표본(voucher specimen)이나 기준표본(type specimen)으로 지정될 수 있다.

예. 1. P. C. de Jong 가 *Betula utilis* 'Doorenbos' (*Dendroflora* 23: 26, 1986)에 대해 처음으로 서술하였으며 Utrecht 대학 표본관에 보관 중인 식물표본 *De Jong* 1205를 확증 표본으로 제시 하였으며 이것이 명명기준으로 여겨 질 수 있다.

예. 2. *Cotoneaster* × *watereri* (Exell in *Gard. chron.*, 83: 44, 1928)은 Natural History Museum, London에 있는 명명기준형을 근간으로 하였다. 만일 *C. × watereri*가 품종으로 여겨진다면 앞의 기준표본은 명명기준으로서 인정 될 수 있다.

3. 디지털 방식이 아닌 이미지는 표본을 만들기가 유용하지 않거나 중요한 형질이 적절한 그림을 통해 가장 잘 인식될 때 명명기준으로 인정 될 수 있다.

예. 3. *Dianthus*나 *Narcissus*의 품종이나 난초류의 꽃색은 건조된 표본관 식물표본보다는 사진이나 그림으로 더 잘 관찰될 수가 있다.

예. 4. 표본관 자료를 이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등록기관에서 제공된 대표적인 컬러 프린트물 (WSY0103774)은 등록기관에 의해 *Delphinium* 'Cranberry Delight'를 위한 명명기준으로 지정되었다.

주석 4. 저작권 내에서의 사용 조건들이 명명기준으로 사용되거나 표준 포트폴리오 내에 포함되는 증언(deposition)에 대해 수립되어야 하며 원칙적으로 이미지는 사용의 제한이 있으면 아니 된다. 어떤 저작권의 조건들은 이미지를 증언(deposition)하는 목적을 제한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원칙 9 참고).

주석 5. 디지털 파일로 프린트된 이미지는 명명기준으로 사용 될 수 있다. 그러나 디지털 파일은 표준 포트폴리오 안에 참조(reference)와 함께 보관되어야 한다(제 V절.10).

주석 6. 저널에 출판된 그림은 적절한 시기에 명명기준으로 인용될 수 있다.

주석 7. 만일 나중에 표본이 이미지 모주(stock)로서 사용이 가능해 지게 되면, 이 시료는 표준 포트폴리오에 위치할 수가 있다(제 V절.10).

4. 명명기준형이 애매하게 해석되지 않는다면 명명기준은 명명기준형을 기반으로 하여 지정 될 수 있으며 이 명명기준형은 항상 명명기준에 우선한다.

예. 5. *Dracaena fragrans* 'Massangeana'의 명명기준은 비록 *Dracaena massangeana* hort. ex Rodigas의 명명기준형이 같은 논문 반대 페이지(170page)에 선정기준표본(lectotypified) (Rev. Hort. Belge, 8: 169, 1882.)이 되었으나, J. J. Bos et al. (*Edinb. Journ. Bot.*, 49(3): 329, 1993)에 의해 *Hetterscheid HDR21*[Vadense표본관(Wageningen, The Netherlands)에 보관]로 지정되었다.

5. 2004년 1월 이후 법정식물등록기관의 규정에 적합한 명칭을 가진 복제품종의 명명기준은 법정식물등록기관에 의해 그 품종의 식별에 사용된 동일한 모주(stock)로부터 준비된 것 이어야 한다.

6. 2004년 1월 이후부터는 소명이 법정식물등록기관의 규정들에 의거 수립된 실생 품종의 명명기준은 규정에 따라서 그러한 생식질을 유지하도록 지정된 종자 실험실에 의해 유지, 저장된 종자로부터 자란 식물로 준비가 되어야 한다.

주석 8. 그 같은 실험실에서 장기간 동안 유지해온 종자를 기반으로 하여 유지되는 품종의 생식질은 약간의 변화를 보일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식물을 동정하는데 있어서 결정짓는 명명기준의 참고(reference)를 꼭 염두 해두어야 한다.

제 VI 절: 명명법의 변경

7. 명명기준의 지정과 그 같은 기준을 가지고 있는 기관의 인용(citation)은 출판으로서 그 효력을 가지게 된다(조항 25).

예. 6. *Rhododendron* 'Maurice Daffarn'의 명명기준은 Royal Horticultural Society's Wisley 표본관에 표본으로 등록되어 있다. 이것은 *The new plantsman* 8(2): 126, 2001,에 출판된 명명기준이 되었다.

8. 하나 이상의 명명기준들이 똑같은 품종이나 그룹의 등록으로 지정 될 수 있지만 가장 먼저 등록된 것이 우선권을 가진다.

9. 건조 표본의 명명기준은 색깔로 구분된 폴더(folder) 안에 저장 되어 있어야 한다.

10. 현실적으로, 명명기준은 어떤 표본, 그림, 컬러 차트 인용문을 통한 포트폴리오로 유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명칭의 최초 출판물의 복사본으로써 인용의 목적과 합치가 되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표준 포트폴리오는 계통의 자세한 묘사가 되어있어야 하며 품종이나 그룹의 기원 명칭이 수립된 장소와 날짜도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주석 9. 사용된 어떤 컬러 차트의 자세한 사항은 가끔 다른 호(edition)와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명시가 되어야 한다.

11. 명명기준의 사본은 표준 수집물들이 있는 기관에 순환이 되어야 하는데 특히 다른 국가에 순환될 때 더욱 그렇다.

12. 어떤 재료들의 명명기준이 준비되어 있는 정확한 장소와 수집된 일자를 표본에 명시해야 한다.

13. 품종이나 그룹의 명명에 대한 명명자, 도입자, 저자로 간주되는 육종가나 재배자가 더 이상 활용할 수 없거나 명명기준의 재료로 제공할 의사가 없다면 다른 전문가의 조언이 그 같은 기준의 재료를 판독하는데 필요하다.

14. 표본관 표본들은 전문적인 처리를 통해 준비되어야 하며 새로운 품종이나 Group의 재배자들은 적절한 명명기준이 준비될 수 있도록 식물 표본을 기증할 것을 강력하게 권장한다.

이 명명규약은 재배식물명명법을 위한 IUBS(International Union of Biological Sciences) 국제 위원회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다. 만일 이 위원회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면 대체 기구가 IUBS에 의해 지명될 수 있다.



부록

부록 I

국제품종등록기관(ICRAs)의 주소록

아래의 리스트는 International Society for Horticultural Science(ISHS)의 웹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다.

<http://www.ishs.org/icra/index.htm>

정기적으로 개정된 정보, 문서나 컴퓨터상의 자세한 정보는 각각의 국제품종등록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그리고 현재 국제품종등록기관에서 알파벳순으로 속명의 검색이 가능할 것이다.

어떤 유망한 국제품종등록기관은 명명과 품종 등록을 위한 ISHS의 위원회에 연락을 취하기 전에 국제품종등록기관의 웹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는 정보 뿐만 아니라 명명법에 대해 공부할 것을 조언 하고 있다. 위원회는 위원회장인 Dr Janet J Cubey(The Royal Horticultural Society's Garden, Wisley, Woking, Surrey GU23 6QB, UK (email: janetcubey@rhs.org.uk))에게 연락 할 수 있다.

AFRICAN VIOLET SOCIETY OF AMERICA, INC. (A.V.S.A.)

<http://www.avsa.org>

ICRA: Saintpaulia H. Wendl. (1966)

Registrar: Mr Joseph J. Bruns, 1220 Fax: (+1) 810 314 6932
Stratford Lane, Hanover Park, Illinois Email: jbruns@qwip.net
60103, USA

AMERICAN BEGONIA SOCIETY

<http://www.begonias.org>

ICRA: Begonia L. (1958)

Registrar: Mr Gene Salisbury, PO Email: geneann@sbcglobal.net
Box 452, Tonkawa, Oklahoma 74653, USA

AMERICAN BOXWOOD SOCIETY (ABS)

<http://www.boxwoodsociety.org>

ICRA: *Buxus* L. (1966)

Registrar: Mr Lynn R. Batdorf, U.S. Fax: (+1) 202 245 45 75
National Arboretum, 3501 New York Email: batdorfl@ars.usda.gov
Avenue NE, Washington, DC 20002-1958, USA

AMERICAN BRUGMANSIA & DATURA SOCIETY, INC. (ABADS)

<http://www.abads.net>

ICRA: *Brugmansia* Pers.; *Datura* L. (2002)

Registrar: Tom Hulse, 7602 80th Ave Email: registrar@abads.org
NE, Marysville, WA 98270, USA Registration page: <http://www.abads.net/Registry>

AMERICAN FUCHSIA SOCIETY

<http://www.americanfuchsiasociety.org>

ICRA: *Fuchsia* L. (1966)

Registrar: Mr Edward M. Salome, Email: ejsalome@aol.com
6979 Clark Road, Paradise, California Registration page:
95969-2210, USA <http://www.americanfuchsiasociety.org/registra.html>

AMERICAN HEMEROCALLIS SOCIETY

<http://www.daylilies.org>

ICRA: *Hemerocallis* L. (1955)

Registrar: Ms Gretchen J. Baxter, POFax: (+1) 919 569 2174
Box 9887, Greensboro, NC 27429, USA
Email: registrar@daylilies.org
Registration page: <http://www.daylilies.org/AHSregister.html>

AMERICAN HOSTA SOCIETY

<http://www.hosta.org>

ICRA: *Hosta* Tratt. (1966)

Registrar: Mr Kevin P. Walek, 9122 John Way, Fairfax Station, VA 22039-3042, USA
Email: AHSRegistrar@aol.com
Registration page: http://www.hosta.org/About_Hosta/registered_hosta.htm

AMERICAN IRIS SOCIETY

<http://www.irises.org>

ICRA: *Iris* L., excluding bulbous species (1955)

Registrar: Anne and Mike Lowe, 12219 Zilles Road, Blackstone, Virginia 23824-9394, USA
Email: mlowe@worldiris.com
Registration page: <http://www.irises.org/registration.htm>

AMERICAN IVY SOCIETY (A.I.S.)

<http://www.ivy.org>

ICRA: *Hedera* L. (1976)

Registrar: Mr Russell A. Windle, PO Box 461, Lionville, Pennsylvania 19353, USA
Email: hedera@worldnet.att.net

AMERICAN PENSTEMON SOCIETY

ICRA: *Penstemon* Schmidel (1966?)

Registrar: Dr Dale T. Lindgren, University of Nebraska-Lincoln, Central Research and Extension Center, 461 West University Drive, North Platte, Nebraska 69101-7756, USA
Fax: (+1) 308 532 3823
WestEmail: dlindgre@unl.lsu.edu

AMERICAN PEONY SOCIETY

<http://www.americanpeonysociety.org>

ICRA: *Paeonia* L. (1974)

Registrar: Mr Reiner Jakubowski, 624 Pineridge Road, Waterloo, Ontario, N2L 5J9 Canada
Email: nameregistration@americanpeonysociety.org

AMERICAN PUBLIC GARDENS ASSOCIATION (FORMERLY AABGA)

<http://www.publicgardens.org>

ICRA: Woody plant genera, excluding those genera or other groups for which other ICRA's have been appointed. A full listing of the genera for which this ICRA registers cultivars may be found at

<http://www.ishs.org/sci/icralist/icralist.htm>

Registrar: Dr Gerry Moore, Brooklyn Botanic Garden, 1000 Washington Avenue, Brooklyn, New York 11225-1099, USA
Fax: (+1) 718 941 4774
Email: gerry.moore@bbg.org
Registration page: <http://www.bbg.org/sci/taxonomy/registration.html>

AMERICAN ROSE SOCIETY (A.R.S.)

<http://www.ars.org>

ICRA: *Rosa* L. (1955)

Registrar: Mr Jeffrey Ware, American
Rose Society, PO Box 30000,
Shreveport, Louisiana 71130-0030,
USA
Fax: (+1) 318 938 5405
Email: execdirector@ars-hq.org
Registration page via:
<http://64.78.40.53/irar/newregis.asp>

AMERICAN VIOLET SOCIETY (AVS)

<http://americanvioletsociety.org>

ICRA: *Viola* L. (2001)

Registrar: Mr Thomas E. Silvers, PO
Box 1405, Frederick, Maryland
21702, USA
Registration page:
http://americanvioletsociety.org/Registry/Cultivar_Registry_New_Entries.htm

ARBORETUM KALMTHOUT FOUNDATION

<http://www.hamamelis.be>

ICRA: *Hamamelis* L. (2003)

Registrar: Ir. Abraham Rammeloo,
Heuvel 2, B- 2920 Kalmthout
Belgium
Fax: (+32) 3 666 33 96
Email: rammeloo@arboretumkalmthout.be

AUSTRALIAN CULTIVAR REGISTRATION AUTHORITY (ACRA)

<http://www.anbg.gov.au/acra/index.html>

ICRA: Australian plant genera, excluding those genera or groups for which other ICRAs have been appointed (1958); *Acacia* Mill. - all species (1958). A full listing of the genera for which this ICRA registers cultivars may be found at <http://www.ishs.org/sci/icralist/icralist.htm>

Registrar: Ms Nola Sloan, Australian
National Botanic Gardens, GPO Box
1777, Canberra, ACT 2601, Australia
Email: acra@anbg.gov.au

AUSTRALIAN HIBISCUS SOCIETY, INC.

<http://www.australianhibiscus.com>

ICRA: *Hibiscus rosa-sinensis* L. and its hybrids (1980)

Registrar: Mr Brian Cheers, 62
Oregon Drive, Shailer Park 4128,
Brisbane, Queensland, Australia
Email: brianchears@optusnet.com.au
Registration page:
<http://www.australianhibiscus.com/Nomenclature/nomenclature.htm>

BLAHNIK, ING, ZDENEK

ICRA: *Lonicera* L. (2002)

Registrar: Ing. Zdenek Blahnik,
Jungmannova 5, 25101 Ricany, Czech
Republic
Fax: (+42) 0 32363 1489
Email: iil@post.cz

BRITISH AND EUROPEAN GERANIUM SOCIETY (BEGS)

<http://www.begs.org.uk>

ICRA: *Pelargonium* L'Her. (2003)

Registrar: Mrs Mary Spink,
Homestead, Beech Hill Road,
Swanland, Hull, East Yorks, HU14
3QY, UK
Email: maryspink7@gmail.com

BROMELIAD SOCIETY INTERNATIONAL (BSI)

<http://www.bsi.org>

ICRA: *Bromeliaceae* Juss. (1980). A full listing of the genera for which this ICRA registers cultivars may be found at <http://www.ishs.org/sci/icralist/icralist.htm>

Registrar: Mr Geoff Lawn, 31
Email: cultivars@bsi.org

Greenock Ave, Como WA 6152,
Australia

Registration page: [http://www.bsi.org/
brom_info/cultivar/instructions.html](http://www.bsi.org/brom_info/cultivar/instructions.html)

CHINESE MEI FLOWER AND WINTER-SWEET ASSOCIATION

ICRA: *Prunus mume* Siebold & Zucc. (1998) and its hybrids

Registrar: Prof. Chen Junyu, PO Box
123, Beijing Forestry University,
Beijing 100083, People's Republic of
China

Fax: (+86) 10 62338935
Email: chenjymc@public.bta.net.cn

CLIVIA SOCIETY

<http://www.cliviasociety.org/>

ICRA: *Clivia* Lindl. (2000)

Registrar: Mr Kenneth R. Smith, 593
Hawkesbury Road, Winmalee, New
South Wales 2777, Australia

Email: cliviasmith@idx.com.au
Registration page:
<http://cliviasmith.idx.com.au/csocreghs.htm>

CONNECTICUT AGRICULTURAL EXPERIMENT STATION (CAES)

<http://www.ct.gov/caes>

ICRA: *Castanea* Mill. (1998)

Registrar: Dr Sandra L. Anagnostakis,
Connecticut Agricultural Experiment
Station, Box 1106, New Haven,
Connecticut 06504-1106, USA

Fax: (+1) 203 974 8502
Email: sandra.anagnostakis@po.state.ct.us
Registration page:
[http://www.ct.gov/caes/cwp/view.asp?a=2815&q
=376864](http://www.ct.gov/caes/cwp/view.asp?a=2815&q=376864)

CYCLAMEN SOCIETY

<http://www.cyclamen.org>

ICRA: *Cyclamen* L., excluding *C. persicum* Mill. (1999)

Registrar: Mr Trevor D. Wiltshire,
Pencarn, Gonvena, Wadebridge,
Cornwall PL27 6DL, UK

Email: registrar@cyclamen.org
Registration page:
http://www.cyclamen.org/registrar_set.html

EASTER, MRS MARGARET (PROVISIONAL APPOINTMENT)

<http://www.thymus.co.uk>

ICRA: *Thymus* L. (2008)

Registrar: Mrs Margaret Easter, 23
Wroxham Way, Harpenden,
Hertfordshire AL5 4PP, UK

Email: mail@thymus.co.uk

EPIPHYLLUM SOCIETY OF AMERICA (ESA)

<http://www.epiphyllumsociety.org/index.html>

ICRA: *Cactaceae* Juss. Tribe *Hylocereeae* F. Buxbaum (1958). A full listing of the genera for which this ICRA registers cultivars may be found at [http://www.ishs.org/sci/icralist/
icralist.htm](http://www.ishs.org/sci/icralist/icralist.htm)

Registrar: Dr Richard W.
Kohlschreiber, 1801 West 27th Street,
San Pedro, California 90732-4601, USA

Email: kohlpedro@cox.net

EUROPEAN KALMIA SOCIETY (PROVISIONAL APPOINTMENT)

<http://www.kalmia-society.org>

ICRA: *Kalmia* L. (2008)

Registrar: Ms Julia Westhoff, c/o
Stadtgruen Bremen, Friedhofstr. 51,
D-28213 Bremen, Germany

Fax: (+49) 421 496 6236
Email: registrar@kalmia-society.org
Registration page:
<http://www.kalmia-society.org/registrar.php>

GERANIACEAE GROUP OF THE BRITISH PELARGONIUM AND GERANIUM SOCIETY

<http://www.bpgs.org.uk>

ICRA: *Erodium* Aiton; *Geranium* L. (1997)

Registrar: Mr David X. Victor, The
Old Stables, Church Lane, Hockliffe,
Leighton Buzzard, Bedfordshire LU7
9NL, UK

Fax: (+44) 1525 210070
Email: davidxvictor@btinternet.com

GESNERIAD SOCIETY, INC.

<http://www.gesneriadsociety.org>

ICRA: *Gesneriaceae* Rich. & Juss., excluding *Saintpaulia* H. Wendl. (1958)

Registrar: Ms Judy Becker, 432
Undermountain Road, Route 41,
Salisbury, Connecticut 06068-1102, USA

Registration page:
http://www.gesneriadsociety.org/ir_ges/index.htm

HARDWOOD TREE IMPROVEMENT AND REGENERATION CENTER (HTIRC)

<http://www.agriculture.purdue.edu/fnr/HTIRC/index.htm>

ICRA: *Juglans* L. (2001)

Registrar: Dr Keith Woeste,
Department of Forestry and Natural
Resources, Purdue University,
Pfundler Hall, 715 West State Street,
West Lafayette, Indiana 47907-2061
USA

Fax: (+1) 765 494 9461
Email: woeste@purdue.edu
Registration page:
<http://www.agriculture.purdue.edu/fnr/HTIRC/Juglans.htm>

HEATHER SOCIETY

<http://www.heathersociety.org.uk>

ICRA: *Andromeda* L. (1970); *Calluna* Salisb. (1970); *Daboecia* D. Don (1970); *Erica* L.,
including *Bruckenthalia* Rehb. (1970)

Registrar: Dr E. Charles Nelson,
Tippitiwitchet Cottage, Hall Road,
Outwell, Wisbech, Cambridgeshire
PE14 8PE, UK

Fax: (+44) 1945 774077
Email: admin@heathersociety.org.uk
Registration page:
<http://www.heathersociety.org.uk/registration.html>

HELICONIA SOCIETY INTERNATIONAL

http://www.heliconiasocietypr.org/cultivar_registration.htm

ICRA: *Heliconia* L. (2003)

Registrar: Dr Brian R. Brunner, Dept
of Horticulture Agricultural
Experimental Station, HC-01 Box
11656, Lajas, Puerto Rico 00667,
Puerto Rico

Fax: (+1) 787 899 1265
Email: brbrunner@yahoo.com

HOLLY SOCIETY OF AMERICA

<http://www.hollysocam.org>

ICRA: *Ilex* L. (1955)

Registrar: Mr Michael R. Pontti,
10520 Cedar Avenue, Fairfax,
Virginia 22030, USA

Fax: (+1) 202 687 9127
Email: ponttim@georgetown.edu

HORTRESEARCH (NEW ZEALAND)

<http://www.hort.cri.nz>

ICRA: *Actinidia* Lindl. (1993)

Registrar: Dr A. Ross Ferguson,
HortResearch Mt Albert, 120 Mt
Albert Road, Private Bag 92 169, Mt
Albert, Auckland, New Zealand

Fax: (+64) 9 815 4201
Email: rferguson@hortresearch.co.nz

INDIAN AGRICULTURAL RESEARCH INSTITUTE (IARI) – BOUGAINVILLEA

<http://www.iari.res.in>

ICRA: *Bougainvillea* Comm. ex Juss. (1966)

Registrar: Dr M. L. Choudhary, Fax: (+91) 11 576 6420
Division of Floriculture and
Landscaping, Indian Agricultural
Research Institute (IARI), Pusa
Campus, New Delhi 110 012, India

INDIAN AGRICULTURAL RESEARCH INSTITUTE (IARI) – MANGO

<http://www.iari.res.in>

ICRA: *Mangifera indica* L. (mango) (1970)

Registrar: Dr Anand K. Singh, Email: aksingh36@yahoo.com
Division of Fruits & Horticulture
Technology, IARI, Pusa Campus, New
Delhi 110 012, India

INSTITUT NATIONAL D'HORTICULTURE (INH)

ICRA: *Hydrangea* L. (2001)

Registrar: Mme Helene Bertrand, Fax: (+33) 2 4173 1557
Institut National d'Horticulture, 2 rue Email: helene.bertrand@inh.fr
Le Notre, 49 045 Angers Cedex 01
France

INTERNATIONAL AROID SOCIETY (IAS)

<http://www.aroid.org>

ICRA: *Araceae* Adans., excluding *Calla* L. & *Zantedeschia* Spreng. (?1980). A full listing of the genera for which this ICRA registers cultivars may be found at

<http://www.ishs.org/sci/icralist/icralist.htm>

Registrar: Dr Derek Burch, Email: derek@horticulturist.com
International Aroid Society (I.A.S.),
PO Box 566, Woodstock, Vermont
05091, USA

INTERNATIONAL CAMELLIA SOCIETY

<http://camellia-ics.org>

ICRA: *Camellia* L. (1962)

Registrar: Mr Neville Haydon, 4/6 Fax: (+64) 9 296 1893
Ingram Street, Papakura, New Zealand Email: nevhaydon@xtra.co.nz

INTERNATIONAL CARNIVOROUS PLANT SOCIETY (I.C.P.S.)

<http://www.carnivorousplants.org>

ICRA: *Byblidaceae* Domin; *Cephalotaceae* Dumort.; *Dioncophyllaceae* Airy Shaw; *Droseraceae* Salisb.; *Drosophyllaceae* Chrtek, Slavikova & Studnicka; *Lentibulariaceae* Rich.; *Martyniaceae* Stapf; *Nepenthaceae* Dumort.; *Roridulaceae* Engl. & Gilg; *Sarraceniaceae* Dumort. (1998). A full listing of the genera for which this ICRA registers cultivars may be found at

<http://www.ishs.org/sci/icralist/icralist.htm>

Registrar: Dr Jan Schlauer, Email: jan@carnivorousplants.org
International Registrar, ICPS, Inc., Registration page:
PMB 322, 1564A Fitzgerald Drive, <http://www.carnivorousplants.org/cultivars/cultivarsmain.html>
Pinole, California 94564-2229, USA

INTERNATIONAL CULTIVAR REGISTRATION CENTER FOR OSMANTHUS (ICRCO)

http://icrco.njfu.edu.cn/englishweb/e_index.htm

ICRA: *Osmanthus* Lour. (2005)

Registrar: Prof. Xiang Qibai (C.B. Shang), Nanjing Forestry University, Lonpan Road 159, Nanjing 210037, Jiangsu Province, People's Republic of China

Fax: (+86) 25 854 27093
Email: xiangqb@njfu.com.cn

INTERNATIONAL OAK SOCIETY (IOS)
<http://www.internationaloaksociety.org>

ICRA: *Quercus* L. (1998)

Registrar: Mr Piers Trehane, 2 Pye Corner, Wimborne, Dorset BH21 1UL, UK

Email: piers.trehane@gmail.com
Registration page:
<http://www.internationaloaksociety.org/cultivar-registration>

INTERNATIONAL ORNAMENTAL CRABAPPLE SOCIETY (IOCS)

ICRA: *Malus* Mill., excluding *M. domestica* Borkh. (2000)

Registrar: Prof. James Chatfield, Ohio State University Extension, North District Office, 1680 Madison Avenue, Wooster, Ohio 44691-4096 USA

Fax: (+1) 330 263 3667
Email: chatfield.1@osu.edu

INTERNATIONAL POPLAR COMMISSION OF F. A. O.
<http://www.fao.org>

ICRA: *Populus* L., forestry cultivars (1955)

Registrar: Dr Stefano Bisoffi, CRA - Consiglio per la ricerca e la sperimentazione in agricoltura, Via Nazionale 82, Roma 00184, Italy

Fax: (+39) 06 47836505
Email: stefano.bisoffi@entecra.it
Registration page via:
<http://www.fao.org/forestry/index.jsp>

INTERNATIONAL WATERLILY AND WATER GARDENING SOCIETY (IWGS) - NELUMBO
<http://www.iwgs.org>

ICRA: *Nelumbo* Adans. (1988)

Registrar: Prof. Ken Tilt, Professor and Extension Horticulturist, 101 Funchess Hall, Auburn University, Auburn, Alabama 36849, USA

Fax: (+1) 334 844 3131
Email: kentilt@gmail.com
Registration Page:
http://www.ag.auburn.edu/hort/landscape/AU_Lotus_Project_Page.html

INTERNATIONAL WATERLILY AND WATER GARDENING SOCIETY (IWGS) - NYMPHAEACEAE
<http://www.iwgs.org>

ICRA: *Nymphaeaceae* Salisb. (1988)

Registrar: Mr Jim Purcell & Ms Verena Liechti, Oregon Aquatics, 90760 N. Prairie Road, Eugene, OR 97402, USA

Fax: (+1) 541-689-3980
Email: jim@oregonaquatics.com
Registration page:
<http://collections2.eeb.uconn.edu/collections/herbarium/reghome.html>

LAKELAND HORTICULTURAL SOCIETY
<http://www.holehirdgardens.org.uk>

ICRA: *Astilbe* Buch.-Ham, ex D. Don (1998)

Registrar: Mr Henry Noblett, Lakeland Horticultural Society, Holehird, Patterdale Road, Windermere, Cumbria LA23 1NP, UK

Fax: (+44) 1768 863588
Email: h.noblett1@btinternet.com

MAGNOLIA SOCIETY, INC.
<http://www.magnoliasociety.org>

ICRA: *Magnoliaceae* Juss. (?1962). A full listing of the genera for which this ICRA registers cultivars may be found at <http://www.ishs.org/sci/icralist/icralist.htm>

Registrar: Mr Tim M. Boland, The Polly Hill Arboretum, PO Box 561, West Tisbury, Massachusetts 02575, USA
Fax: (+1) 508 693 5772
Email: tim@pollyhillarboretum.org
Registration page via: <http://www.magnoliasociety.org>

MECONOPSIS GROUP

<http://www.meconopsis.org>

ICRA: *Meconopsis* Vig. (2002)

Registrar: Dr Evelyn Stevens, The Linns, Sheriffmuir, Dunblane, Perthshire FK15 0LP, UK
Fax: (+44) 1786 822295
Email: evelyn@thelinns.org.uk

MORTON ARBORETUM

ICRA: *Ulmus* L.

Registrar: Dr Andrew L. Hipp, The Morton Arboretum, 4100 Illinois Route 53, Lisle, Illinois 60532-1293, USA

NATIONAL ARBORETUM WESTONBIRT

ICRA: *Acer* L.

Registrar: Mr Peter A. Gregory, The National Arboretum, Westonbirt, Tetbury, Gloucs GL8 8QS, UK
Fax: (+44) 1666 880 559
Email: pgregory@phonecoop.coop

NERINE AND AMARYLLID SOCIETY

ICRA: *Nerine* Herb. (2003)

Registrar: Mr Barrie Ward, Ellerbrook, Stoneacre Drive, Adlington, Chorley, Lancashire PR6 9SR, UK
Fax: (+44) 1257 480072
Email: barrieward@aol.com

NORTH AMERICAN GLADIOLUS COUNCIL

<http://www.gladworld.org>

ICRA: *Gladiolus* L., excluding species and early flowering cultivars (1958)

Registrar: Mr William J. Owen, 675 MacElroy Road, Ballston Lake, NY 12019-2201, USA
Email: smgfowen@nycap.rr.com

PASSIFLORA SOCIETY INTERNATIONAL

<http://www.passiflora.org>

ICRA: *Passiflora* L. (2000)

Registrar: Dr Les A. King, 27 Ivar Gardens, Basingstoke, Hampshire RG24 8YD, UK
Email: les@king.myzen.co.uk
Registration page: <http://www.passionflow.co.uk/reg.htm>

PLANT GENE RESOURCES OF CANADA

ICRA: *Amelanchier* Medik. (1980)

Registrar: Dr Richard St-Pierre, Plant Gene Resources of Canada, Agriculture and AgriFood Canada, Saskatoon Research Centre,
Fax: (+1) 306 956 7246
Email: stpierrerg@agr.gc.ca

Saskatoon, Saskatchewan, Canada
S7N 0X2

PLUMERIA SOCIETY OF AMERICA, INC.
<http://www.theplumeriasociety.org>

ICRA: *Plumeria* L. (1980)

Registrar: Mr Eulas Stafford, The
Plumeria Society of America, Inc., PO
Box 22791, Houston, Texas 77227-
2791, USA
Email: estafford@pdq.net
Registration page:
[http://www.theplumeriasociety.org/
dyncat.cfm?catid=2000](http://www.theplumeriasociety.org/dyncat.cfm?catid=2000)

**PROTEACEAE CULTIVAR REGISTRATION AUTHORITY, NATIONAL DEPARTMENT OF
AGRICULTURE (SOUTH AFRICA)**
<http://www.nda.agric.za>

ICRA: *Proteaceae* Juss., excluding genera endemic to the Australian region. A full listing
of the genera for which this ICRA registers cultivars may be found at [http://www.ishs.
org/sci/icralist/icralist.htm](http://www.ishs.org/sci/icralist/icralist.htm)

Registrar: Mrs Joan Sadie, Proteaceae
Cultivar Registration Authority,
Private Bag X5044, Stellenbosch
7599, Republic of South Africa
Fax: (+27) 21 887 2264
Email: joans@nda.agric.za
Registration page: [http://www.nda.agric.za/docs/
Protea2002/proteaceae_register.htm](http://www.nda.agric.za/docs/Protea2002/proteaceae_register.htm)

ROYAL BOTANICAL GARDENS (CANADA)
<http://www.rbg.ca>

ICRA: *Syringa* L. (1958)

Registrar: Mr Freek Vrugtman, Royal
Botanical Gardens, Box 399,
Hamilton, Ontario, Canada L8N 3H8
Email: lilacreg@rbg.ca
Registration page:
[http://www.rbg.ca/pages_sci_conserv/
sci_conserv_lregistrar.html](http://www.rbg.ca/pages_sci_conserv/sci_conserv_lregistrar.html)

ROYAL GENERAL BULBGROWERS' ASSOCIATION (KAVB)
<http://www.kavb.nl>

ICRA: Bulbous, cormous and tuberous-rooted ornamental plants, excluding *Dahlia* Cav.,
Lilium L., *Narcissus* L., *Nerine* Herb. and various Australian genera (1955). A full listing
of the genera for which this ICRA registers cultivars may be found at [http://www.ishs.
org/sci/icralist/icralist.htm](http://www.ishs.org/sci/icralist/icralist.htm)

Registrar: Drs Johan van Scheepen,
Royal General Bulbgrowers'
Association, Postbus 175, NL-2180
AD Hillegom, The Netherlands
Fax: (+31) 252 536951
Email: vanscheepen@kavb.nl

ROYAL HORTICULTURAL SOCIETY (RHS) - CLEMATIS
<http://www.rhs.org.uk>

ICRA: *Clematis* L., including *Atragene* L. (1986)

Registrar: Mr Duncan Donald, 16
Midtown of Inverasdale, Poolewe,
Achnasheen, Wester Ross, IV22 2LW,
UK
Email: clematis@rhs.org.uk
Registration page:
[http://www.rhs.org.uk/plants/
registration_clematis.asp](http://www.rhs.org.uk/plants/registration_clematis.asp)

ROYAL HORTICULTURAL SOCIETY (RHS) - CONIFERS
<http://www.rhs.org.uk>

ICRA: Conifers, including *Ginkgo* L. (1964). A full listing of the genera for which this
ICRA registers cultivars may be found at <http://www.ishs.org/sci/icralist/icralist.htm>

Registrar: Mr Lawrence Springate, c/o
Conifer Registration, Botany Dept,
Royal Horticultural Society's Garden,
Wisley, Woking, Surrey GU23 6QB,
UK
Fax: (+44) 1483 211750
Email: conifer@rhs.org.uk
Registration page:
[http://www.rhs.org.uk/plants/
registration_conifers.asp](http://www.rhs.org.uk/plants/registration_conifers.asp)

ROYAL HORTICULTURAL SOCIETY (RHS) – DAHLIA

<http://www.rhs.org.uk>

ICRA: *Dahlia* Cav. (1966)

Registrar: Ms Sharon McDonald, Fax: (+44) 1483 211750
Royal Horticultural Society Garden, Email: dahlia@rhs.org.uk
Wisley, Woking, Surrey GU23 6QB, Registration page:
UK http://www.rhs.org.uk/plants/registration_dahlia.asp

ROYAL HORTICULTURAL SOCIETY (RHS) – DELPHINIUM

<http://www.rhs.org.uk>

ICRA: *Delphinium* L., perennials only (1955)

Registrar: Dr Janet Cubey, Royal Fax: (+44) 1483 211750
Horticultural Society Garden, Wisley, Email: delphinium@rhs.org.uk
Woking, Surrey GU23 6QB, UK Registration page: http://www.rhs.org.uk/plants/registration_delphinium.asp

ROYAL HORTICULTURAL SOCIETY (RHS) – DIANTHUS

<http://www.rhs.org.uk>

ICRA: *Dianthus* L. (1958)

Registrar: Dr Alan C. Leslie, 109 York Email: alanleslie@rhs.org.uk
Street, Cambridge, CB1 2PZ, UK Registration page: http://www.rhs.org.uk/plants/registration_dianthus.asp

ROYAL HORTICULTURAL SOCIETY (RHS) – LILIUM

<http://www.rhs.org.uk>

ICRA: *Lilium* L. (1958)

Registrar: Mrs Kate Donald, 16 Email: lily@rhs.org.uk
Midtown of Inverasdale, Poolewe, Registration page:

Achnasheen, Ross-shire, IV22 2LW, http://www.rhs.org.uk/plants/registration_lilium.asp
UK

ROYAL HORTICULTURAL SOCIETY (RHS) – NARCISSUS

<http://www.rhs.org.uk>

ICRA: *Narcissus* L., including *Corbularia* Salisb. ex Herb. (1955)

Registrar: Ms Sharon McDonald, Fax: (+44) 1483 211750
Royal Horticultural Society Garden, Email: daffodil@rhs.org.uk
Wisley, Woking, Surrey GU23 6QB, Registration page: http://www.rhs.org.uk/plants/registration_narcissus.asp
UK

ROYAL HORTICULTURAL SOCIETY (RHS) – ORCHIDS

<http://www.rhs.org.uk>

ICRA: *Orchidaceae* Adans. (1972). NOTE: Registration is only for orchid greges (grexes) at present, the one exception currently being Pleione D. Don., for which cultivar registration is now open on a trial basis. For further information, contact the Registrar.

Registrar: Mr Julian M. H. Shaw, 2 Fax: (+44) 115 939 2828
Albert Street, Stapleford, Nottingham Email: orcreg@rhs.org.uk
NG9 8DB, UK Registration page: http://www.rhs.org.uk/plants/registration_orchids.asp

ROYAL HORTICULTURAL SOCIETY (RHS) – RHODODENDRON

<http://www.rhs.org.uk>

ICRA: *Rhododendron* L., including *Azalea* L. (1958)

Registrar: Dr Alan C. Leslie, 109 York Fax: (+44) 1483 211750
Street, Cambridge, CB1 2PZ, UK Email: alanleslie@rhs.org.uk
Registration page: http://www.rhs.org.uk/plants/registration_rhododendron.asp

ROYAL NEW ZEALAND INSTITUTE OF HORTICULTURE, INC.

<http://www.rnzih.org.nz>

ICRA: *Coprosma* J. R. Forst. & G. Forst. (1970); *Hebe* Comm. ex Juss (1958);
Leptospermum J. R. Forst. & G. Forst. (1958); *Phormium* J. R. Forst. & G. Forst. (?1970);
Pittosporum Banks ex Sol. (?1974)

Registrar: Mr Lawrence J. Metcalf, Fax: (+64) 3 540 2295
Greenwood, 179 Westdale Road, Email: landlmetcalf@xnet.co.nz
R.D.1, Richmond 7081, New Zealand Registration page: <http://www.hebesoc.org>

SAXIFRAGE SOCIETY

<http://www.saxifraga.org>

ICRA: *Saxifraga* L. (1994)

Registrar: Mrs Beryl M. Bland, Email: registrar@saxifraga.org
Inglewood, Inglewhite Road, Goosnargh,
Preston, Lancashire, PR32ED, UK

SINGAPORE BOTANIC GARDENS

<http://curcuma.sbg.org.sg>

ICRA: *Curcuma* L. (2000)

Registrar: Dr Chin See Chung, Fax: (+65) 6467 4832
Singapore Botanic Gardens, Cluny Email: chin_see_chung@nparks.gov.sg
Road, Singapore 259569

UNITED STATES NATIONAL ARBORETUM

<http://www.usna.usda.gov>

ICRA: *Lagerstroemia* L. (1970)

Registrar: Dr Margaret Pooler, Fax: (+1) 202 245 4579
USDA/ARE U.S. Arboretum, 3501 Email: margaret.pooler@ars.usda.gov
New York Avenue, NE Washington,
DC 20002-1958, USA

부록 II

법정식물등록기관의 주소록

최근의 세부 사항을 위해서는 신제품 보호를 위한 국제기구(Union Internationale pour la Protection des Obtentions Végétales; UPOV) 에 연락해야 한다.

<http://www.upov.int>

ALBANIA

National Seeds and Seedlings Institute Tel: (355 4) 230 324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Protection Fax: (355 4) 230 324
of Consumer E-mail: petrittopi@yahoo.com
Rr. Siri Kodra fetahlezi@yahoo.com
Tirana Website: www.eshff.gov.al

ARGENTINA

Instituto Nacional de Semillas (INASE) Tel: (54 11) 4349 2497
Secretaría de Agricultura, Ganadería y Pesca Fax: (54 11) 4349 2417
Ministerio de Economía y Obras y Servicios E-mail: inase@sagyp.mecon.ar
Públicos Website: <http://www.inase.gov.ar>
Avda, Paseo Colón 922 - 3. Piso, Of. No. 347
1063 Ciudad de Buenos Aires

AUSTRALIA

The Registrar Tel: (61-2) 6283 2999
Plant Breeder's Rights Fax: (61-2) 6283 7999
IP Australia E-mail: pbr@ipaustralia.gov.au
P.O. Box 200 Website: <http://www.ipaustralia.gov.au/pbr/index.shtml>
Woden, A.C.T. 2606

AUSTRIA

Bundesamt für Ernährungssicherheit
Institut für Sortenwesen
Postfach 400
Spargelfeldstrasse 191
A-1226 Wien

Tel: (43-1) 732 16 40 00
Fax: (43-1) 732 16 42 11
E-mail: sortenwesen@ages.at
Website: <http://www.ages.at>

AZERBAIJAN

State Commission on the Test and Protection of
Selection Novelty
Necif Narimanov st., 7A
1006 Baku

Tel/Fax: (994-12) 462 5420
E-mail: yguliyev@agroagency.gov.az

BELARUS

Committee for the State Testing and Protection
of Plant Varieties of the Republic of Belarus
90, Kazintza str.
Minsk 220108

Tel: (375-17) 277 0421 / 277 7051
Fax: (375-17) 278 3530
E-mail: sortr@mshp.minsk.by

BELGIUM

Service public fédéral économie, P.M.E.
Classes moyenne & energie
Office de la Propriété Intellectuelle
North Gate III - 5ème étage
16, Blvd du Roi Albert II
B-1000 Bruxelles

Tel: (32-2) 277 8275
Fax: (32-2) 277 5262
E-mail: camille.vanslebrouck@
economie.fgov.be
Website: [http://economie.fgov.be/
opri-die.htm](http://economie.fgov.be/opri-die.htm)

BOLIVIA

Dirección Nacional de Semillas
Secretaría Nacional de Agricultura y Ganadería
Avda. 6 de Agosto 2006, Edif. V. Centenario
Casilla 4793
La Paz

Tel: (591-2) 441 153 / 441 608
Fax: (591-2) 441 153 / 441 608
E-mail: semillas@ceibo.entelnet.bo
Website: <http://www.semillas.org>

BRAZIL

Serviço Nacional de Proteção de Cultivares
(SNPC)
Secretaria de Desenvolvimento Agropecuário e
Cooperativismo (SDC)
br
Ministério da Agricultura, Pecuária e
Abastecimento
Serviços Proteção de Cultivares
Esplanada dos Ministérios, Bloco D, Anexo A,
Sala 251 CEP 70043-900, Brasilia, DF

Tel: (55-61) 3218 2547 / 2549
Fax: (55-61) 3224 28 42
E-mail: snpc@agricultura.gov.br
Website: <http://www.agricultura.gov.br>

BULGARIA

State Patent Office of the Republic of Bulgaria
52 B, Dr. G.M. Dimitrov Blvd,
BG-1040 Sofia

Tel: (359-2) 873 51 75
Fax: (359-2) 873 51 78
E-mail: bpo@bg.net
Website: <http://www.bpo.bg>

Central Office "Variety Testing"

Executive Agency for Variety Testing
Field Inspection and Seed Control (IASAS)
125 Tzarigradsko shose Blvd,
Block 1
1113 Sofia

Tel: (359-2) 700 375
Fax: (359-2) 71 36 35

CANADA

Plant Breeders' Rights Office
8th Floor, 2 Constellation Crescent
Ottawa
Ontario
K1A 0Y9

Tel: (1-613) 221-7521
Fax: (1-613) 228-4552
E-mail: vsisson@inspection.gc.ca
Website: [http://www.inspection.gc.ca/
english/plaveg/pbrpov/pbrpove.shtml](http://www.inspection.gc.ca/english/plaveg/pbrpov/pbrpove.shtml)

CHILE

Ministerio de Agricultura
Servicio Agrícola y Ganadero (SAG)

Tel: (56-2) 696 29 96, 698 22 44
Fax: (56-2) 696 64 80

Departamento de Semillas
Avda Bulnes 140
Casilla 1167-21
Santiago de Chile

E-mail: semillas@sag.gob.cl
Website: <http://www.sag.gob.cl>

CHINA

Office for the Protection of New Varieties of
Plants
Ministry of Agriculture
Building 20
Maizidian Jie Beijing 100125

Tel: (86-10) 6592 5051
Fax: (86-10) 6592 3176
E-mail: cnpvp@agri.gov.cn
Website: <http://www.cnpvp.cn>

Office for the Protection of New Varieties of
Plants
State Forestry Administration
18 Hepingli Dongjie
Beijing 100714

Tel: (86-10) 8423 9104
Fax: (86-10) 8423 8883
E-mail: webmaster@cnpvp.net
Website: <http://www.cnpvp.gov.cn>

COLOMBIA

Instituto Colombiano Agropecuario (ICA)
División de Semillas - Oficina 410
Calle 37 No. 8-43
Santa Fe de Bogotá

Tel: (57-1) 232 4697, 232 8643
Fax: (57-1) 232 4695, 288 4037
E-mail: obtentores.semillas@ica.gov.co
Website: <http://www.ica.gov.co>

CROATIA

Institute for Seed and Seedlings
Vinkovacka cesta 63c
31000 Osijek

Tel: (385-31) 275 206
Fax: (385-31) 275 193
E-mail: r.ore@zsr.hr
Website: <http://www.zsr.hr/main.htm>

CZECH REPUBLIC

Central Institute for Supervising and Testing in
Agriculture
Department of Plant Variety Rights
Za Opravnou 4

Tel: (420-2) 572 11755
Fax: (420-2) 572 11752
E-mail: motol@ooz.zeus.cz
Website:

150 06 Praha 5 - Motol

<http://www.ukzuz.cz/en/index.php>

DENMARK

Plant Directorate
Department of Variety Testing
Teglværksvej 10, Tystofte
DK-4230 Skælskør

Tel: (45) 5816 0600
Fax: (45) 5816 0606
E-mail: afs@pdir.dk
Website: <http://www.pdir.fvm.dk/afs>

ECUADOR

Instituto Ecuatoriano de la Propiedad Intelectual
Dirección Nacional de Obtenciones Vegetales
Avenida República 396 y Diego de Almagro
Edificio Forum 300, 1er piso
Quito

Tel: (593-2) 2508 000, ext. 340
Fax: (593-2) 2508 026
E-mail: iepi@interactive.net.ec

ESTONIA

Plant Production Inspectorate
Variety Control Department
Vabaduse plats 4
71020 Viljandi

Tel/Fax: (+372) 433 4650
E-mail: pille.ardel@plant.agri.ee
Website: <http://www.plant.agri.ee>

EUROPEAN COMMUNITY

Community Plant Variety Office
P.O. Box 10121
49021 Angers Cedex 02
France

Tel: (33-2) 41 25 64 32
Fax: (33-2) 41 25 64 10
Website: www.cpvo.europa.eu

FINLAND

Plant Variety Board
Plant Variety Rights Office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
Hallituskatu 3a, Helsinki
Box 30
FIN-00023 Government

Tel: (358-9) 160 3316
Fax: (358-9) 88663
E-mail: arto.vuori@mmm.fi
Website: <http://www.mmm.fi>

FRANCE

Comité de la protection des obtentions végétales
11, rue Jean Nicot
F-75007 Paris

Tel: (33-1) 42 75 93 14
Telex 250 648
Fax: (33-1) 42 75 94 25
Website: <http://geves.zarcrom.fr>

GERMANY

Bundessortenamt
Postfach 61 04 40
D-30604 Hannover

Tel: (49-511) 9566-5
Fax: (49-511) 563362
E-mail: bsa@bundessortenamt.de
Website: <http://www.bundessortenamt.de>

HUNGARY

Hungarian Patent Office
Magyar Szabadalmi Hivatal
Garibaldi-u, 2 - B.P. 552
H-1370 Budapest

Tel: (36-1) 312 44 00, 331 3992
Fax: (36-1) 311 48 41, 331 25 96
E-mail: mszh@hungary.com
Website: <http://www.hpo.hu>

ICELAND

Agricultural Research Institute
Ministry of Agriculture
Solvholsgata 7, 4th floor
IS-150 Reykjavik

Tel: (354) 545 9750
Fax: (354) 552 1160
E-mail: thorsteinn.tomasson@lan.stjr.is

IRELAND

Controller of Plant Breeders' Rights
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Food
Backweston
Leixlip
Co. Kildare

Tel: (353) 1-628 0608
Fax: (353) 1-628 0634
E-mail: backwest@agriculture.gov.ie
Website: <http://www.gov.ie/daff>

ISRAEL

The Plant Breeders' Rights Council
Ministry of Agriculture and Development
P.O. Box 30

Tel: (972-3) 948 5450
Fax: (972-3)-948 5839
E-mail: pbr@moag.gov.il

Bet-Dagan 50250

ilpbr_tu@int.gov.il
Website: <http://www.moag.gov.il>

ITALY

Ufficio Italiano Brevetti e Marchi
Ministero delle attività produttive
19, via Molise
I-00187 Roma

Tel: (39-06) 47 05 1, 488 43 54 (Div. IV)
Fax: (39-06) 47 05 30 35
E-mail: segreteria.dgspc@minindustria.it
Website: <http://www.minindustria.it>

JAPAN

Seeds and Seedlings Division
Agricultural Production Bureau
Ministry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1-2-1 Kasumigaseki - Chiyoda-ku
Tokyo 100

Tel: (81-3) 35 91 05 24
Fax: (81-3) 35 02 65 72
Website: <http://www.hinsyu.maff.go.jp/english/index.htm>

JORDAN

The Registrar
New Plant Variety Protection Office
Ministry of Agriculture
Q. Rania Alabdalah street
Amman

Tel: (962) 6 568 6151
Fax: (962) 6 565 1786
E-mail: pvp@moa.gov.jo

KENYA

Plant Breeders' Rights Office
Kenya Plant Health Inspectorate Service
(KEPHIS)
Headquarters
Waiyaki Way
P.O. Box 49592
Nairobi

Tel: (254-20) 44 40 29/44 40 31
Fax: (254-20) 44 89 40/44 00 87
E-mail: pvpo@kephis.org
Website: <http://www.kephis.org>

KYRGYZSTAN

State Agency of Science and Intellectual Property
62 Moskovskaya Street

Tel: (+996-3312) 51 08 10 / 68 08 19
Fax: (+996-3312) 51 08 13 / 68 17 03

720021 Bishkek
House 10/1, Microregion 11
720049 Bishkek

E-mail: kyrgyzpatent@infotel.kg
Website: <http://www.kyrgyzpatent.kg>

LATVIA

Plant Variety Testing Department
State Plant Protection Service
Lubanas iela, 49
LV-1073 Riga

Tel: (+371) 7365567
Fax: (+371) 7365571
E-mail: sergejs.katanenko@vaad.gov.lv
Website: <http://www.vaad.gov.lv>

LITHUANIA

Lithuanian State Plant Varieties Testing Centre
Smelio st, 8
LT-2055 Vilnius

Tel: (370 5) 234 3647
Fax: (370 5) 234 1862
E-mail: sigitaavtc@takas.lt
Website: <http://www.avtc.lt>

MEXICO

Servicio Nacional de Inspección y
Certificación de Semillas (SNICS)
Secretaría de Agricultura, Ganadería y
Desarrollo Rural, Pesca y Alimentación
Av. Presidente Juárez No. 13
Col. El Cortijo
54000 Tlalnepantla, Estado de México

Tel: (52-5) 5384 2213
Fax: (52-5) 5390 1441
Website: <http://www.sagarpa.gob.mx/snics/>

MOROCCO

Chef Service de Contrôle des Semences et Plants
Direction de la Protection des Végétaux, des
Contrôles Techniques et de la Répression des
Fraudes
Ministère de l'Agriculture, du Développement
Rural et des Pêches Maritimes
B.P. 1308, Rue Hafiane Cherkaoui
Rabat

Tel: +212 37 771085
Fax: +212 37 779852
E-mail: amar.tahiri@menara.ma

NETHERLANDS

Postal address:
Raad voor Plantenrassen
Postbus 27
NL-6710 BA Ede

Tel: (31-318) 82 25 80
Fax: (31-318) 82 25 89
E-mail: plantenrassen@naktuinbouw.nl
Website: <http://www.plantenrassen.nl>

NEW ZEALAND

The Commissioner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f New Zealand
Plant Variety Rights
Ministry of Economic Development
P.O. Box 9241
Marion Square
Wellington 6141

Tel: (64 4) 9783624
Fax: (64 4) 978 3691
E-mail: info@iponz.govt.nz
Website: <http://www.iponz.govt.nz>

NICARAGUA

Registro de la Propiedad Intelectual
Ministerio de Fomento, Industria y Comercio
(MIFIC)
Apartado postal 8
Managua

Tel: (505) 267 3061, 237 2417, 267 2417
ext. 1279, 1221
Fax: (505) 267 5393
E-mail: gzelaya@mific.gob.ni
rpi-nic@ibw.com.ni
Website: <http://www.mific.gob.ni/comercio/dirmercados/propintelectual.html>

NORWAY

Plantesortsnemnda
P.O. Box 3
N-1431 Ås

Tel: (47) 64 94 44 00
Fax: (47) 64 94 44 10
Website: www.plantesortsnemnda.no

PANAMA

Dirección General del Registro
de la Propiedad Industrial (DIGERPI)
Ministerio de Comercio e Industrias
Apartado 9658 - Zona 4
Panamá 4

Tel: (507) 227 39 87 / 227 25 35
Fax: (507) 227 21 39 / 275 604
E-mail: digerpi@sinfo.net
Website: www.digerpi.gob.pa

PARAGUAY

Ministerio de Agricultura y Ganadería
Dirección de Semillas (DISE)
Gaspar R. de Francia No. 685
c/ Mcal. Estigarribia
San Lorenzo

Tel: (595) 21 58 22 01
Fax: (595) 21 58 46 45
E-mail: dise@telesurf.com.py

POLAND

Research Center for Cultivar Testing
(COBORU)
63-022 Slupia Wielka

Tel: (48-61) 285 23 41
Fax: (48-61) 285 35 58
E-mail: sekretariat@coboru.pl
Website: <http://www.coboru.pl>

PORTUGAL

Centro Nacional de Registo de Variedades
Protegidas (CENARVE)
Edifício II da DGPC
Tapada da Ajuda
P-1300 Lisboa

Tel: (351-213) 613 216
Fax: (351-213) 613 222
E-mail: info@dgpc.min-agricultura.pt
Website:
<http://www.dgpc.min-agricultura.pt>

REPUBLIC OF KOREA

The Director General
National Seed Management Office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
433 Anyang-6-dong
Anyang City 430-016

Tel: (+82-31) 467-0150
Fax: (+82-31) 467-0161
E-mail: info@seed.go.kr
Website: <http://www.seed.go.kr>

REPUBLIC OF MOLDOVA

State Commission for Crops Variety Testing and
Registration
Ministry of Agriculture
Bul. Stefan cel Mare 162
C.P. 1873
2004 Chisinau

Tel: (373-22) 462 22, 203 00
Fax: (373-22) 469 21, 115 37
E-mail: csispm@yahoo.com

State Agency on Intellectual Property (AGEPI)
24/1 Andrei Doga Street
2024 Chisinau

Tel: (373-22) 44 00 94
Fax: (373-22) 44 00 94
E-mail: office@agepi.md
Website: <http://www.agepi.md>

ROMANIA

State Office for Inventions and Trademarks
(OSIM)
5, Ion Ghica Str., Sector 3
P.O. Box 52
70018 Bucharest

Tel: (40-1) 315 90 66
Fax: (373-2) 312 38 19
E-mail: office@osim.ro
Website: <http://www.osim.ro>

RUSSIAN FEDERATION

State Commission of the Russian Federation for
Selection Achievements Test and Protection
Orlikov per., 1/11
107139 Moscow

Tel: (7-495) 207 49 26
Fax: (7-495) 411 83 66
E-mail: gossort@gossort.com
Website: <http://www.gossort.com>

SINGAPORE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f Singapore (IPOS)
51 Bras Basah Road #04-01
Plaza by the Park

Tel: (65) 6331 6580
Fax: (65) 6339 0252
E-mail: dennis_low@ipos.gov.sg
Website: <http://www.ipos.gov.sg/main/index.html>

SLOVAKIA

Ministry of Agriculture
Dobrovicova 12
812 66 Bratislava

Tel: (421-2) 592 66 290
Fax: (421-2) 592 66 294
E-mail: lucia.povodova@land.gov.sk
Website:
<http://www.mpsr.sk/english/index.htm>

SLOVENIA

Phytosanitary Administration of the Republic of
Slovenia

Tel: (386-1) 3094 396
Fax: (386-1) 3094 335

Ministry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ood
(MAFF)
Einspielerjeva 6
1000 Ljubljana

E-mail: furs.mkgp@gov.si
Website: <http://www.furs.si>

SOUTH AFRICA

The Registrar
National Department of Agriculture
Directorate: South African Agricultural Food,
Quarantine and Inspection Services
Private Bag X 11
Gezina 0031

Tel: (27-12) 808 03 65, 808 50 80
Fax: (27-12) 808 03 65, 808 50 80
E-mail: variety.control@nda.agric.za

SPAIN

Oficina Española de Variedades Vegetales
(OEVV)
Ministerio de Agricultura, Pesca y Alimentación
C/ Alfonso XII no 62, 2 planta
28014 Madrid

Tel: (34) 91 347 65 93
Fax: (34) 91 347 67 03
Website: <http://www.mapa.es>

SWEDEN

Swedish Board of Agriculture
Crop Production Division
S-551 82 Jönköping

Tel: (46-36) 15 55 15/15 58 85
Fax: (46-36) 71 05 17
E-mail: jordbruksverket@sjv.se
Website: <http://www.sjv.se>

Swedish Board of Agriculture
Seed Division
Box 83
SE- 268 22 Svalöv

E-mail: utsadeskontroll@sjv.se
Website: <http://www.sjv.se>

SWITZERLAND

Bundesamt für Landwirtschaft
Büro für Sortenschutz
Mattenhofstr. 5
CH-3003 Bern

Tel: (41-31) 322 25 24
Fax: (41-31) 322 26 34
E-mail: manuela.brand@blw.admin.ch
Website: www.blw.admin.ch

TRINIDAD AND TOBAGO

Controller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Ministry of Legal Affairs
72-74 South Quay
Port of Spain

Tel: (1-868) 625 99 72, 627 95 67
Fax: (1-868) 624 12 21
E-mail: info@ipo.gov.tt

TUNISIA

Direction générale de la protection et du contrôle
de la qualité des produits agricoles
Service d'homologation et de protection des
obtentions végétales
30, rue Alain Savary
1002 Tunis

Tel: (216 71) 788979 / 800419
Fax: (216 71) 784419

TURKEY

Variety Registration and Seed Certification Centre
Ministry of Agriculture and Rural Affairs
Gayret Mah, Fatih Sultan Mehmet Bulvari No:62
P.O. Box: 30
06172 Yenimahalle – Ankara

Tel: + 90 312 3154605
Fax: + 90 312 3150901
E-mail: kyilmaz@tagem.gov.tr

UKRAINE

State Services for Plant Variety Rights Protection
15, Henerala Rodimtseva str.
03041 Kyiv

Tel: (380-44) 257 99 33
Fax: (380-44) 257 99 34
E-mail: sops@sops.gov.ua
Website: <http://www.sops.gov.ua/index.htm>

UNITED KINGDOM

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 Rural
Affairs (DEFRA)
The Plant Variety Rights Office and Seeds
Division
White House Lane
Huntingdon Road

Tel: (44-1223) 34 23 81
Telex 817 422 pvscam g
Fax: (44-1223) 34 23 86
E-mail: mike.wray@defra.gsi.gov.uk
Website:
www.defra.gov.uk/planth/pvs/

Cambridge CB3 0LF

default.htm

UNITED STATES OF AMERICA

The Director of the 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USPTO)
Mail Stop International Relations
P.O. Box 1450
Alexandria, VA 22313-1450

Tel: (1-571) 272 9300
Fax: (1-571) 273 0085
Website: <http://www.uspto.gov>

The Commissioner
Plant Variety Protection Office
Agricultural Marketing Service
Department of Agriculture
Beltsville, Maryland 20705-2351

Tel: (1-301) 504 55 18
Fax: (1-301) 504 52 91
Website: <http://www.ams.usda.gov/science/pvpo/pvpindex.htm>

URUGUAY

Instituto Nacional de Semillas (INASE)
Casilla de Correos 7731
Pando
90,000 Canelones

Tel: (598-2) 288 7099
Fax: (598-2) 288 7077
E-mail: inasepre@adinet.com.uy
Website: www.chasque.apc.org/inase

UZBEKISTAN

State Patent Office
2a, Toitepa St.
700047 Tashkent

Tel: (998 71) 13200 13
Fax: (998 71) 13345 56
E-mail: info@patent.uz
Website: <http://www.patent.uz/eng/>

VIETNAM

Plant Variety Protection Office of Viet Nam
Ministry of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MARD)
No 2 Ngoc Ha Str
Ba Dinh District
Hanoi

Tel: (84 4) 8435182
Fax: (84 4) 7342844
E-mail: thongph.nn@mard.gov.vn
Website:
<http://pvpo.mard.gov.vn/english.asp>

부록 III

명명기준의 보유장소

이곳에는 현재 활발하게 명명기준표본을 지정하고 수집하는 곳만을 리스트하였다. 표본관의 약어는 표본관 색인에 따랐다(<http://sciweb.nybg.org/science2/IndexHerbariorum.asp>.) 재배식물의 계통을 처리하는 기관의 담당자가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연락처는 그 기관의 연락처를 수록하였다.

독자들에게 기준을 유지하는 또 다른 표본관에 대해서 알리거나 현재 명단에 실린 세부사항을 개정하기 위해 편집자(E-mail: icncp@rhs.org.uk)에게 연락하기를 청한다.

AUSTRALIA

(C-ANB) Australian National Herbarium
Centre for Plant Biodiversity Research
GPO Box 1600
Canberra A.C.T. 2601

Contact: Brendan Lepschi
Fax: (+61) 2 6246 5249
E-mail: brendan.lepschi@csiro.au
<http://www.anbg.gov.au/cpbr/herbarium>

(MEL) National Herbarium of Victoria

Royal Botanic Gardens
Birdwood Avenue
South Yarra
Victoria 3141

Contact: Roger D. Spencer
Fax: (+61) 3 9252 2350
E-mail: rspenc@rbgmelb.org.au
http://www.rbg.vic.gov.au/research_and_conservation/herbarium.html

CANADA

(HAM) Royal Botanical Gardens
Royal Botanical Gardens
PO Box 399

Contact: Natalie Iwanycki
Tel: (+1) 905 527 1158
Fax: (+1) 905 577 0375

Hamilton
Ontario
L8N 3H8
E-mail: niwanycki@rbg.ca
http://www.rbg.ca/pages_sci_conserv/sci_conserv_herbarium.html

CHINA

(NF) Nanjing Forest University
Nanjing 210037
Jiangsu

Contact: Xian-Rong Wang
E-mail: lamina_w@hotmail.com

THE NETHERLANDS

(WAG) National Herbarium Nederland, Wageningen
Wageningen University Branch
Generaal Foulkesweg 37
6703 BL Wageningen

Contact: J. Folkert Aleva
Fax: (+31) 317 484917
E-mail: folkert.aleva@wur.nl
<http://www.nationaalherbarium.nl>

NEW ZEALAND

(CHR) Allan Herbarium
Landcare Research New Zealand Ltd,
PO Box 40
Lincoln 7640
Lincoln

Contact: Ilse Breitwieser
Tel: (+64) 3 321 9621
Fax: (+64) 3 321 9998
E-mail: breitwieseri@landcareresearch.co.nz
<http://www.landcareresearch.co.nz/research/biodiversity/plantsprog/herbarium.asp>

SOUTH AFRICA

(NH) Kwazulu-Natal Herbarium
Box 52099
Berea Rd
Durban 4007

Contact: Hugh F. Glen
E-mail: glen@sanbi.org
<http://www.sanbi.org>

UNITED KINGDOM

(E) Royal Botanic Garden, Edinburgh
Herbarium, Royal Botanic Garden
Edinburgh EH3 5LR

Contact: David Harris
Fax: (+44) 131 248 2901

E-mail: herbarium@rbge.org.uk
<http://www.rbge.org.uk/rbge/web/collect/herb.jsp>

(HILL) Harold Hillier Herbarium

Sir Harold Hillier Gardens
Jermyns Lane,
Ampfield, Romsey
Hampshire SO51 0QA

Contact: Allen Coombes
Fax: (+44) 1794 368027
E-mail: allen.coombes@hants.gov.uk
<http://www.hillier.hants.gov.uk>

(RNG) University of Reading

Herbarium, University of Reading
The Harborne Building
Whiteknights
Reading
Berkshire RG6 6AS

Contact: Stephen L. Jury
Fax: (+44) 118 378 8169
E-mail: s.l.jury@reading.ac.uk
<http://www.herbarium.reading.ac.uk>

(WSY) Royal Horticultural Society

Royal Horticultural Society's Garden
Wisley
Woking
Surrey
GU23 6QB

Contact: Christopher M. Whitehouse
Fax: (+44) 1483 211750
E-mail: christopherwhitehouse@rhs.org.uk
<http://www.rhs.org.uk/research/herbarium.asp>

UNITED STATES OF AMERICA

(BISH) Bishop Museum

Herbarium Pacificum
Bishop Museum
Department of Natural Sciences
1525 Bernice Street
Honolulu
Hawai'i
96817-2704

Contact: Napua Harbottle
Fax: (+1) 808 847 8252
E-mail: napuah@bishopmuseum.org
<http://www.bishopmuseum.org/research/natsci/botany/botany.html>

(BKL) Brooklyn Botanic Garden
Herbarium, Brooklyn Botanic Garden
1000 Washington Avenue
Brooklyn
New York 11225-1099

Contact: Kerry A. Barringer
Fax: (+1) 718 941 47774
E-mail: kerrybarringer@bbg.org
<http://www.bbg.org/sci/herbarium/index.html>

(CONN) George Safford Torrey
Herbarium
University of Connecticut
Box U-43
75 North Eagleville Road
Storrs
Connecticut 06269-3043

Contact: Robert Capers
Fax: (+1) 860 486 6364
E-mail: robert.capers@uconn.edu
<http://bgbaseserver.eeb.uconn.edu/Department>
of Ecology and Evolutionary Biology

(DOV) Claude E. Phillips Herbarium
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Natural
Resources
Delaware State University
Dover
Delaware 19901-2277

Contact: Arthur O. Tucker, Co-Director
Fax: (+1) 302 857 6460
E-mail: atucker@desu.edu
<http://www.desu.edu/herbarium>

(MU) Willard Sherman Turrell Herbarium
Department of Botany
Miami University
79 Upham Hall
Oxford
Ohio 45045

Contact: Michael A. Vincent
Fax: (+1) 513 529 4243
E-mail: vincenma@muohio.edu
<http://www.units.muohio.edu/herbarium>

(NA) United States National Arboretum
3501 New York Avenue North East
Washington
DC 20002-1958

Contact: Mike Cagley
Fax: (+1) 202 245 4579
E-mail: mike.cagley@ars.usda.gov
<http://www.usna.usda.gov/Research/herbarium.html>

부록 IV

중요한 종묘회사 목록을 보유한 도서관

종묘회사 목록 또는 인터넷 상으로 목록을 보유한 도서관을 알려주기 위해(권고 25B.2에 따라) 다음의 목록을 제공한다. 표본들에 고유의 약어가 부여되듯 이러한 목록을 언급하는 표준화된 방법을 가지고 있지 않다.

독자들에게 종묘회사 목록의 중요하고 활발하게 유지되는 수집품을 보유한 또 다른 도서관에 대해 알리거나 현재 명단에 실린 세부사항을 개정하기 위해 편집자(E-mail: icncp@rhs.org.uk)에게 연락하기를 청한다.

북미 지역의 많은 수집품들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알기 위해서는 Botanical and Horticultural Libraries publication의 위원회에 연락하길 바란다. 수집물의 목록(개정판) (1990)은 New York Botanical Garden에서 구할 수 있다.

CANADA

Royal Botanic Gardens Library

680 Plains Road West
Hamilton/Burlington
Ontario, Canada
L7T 4H4

Tel: (+1) 905 527 1158

Website: http://www.rbg.ca/pages_sci_conserv/sci_conserv_library.html

FRANCE

Bibliothèque Générale

Agrocampus Ouest centre de formation d'Angers
Institut National d'Horticulture et de Paysage
2 rue le Nôtre
49045 Angers Cedex 01
France

Tel: (+33) 2 41 22 55 63

Fax: (+33) 2 41 73 15 57

Bibliothèque-CDI

Société Nationale d'Horticulture de France
84 rue de Grenelle
75007 Paris
France

Tel: (+33) 1 44 39 78 71
Fax: (+33) 1 44 39 78 95
E-mail: bib.cdi@snhf.org

GERMANY

Bücherei des Deutschen Gartenbaues e.V.
c/o TU Berlin, Universitätsbibliothek
Fasanenstr. 88
D 10623 Berlin
Germany

Tel: (+49) 30 314 76 149 (Thursday only)
E-mail: garbue@gmx.de
Website:
<http://www.gartenbauebuecherei.de>

NETHERLANDS

Bibliotheek Wageningen UR
(Special Collections)
Postbus 9100
6700 HA Wageningen
The Netherlands

Tel: (+31) 317 482701
Fax: (+31) 317 484761
E-mail: speccoll.library@wur.nl
Website: http://library.wur.nl/speccol/nursery_catalogues/

KAVB library

PO Box 175
NL 2180 AD Hillegom
Weersesteinstraat 10A
NL 2181 GA Hillegom
The Netherlands

Tel: (+31) 252 53 69 50
Fax: (+31) 252 536951
E-mail: library@kavb.nl
Website: www.kavb.nl

SOUTH AFRICA

Mary Gunn Library
SANBI National Herbarium
Private Bag X101
Pretoria
0001 South Africa

Tel: (+27) 12 843 5000
Fax: (+27) 12 804 8740
Website: <http://www.sanbi.org/information/marygunn.htm>

SWEDEN**Alnarp Library**

PO Box 51
SE-230 53
Alnarp
Sweden

Tel: (+46) 40 415050
Fax: (+46) 40 415058
E-mail: alnarpsbiblioteket@bibal.slu.se
Website: <http://www.bib.slu.se/bibliotek/alnarp/eplantskolekat.html>

UK**Lindley Library London**

Royal Horticultural Society
80 Vincent Square
London

Tel: (+44) 20 7821 3050
Fax: (+44) 20 7821 3022
E-mail: library.london@rhs.org.uk
Website: http://www.rhs.org.uk/UK_Learning/Library/SW1P_2PE

USA**Andersen Horticultural Library**

University of Minnesota Landscape Arboretum
3675 Arboretum Drive
Chaska, MN 55318
USA

Tel: (+1) 952 443 1405
Fax: (+1) 952 443 2521
E-mail: kallen@umn.edu
Website: <http://www.arboretum.umn.edu/librarycollections.aspx>

L.H. Bailey Hortorium

Dept. of Plant Biology
412 Mann Library Bldg.
Cornell University
Ithaca, NY 14853
USA

Tel: (+1) 607 255 0863 or 255 0455
Fax: (+1) 607 255 5407
E-mail: herbarium@cornell.edu
Website:
<http://bhort.bh.cornell.edu/catalogs.htm>

Elisabeth C Miller Library

University of Washington Botanic Gardens
3501 NE 41st Street
Seattle, WA 98195

Tel: (+1) 206 543 0415
Fax: (+1) 206 897 1435
E-mail: hortlib@u.washington.edu

USA

Website: <http://www.millerlibrary.org>

Henry G. Gilbert Nursery and Seed Trade Catalog Collection

USDA National Agricultural Library
Abraham Lincoln Building
10301 Baltimore Avenue
Beltsville, MD 20705-2351
USA

Tel: (+1) 301 504 5876
E-mail: speccoll@ars.usda.gov
Website: <http://www.nal.usda.gov/speccoll/collectionsguide/nurserycatalogs.shtml>

The LuEsther T. Mertz Library

International Plant Science Center
The New York Botanical Garden
200th Street and Kazimiroff Blvd,
Bronx, NY 10458-5126
USA

Tel: (+1) 718 817 8604
E-mail: libref@nybg.org
Website: <http://library.nybg.org>

Sterling Morton Library

The Morton Arboretum
4100 Illinois Route 53
Lisle, IL 60532-1293
USA

Tel: (+1) 630 719 2430
Fax: (+1) 630 719 7950
E-mail: library@mortonarb.org
Website: <http://www.mortonarb.org/>

University of Delaware Library Special Collections

Morris Library
181 South College Avenue
Newark, DE 19717-5267
USA

Tel: (+1) 302 831-2229
Website:
<http://www.lib.udel.edu/ud/spec/>

부록 V

특정 분류군집합(Special Denomination Class)

분류군집합은 조항 30에 따라 소명의 재사용이 허가된 경우를 제외하고 명칭, 그룹 또는 계품명의 사용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구성단위를 말한다(조항 21.8 참고)[조항 6.1].

특정 분류군집합이 명명 및 품종등록을 담당하는 ISHS 위원회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 한 명명규약에 부합되는 분류군집합은 하나의 종 또는 하나의 잡종이다[조항 6.2].

ISHS위원회는 아래의 특정 분류군집합을 정했다:

ANACARDIACEAE

Denomination Class: *Mangifera indica* L.

Denomination Class: *Mangifera* L., other than *M. indica* L.

CACTACEAE

Denomination Class: *Tribe Hylocereeae* (Britton & Rose) Buxb.: *Disocactus* Lindl.;
Epiphyllum Haw.; *Hylocereus* (A. Berger) Britton & Rose;
Pseudorhipsalis Britton & Rose; *Selenicereus* (A. Berger) Britton
& Rose; *Weberocereus* Britton & Rose and their hybrids and their
synonyms

CRASSULACEAE

Denomination Class: *Jovibarba* Opiz; *Rosularia* (DC.) Stapf; *Sempervivum* L. and their
synonyms

CUPRESSACEAE

Denomination Class: *Chamaecyparis* Spach; *Cupressus* L.; *Xanthocyparis* Farjon & T.H.
Nguyễn and their hybrids and their synonyms

IRIDACEAE

Denomination Class: *Gladiolus* L., large-flowering types

Denomination Class: *Gladiolus* L., species and early-flowering types

Denomination Class: *Iris* L., bulbous types

Denomination Class: *Iris* L., non-bulbous types

MALVACEAE

Denomination Class: *Hibiscus rosa-sinensis* L.

Denomination Class: *Hibiscus* L., other than *H. rosa-sinensis* L.

ORCHIDACEAE

다음은 계품명이나 그룹이 중복되지 않는 난과(Orchidaceae)에서의 특정 분류군집합이다. Pleione속의 식물을 제외하면 난 품종의 분류군집합은 종이나 계품이다. Pleione속 분류군집합에 있는 명칭, 그룹, 계품소명은 속(genus)이다.

Denomination Class: *Anguloa* Ruiz & Pav.; *Ida* A. Ryan & Oakeley; *Lycaste* Lindl. and their hybrids and their synonyms

Denomination Class: *Ascocentrum* Schltr. ex J.J. Sm.; *Vanda* Jones ex R.Br. and their hybrid and their synonyms

Denomination Class: *Cochlioda* Lindl.; *Cyrtorchilum* Kunth; *Miltonia* Lindl.; *Odontoglossum* Kunth; *Oncidium* Sw. and their hybrids and their synonyms

Denomination Class: *Doritis* Lindl.; *Kingiella* Rolfe; *Phalaenopsis* Blume and their hybrids and their synonyms

ROSACEAE

Denomination Class: *Potentilla fruticosa* L. sensu lato and its synonyms

Denomination Class: *Potentilla* L., other than *P. fruticosa* L. sensu lato and its synonyms.

부록 VI

유지 또는 기각된 소명의 목록

소명은 국제재배식물명명에 관계된 IUBS 국제위원회가 국제재배등록기관 또는 위원회에 제출하는 또 다른 집단으로부터 제의를 받아 영구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

여러 가지 고려 사항에 대해 서술하고 있어야 하는 제의(Submissions)는 반드시 위원회의 비서(Drs W. L. A. Hetterscheid, Department of Plant Sciences, Wageningen University, Generaal Foulkesweg 37, 6703 BL Wageningen, The Netherlands, E-mail: Wilbert.Hetterscheid@wur.nl)에 의해 성립된다.

다음의 목록은 영구적이게 추가사항을 공개하고 있다.

ANDROMEDA (Ericaceae)

'Compacta Alba' in *Andromeda polifolia* 'Compacta Alba' (2004 in *Heathers* 1:64)

CALLUNA (Ericaceae)

'Alba Jae' in *C. vulgaris* 'Alba Jae' (2004 in *Heathers* 1:64)

'Corrie's White' in *C. vulgaris* 'Corrie's White' (2004 in *Heathers* 1:64)

rejected name: *C. vulgaris* 'Corrie's Form'

'Dainty Bess Junior' in *C. vulgaris* 'Dainty Bess Junior' (2004 in *Heathers* 1:64)

rejected name: *C. vulgaris* 'Bess Junior'

'Hirsuta Albiflora' in *C. vulgaris* 'Hirsuta Albiflora' (2004 in *Heathers* 1:64)

'Pyramidalis' in *C. vulgaris* 'Pyramidalis' (2004 in *Heathers* 1:64)

rejected name: *C. vulgaris* 'Alba Pyramidalis'

ERICA (Ericaceae)

'Baylay's Variety' in *E. cinerea* 'Baylay's Variety' (2004 in *Heathers* 1:64)

'King George' in *E. carnea* 'King George' (2004 in *Heathers* 1:64)

rejected name: *E. carnea* 'King George V'

'Mrs Sam Doncaster' in *E. carnea* 'Mrs Sam Doncaster' (2004 in *Heathers* 1:64)

rejected name: *E. carnea* 'Mrs Samuel Doncaster'

VIBURNUM (Caprifoliaceae)

'Sterile' in *V. macrocephalum* 'Sterile' (1995 in *ICNCP* 6th edition:69)

syn: *V. macrocephalum* Fortune var. *macrocephalum*

V. macrocephalum var. *sterile* Dippel, Handb. Laubh. 1: 178. 1889 *nom. illegit.*

V. keteleeri macrocephalum Carrière, Rev. Hort. 1863:271, 1863

V. fortunei hort. ex Nicholson, Ill. Dic. Gard. 4 : 155. 1887 *pro syn.*

부록 VII

식물의 라틴어 명칭

식물의 명칭을 라틴어로 나타내는 것은 *International Code of Botanical Nomenclature*에 따른다. 이는 국제식물명명규약 또는 식물학 규약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현재 개정안(2006)은 17th International Botanical Congress held in Vienna in July 2005 에 결정된 사항이며 비엔나 규약으로 알려져 있다.

*ICBN*은 계통학적 그룹의 명칭(하나의 계통 또는 계통들의 약어)을 다루고 있으며 연속적인 하위 계급을 계통학적 순서로 조정한다.

주요한 계급은 다음과 같다: 계, 문, 강, 목, 과, 속, 종이며 종은 가장 기본적인 계급이다. 마지막에 있는 세 개의 계급이 재배식물의 명명을 위해 널리 쓰인다.

과 명칭(FAMILY NAMES)

과 명칭의 마지막에는 *-aceae*라는 어미를 붙이는 것이 기본이다.

예: *Apium* 속을 근거로 한 *Apiaceae*; *Brassica*속을 근거로 한 *Brassicaceae*;
*Caryophyllus*속을 근거로 한 *Caryophyllaceae*; *Ginkgo*속을 근거로 한 *Ginkgoaceae*;
Rosa 속을 근거로 한 *Rosaceae*; *Wintera* 속을 근거로 한 *Winteraceae*.

설명적이고 계통명에 기반하지 않지만 예전부터 널리 사용된 과명(long-standing family names)에 대해서는 예외가 허용되는데 이들은 또 다른 대체명으로 사용이 허용된다.

예: 비록 *Apiaceae*는 *Apium* 속을 근거로 하였지만, 예전부터 계속 사용되어 온 명칭 *Umbelliferae*는 대체명으로 허용된다; 마찬가지로 *Poaceae*도 *Poa*를 근거로 하였으나, *Gramineae*로 일부에게 더 잘 알려져 있다; *Asteraceae*는 종종 *Compositae*로 알려져 있다.

속 명칭(GENUS NAMES)

이들은 단수의 명사이며 첫 글자는 대문자로 쓴다.

예: *Galanthus*, *Lilium*, *Pinus*, *Triticum*, *Zea*, × *Crataemespilus*, + *Crataegomespilus*.

속의 세분화된 명칭은 아속, 절, 열로 나타내며, 이들은 명칭의 조합명이며 각자의 계급을 나타내는 말로 연결된 소명이다. 소명은 특별한 소명과 연결될 때 첫 글자를 대문자로 쓰는 삽입어구이다.

예: *Prunus* (subg. *Cerasus*) *avium*; *Primula* (sect. *Candelabra*) *japonica*; *Iris* (ser. *Laevigatae*) *laevigata*.

종 명칭(SPECIES NAMES)

종명은 속명 뒤에 특별한 소명으로써 라틴어의 이명법(二命法)이다

예: *Lilium candidum*에서 *Lilium*은 속명이며 *candidum*는 특별한 소명이다. 특별 소명은 소명의 형태일 때 속의 명칭 안에 성을 쓰는데 허용된다.

이들은 소문자로 쓴다. 세분화된 명칭은 아종, 변종, 품종으로 나타내며 이들은 종명과 이들의 계급을 나타내는 특별한 소명으로 쓰인다.

예: *Ranunculus acris* subsp. *friesianus*; *Rosa sericea* var. *omeiensis*.

유효출판(VALID PUBLICATION)

출판이 유효하기 위해서 명칭이 국제식물명명규약의 규약에 따라야 하며 라틴어로 적절하게 표현되어야 하고 명칭이 영구적으로 첨부된 증명인지 이명인지가 판단되어야 한다.

잡종(HYBRIDS)

잡종의 명칭을 정하는 것은 국제식물명명규약의 부록 I에 설명이 되어있다. 잡종은 곱하기 표시를 쓰거나 notho-의 접두사를 쓴다.

정형적 잡종명(Hybrid formulae)

속 간의 잡종은 속 명칭 간에 ×를 표기한다. 이 모든 명칭을 정형적 잡종명이라고 한다.

예: *Agrostis*와 *Polypogon*의 잡종은 *Agrostis* × *Polypogon*; *Camellia japonica*와 *Camellia saluenensis*의 잡종은 *Camellia japonica* × *Camellia saluenensis*로 나타낸다.

정형적 잡종명에서 명칭의 순서는 알파벳순서이다. 또는 모본을 알고 있는 경우 모본을 앞에 쓴다. 또는 부분(♂) 모본(♀)을 표기하기도 한다. 특정 출판에서 방법에 대해서 명확하게 언급해야 한다.

정형적 잡종명에 품종의 소명을 쓸 경우에 정형적 잡종명은 소명 앞에 괄호로 삽입해 두어야 한다.

예: camellia의 품종인 'Donation'은 *Camellia* (*C. japonica* × *C. saluenensis*) 'Donation'라고 표기를 해야 한다.

잡종의 명칭(Names of hybrids)

두 개 이상의 종의 잡종을 나타낼 때에는 명칭을 부여한다. 잡종의 명칭은 종간의 명칭의 소명 앞에 곱하기 표시(×)를 한다.

예: *Agrostis* × *Polypogon*의 명칭은 × *Agropogon*이며; *Camellia japonica* × *Camellia saluenensis*의 명칭은 *C. × williamsii*이다.

종간의 잡종을 나타내는 곱하기 표시는 반드시 하여 이 잡종이 특정 식물의 명칭이나 소명에 속해 있지만 실제로는 그 부분이 아님을 나타내야 한다(ICBN, Rec. H.3A). 곱하기 표시와 종소명 사이에 적당한 거리를 띄워서 좋게 한다. 수학적 기호를 쓸 수 가 없다면 “x”의 소문자로 표시 한다 (이탤릭이 아님).

속간잡종(nothogenus)의 모든 개체들은 종을 막론하고 동일한 속간잡종명(nothogeneric name)을 가진다.

예: *Cupressus*과 *Chamaecyparis*의 교잡을 통해 만들어진 모든 후대는 nothogenus × *Cupressocyparis*로 명명한다.

속간잡종명의 형성(Formation of nothogeneric names)

두 개 종 잡종의 명칭은 양친의 명칭 조합명으로 나타낸다. 한 종의 전체 혹은 앞 부분, 다른 한 종

은 전체 혹은 뒷부분을 이용한다. 그러나 양친의 명칭을 다 쓰지는 못하며 모음을 연결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은 명칭을 축약적 잡종명이라고 한다.

예: × *Alcathaea*는 *Alcea* × *Althaea*을 나타내며; × *Amarcrinum*은 *Amaryllis* × *Crinum*를; × *Epicattleya*는 *Epidendrum* × *Cattleya*을 나타낸다.

네 개 이상의 식물을 교배 하여 만들어진 교잡속명은 사람의 이름 뒤에 *-ara*를 붙인다. 이같은 명칭은 축약적 잡종명이며 여덟 음절을 넘지 않도록 한다.

예: × *Beallara*은 *Brassia* × *Cochlioda* × *Miltonia* × *Odontoglossum*을 축약한 명칭이다.

세 개의 속으로부터 유래된 잡종의 축약적 잡종명은 세 부모의 속명을 따서 하나의 명칭으로 만들어 여덟 음절을 넘지 않게 한다. 한 부모의 속명의 앞소절을 따고 그 뒤에는 다른 명칭의 전체 혹은 부분, 또 나머지 명칭의 전체 혹은 부분을 사용하며 선택적으로 한 개 또는 두 개의 모음을 사용한다. 또는 사람의 이름 뒤에 *-ara*를 붙여 나타낸다.

사람의 이름을 따서 만든 교잡속명의 경우, 명명자는 특정 기관의 수집가, 재배자 또는 학생일 것을 권고 한다

유효출판을 위해서 속간잡종명이 양친의 속명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하지만 라틴어이든 그 외 다른 언어이든, 기재(description)또는 표징(diagnosis)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러한 명칭은 축약적 잡종명이며 학명에서 파생된 명칭이 아니다.

중간잡종명(nothospecific names)

중간잡종의 명칭은 잡종이 아닌 종의 경우와 같은 규약에 따르며 유효출판으로 정해진다. 잡종은 소명 앞에 곱하기 표시를 통해 나타낸다. 곱하기 표시가 강제적인 것은 아니며 종의 위치에 대한 추가 정보를 가리키기 위해 단지 소명 앞에 붙인다.

종의 특별한 조합을 통해 만들어진 모든 후대들은 동일한 잡종 소명을 가지고 있다.

예: *Cupressus macrocarpa*와 *Xanthocyparis nootkatensis*를 통해 만들어진 모든 후대는 중간잡종명으로 × *Cuprocyparis leylandii*를 나타낸다; *Lilium* × *sulphurgale*는 *Lilium regale*와 *L. sulphureum*의 중간잡종명이다.

부록 VIII

명명법 여과장치(The Nomenclatural Filter)

아래에 기술된 점검문들은 “소명”나 “명칭”이 (a) 수립(established) 또는 (b) 채택(accepted)되었는지 점검을 할 수 있게 한다. 각각의 분리된 여과장치들은 명칭, 그룹, 계통 그리고 속간 잡종키메라의 명칭에 대해서도 제공을 해준다.

이와 같은 여과장치 안에 큰 따옴표로 표시된 단어 “소명”이나 “명칭”은 수립이 되기 전까지 사용된다. 이는 소명이나 명칭이 채택되는지 또는 아닌지를 고려하기 위함이다.

여과장치와 규약의 조항간의 어떤 불일치가 생긴다면 규약의 조항이 최종적인 확정이다.

1. 품종 소명(CULTIVAR EPITHETS)

1 “소명”이 적용된(applied) 식물이 식물 육종가의 권리 또는 식물 특허에 의해 보호 받고 있는가? (원칙 5)

예: → 34 아니요: → 2

2 “소명”이 실제 상표(trademark)인가? 또는 상표를 포함하고 있는가? (원칙 6)

아니요: → 3 예: → 정지 상표는 품종 소명의 부분으로 또는 그 자체로 고려 될 수 없다.

3 “소명”이 상용 명칭(trade designation)의 또 다른 종류인가? (조항 13)

아니요: → 4 예: → 정지 상용 명칭은 채택된 소명에 사용되는 마케팅 장치(marketing device)이며 품종 명칭의 부분으로 사용될 수 없다.

4 “소명”이 재배식물의 명명과 관련된 국제 위원회에 의해 유지되었는가? (조항 19)

아니요: → 5 예: → 37

5 “소명”이 재배식물의 명명과 관련된 국제 위원회에 의해 기각 되었는가? (조항 30.3, 31.8)

아니요: → 6 예: → 정지 기각된 소명은 분류군집합에 사용될 수 없다: 또 다른 소명을 찾으시오.

6 품종이 배정된 그룹을 제외하고“소명”이 분류군집합, 상용 명칭 안에 있는 다른 식물에 쓰였는가? (조항 30.1)

아니요: → 8 예: → 7

7 “소명”이 국제품종등록기관에 의해 받아들여질 수 있게 명명되었는가? (조항. 29.2, 29.3, 30.2)

예: → 37 아니요: → 정지 수립이 불가함으로 기각

8 출판물 내에 “소명”이 존재하는가? 또는 동일하게 복제본이 있는가? (조항 25.1, 25.2)

예: → 9 아니요: → 정지 출판이 되지 않았으므로 기각

9 “소명”이 관련된 그룹(Group)의 시점 또는 그 이후에 출판이 되었는가? (조항 18.1)

예: → 10 아니요: → 정지 수립이 불가함으로 기각. 이후 출판의 장소를 찾으시오.

10 1958년 이후, “소명”이 표시된 출판물에 일자(작어도 년도)가 표기 되었는가? (조항. 26)

예: → 11 아니요: → 정지 수립이 불가함으로 기각. 1958년 이후부터는 반드시 일자가 있어야 함. 일자가 표시된 다른 출판물을 찾으시오.

11 1958년 이후, “소명”이 라틴어 외에 적어도 부분적으로 다른 언어로 이루어져 있는가? 또는 라틴어와 현재 또 다른 언어로 구성되어있는가? (조항 21.11, 21.12)

예: → 14 아니요: → 12

12 “소명”이 종의 계급에서 라틴어 소명으로부터 파생되었는가? 또는 수립(유효출판)이 되고 계통의 *International Code of Botanical Nomenclature*로부터 다시 품종으로 분류화 하는데 채택되었는가? (조항 21.5)

예: → 13 아니요: → 정지 수립이 불가함으로 기각.

13 1958년 이전에 “소명”이 국제재배식물명명규약에 유사하게 출판이 된 라틴어로 되어있는가? (조항 21.6)

예: → 14 아니요: → 정지 수립이 불가함으로 기각

14 1995년 이후에 “소명”이 30글자 보다 많은가? (조항 21.13)

아니요: → 15 예: → 정지수립이 불가함으로 기각

15 1995년 이후에 “소명”이 같은 분류군집합에 있는 다른 소명과 비슷하거나 혼돈될 수 있는 가

능성이 있나? (조항 21.23)

아니요 → 16 예: → 정지 수립이 불가함으로 기각

16 1995년 이후에 “소명”이 속 또는 그것이 속한 교잡속의 일반명이나 라틴어를 포함하고 있는가? (조항 21.20)

아니요: → 17 예: → 정지 그 같은 명칭이 언어학적으로 허용이 된다 할지라도 수립이 불가함으로 기각 (→ 17)

17 1958년 이후에 속이나 교잡속의 라틴어의 명칭으로 구성된 “소명”이거나 이 “소명”을 사용함으로써 야기되는 혼돈될 다른 분류군집합인가? (조항 21.22)

아니요: → 18 예: → 정지 수립이 불가함으로 기각

18 1958년 이후에 “소명”이 혼돈을 야기할 수 있는 종의 일반명을 포함하고 있는가? (조항 21.22)

아니요: → 19 예: 정지 수립이 불가함으로 기각

19 2004년 이후에 “소명”이 로마숫자나 아라비아 한 글자로 구성되어있는가? 또는 한 글자 또는 마침표를 포함한 조합명인가? (조항 21.15)

아니요: → 20 예: → 정지 수립이 불가함으로 기각

20 1958년 이후에 “변종”이나 “품종”이 “소명”안에 있는가? (조항 21.16)

아니요: → 21 예: → 정지 수립이 불가함으로 기각

21 1995년 이후에 “소명”안에 단, 복수의 “cultivar”, “grex”, “group”, “hybrid”, “maintenance”, “mixture”, “selection”, “sport”, “series” and “strain” 또는 “소명” 안에 “improved” 나 “transformed”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가(어떤 언어를 막론하고)? (조항 21.17)

아니요: → 22 예: → 정지 수립이 불가함으로 기각

22 1995년 이후에 “소명”이 품종의 장점을 과대 묘사 하였는가? (조항 21.24)

아니요: → 23 예: → 정지 수립이 불가함으로 기각

23 1995년 이후에 “소명”이 인정되지 않는 마침표를 포함하고 있는가? (조항 21.18)

아니요: → 24 예: → 정지 수립이 불가함으로 기각

24 “소명”이 분수를 포함하고 있는가? (조항 21.19)

아니요: → 25 예: → 정지 수립이 불가함으로 기각

25 “소명”이 인정되니 않는 기호들을 포함하고 있는가? (조항 21.19)

아니요: → 26 예: → 정지 기호의 복사가 허용되지 않는 한 기각(만약 허용된다면, 기호를 복사하시오 그리고 → 26).

26 “소명”이 열 개 이상의 번호나 글자 또는 글자와 숫자 또는 숫자들의 네 가지 이상의 대체 집합(alternating sets)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조항 21.25)

아니요: → 27 예: → 정지 수립이 불가함으로 기각

27 1958년 이후에 “소명”의 출판을 동반한 기재나 표징이 있는가? (조항 27.1)

예: → 29 아니요: → 28

28 기재나 표징의 이전 출판의 인용이 있는가? (조항 27.1)

예: → 29 아니요: → 정지 수립이 불가함으로 기각

29 “소명”이 그것을 출판하는 사람에 의해 받아들여 졌는가? (조항 27.6)

예: → 30 아니요: → 정지 수립이 불가함으로 기각

30 “소명”이 쓰여진 품종이 출판된 때에 실제로 존재하는가? (조항 27.7)

예: → 31 아니요: → 정지 수립이 불가함으로 기각

31 “소명”가 육종가나 재배자의 기대에 반대하는가? (조항 31.4)

예: → 32 아니요: → 정지 수립이 불가함으로 기각

32 동일한 품종에 있어 동일한 저자에 의해 동시에 제출된 또 다른 “소명”인가? (조항 27.8)

아니요: → 33 예: → 정지 수립이 불가함으로 기각

33 소명으로 등록이 됨 → 35

34 법정식물식물등록기관 품종의 다른 소명으로 표시되었는가? (원칙 5)

아니요: → 37 예: → 정지 수립이 불가함으로 기각: 법적 품종 계급은 자동적으로 소명으로 등록이 됨

35 소명이 이전 규약의 원칙하에 그 이후의 소명에 의해 대체가 되었는가?

아니요: → 36 예: → 정지 채택이 불가하고 다른 소명으로 사용하시오.

36 품종에 대해서 가장 먼저 명명된 소명인가?

예: → 37 아니요: → 정지 채택이 불가하고 가장 먼저 수립된 소명을 사용 하시오.

37 소명으로 등록이 됨 → 35

2. 그룹 소명

1 “소명”이 실제적인 상표인가? 또는 상표를 포함하고 있는가? (원칙 6)

아니요: → 2 예: → 정지 상표는 품종 소명의 부분으로 또는 그 자체로 고려 될 수 없다.

2 “소명”이 상용 명칭의 또 다른 종류인가? (조항 13)

아니요: → 3 예: → 정지 상용 명칭은 동의된 소명에 사용되는 마케팅 장치이며 그룹 명칭의 부분으로 사용될 수 없다.

3 “소명”이 재배식물의 명명과 관련된 국제 위원회에 의해 유지되었는가? (조항 19)

아니요: → 4 예: → 37

4 “소명”이 재배식물의 명명과 관련된 국제 위원회에 의해 기각되었는가? (조항 30.3, 31.8)

아니요: → 5 예: → 정지 기각된 소명은 분류군집합에 사용 될 수 없다. 또 다른 소명을 찾으시오.

5 “소명”이 관련된 그룹으로 지정된 품종 외에, 상용 명칭일지라도, 분류군 집합에서 또 다른 식물을 위해 이전에 사용되었는가? (조항 30.1)

아니요: → 7 예: → 6

6 “소명”이 국제품종등록기관에 의해 받아들여질 수 있게 명명되었는가?(조항 29.2, 29.3, 30.2)

예: → 37 아니요: → 정지 수립이 불가함으로 기각

7 출판물 내에 “소명”이 존재하는가? 또는 동일하게 복제본이 있는가? (조항 25.1, 25.2)

예: → 8 아니요: → 정지 출판을 되지 않았으므로 기각

8 “소명”이 관련된 그룹의 시점 또는 그 이후에 출판을 되었는가? (조항 18.1)

예: → 9 아니요: → 정지 수립이 불가함으로 기각. 이후 출판의 일자를 찾으시오.

- 9 1958년 이후, 출판물에 적어도 년도가 표기 되었는가?(조항 26)
예: → 10 아니요: → 정지 수립이 불가함으로 기각. 1958년 이후부터는 반드시 일자가 있어야 함. 일자가 표시된 다른 출판물을 찾으시오.
- 10 “소명”이 품종 소명에 기반하고 있는가?
예: → 34 아니요: → 11
- 11 1958년 이후, “소명”이 라틴어 외에 적어도 부분적으로 다른 언어로 이루어져 있는가? 또는 라틴어와 현재 또 다른 언어로 구성되어있는가? (조항 21.11, 21.12)
예: → 14 아니요: → 12
- 12 “소명”이 종의 계급에서 라틴 소명으로부터 파생되었는가? 또는 유효출판 되고 계통의 *International Code of Botanical Nomenclature*로부터 다시 품종으로 분류화 하는데 채택 될 만 한가? (조항 21.5)
예: → 13 아니요: → 정지 수립이 불가함으로 기각.
- 13 1958년 이전, “소명”은 국제재배식물명명규약에 맞춰 출판된 라틴어 형식인가? (조항 21.6)
예: → 14 아니요: → 정지 수립이 불가함으로 기각
- 14 “소명”이 라틴어 형태 그룹 소명의 번역인가? (조항 32.2)
아니요: → 15 예: → 정지 수립이 불가함으로 기각. 그룹의 소명으로부터 성립된 라틴어는 번역이 되지 않을 것이다.
- 15 “소명”이 비라틴어 소명의 최초 번역인가? (조항 32.2)
예: → 16 아니요: → 정지 수립이 불가함으로 기각. 비라틴어 소명은 어떤 언어에서든지 오직 하나의 번역을 가질 수 있다.
- 16 1995년 이후에 “소명”이 30글자 보다 많은가? (조항 21.13)
아니요: → 17 예: → 정지 수립이 불가함으로 기각
- 17 1995년 이후에 “소명”이 같은 분류군집합에 있는 다른 소명 비슷하거나 혼돈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 (조항 21.23)
아니요 → 18 예: → 정지 수립이 불가함으로 기각
- 18 1995년, “소명”은 지정된 속 또는 교잡속의 라틴 또는 일반명을 포함하는가? (조항 21.20)

- 아니요 → 19 예: → 정지 이런 사용이 수립된 관례가 아니라면 수립이 불가함으로 기각
- 19 1958년 이후, “소명”은 이러한 사용이 혼돈을 일으키는 다른 분류군집단 또는 교잡속 또는 속의 라틴명으로 구성되어 있는가?(조항 21.22)
아니요: → 20 예: → 정지 그 같은 명칭이 언어학적으로 허용이 된다 할지라도 수립이 불가함으로 기각 (→ 17)
수립이 불가함으로 기각
- 20 1958년 이후에 “소명”이 혼돈을 야기할 수 있는 종의 일반명을 포함하고 있는가? (조항 21.22)
아니요: → 21 예: 정지 수립이 불가함으로 기각
- 21 2004년 이후, “소명”이 한 글자 또는 아라비아 숫자 또는 로마자 숫자로 구성되어 있거나 구두점과 결합하여 한 글자 또는 숫자로 구성되어 있는가? (조항 21.15)
아니요: → 22 예: → 정지수립이 불가함으로 기각
- 22 1958년 이후, “변종”이나 “품종”이란 단어는 “소명”에 나타나는가? (조항 21.16)
아니요: → 23 예: → 정지 수립이 불가함으로 기각
- 23 1995년 이후, “cultivar”, “grex”, “group”, “hybrid”, “maintenance”, “mixture”, “selection”, “sport”, “series”와 “strain” 단어의 어떤 것이든지 또는 이 단어들의 복수형, 또는 “improved” 나 “transformed”라는 단어가 “소명”에 나타나는가? (조항 21.17)
아니요: → 24 예: → 정지 수립이 불가함으로 기각
- 24 1995년 이후에 “소명”이 품종의 장점을 과대 묘사 하였는가? (조항 21.24)
아니요: → 25 예: → 정지 수립이 불가함으로 기각
- 25 1995년 이후, “소명”은 인정되지 않는 구두점을 포함하고 있는가? (조항 21.18)
아니요: → 26 예: → 정지 수립이 불가함으로 기각
- 26 “소명”이 분수를 포함하고 있는가? (조항 21.19)
아니요: → 27 예: → 정지 수립이 불가함으로 기각
- 27 “소명”이 인정되지 않는 기호들을 포함하고 있는가? (조항 21.19)

아니요: → 28 예: → 정지 수립이 불가함으로 기각(복사가 가능한 기호는 가능한데 복사 가능한 기호는 → 26).

28 1958년 이후, “소명”의 출판에 첨부한 기재나 표징이 있는가? (조항 27.1)
예: → 29 아니요: → 28

29 기재나 표징의 이전 출판의 인용이 있는가? (조항 27.1)
예: → 30 아니요: → 정지 수립이 불가함으로 기각

30 “소명”이 그것을 출판하는 사람에 의해 받아들여 졌는가? (조항 27.6)
예: → 31 아니요: → 정지 수립이 불가함으로 기각

31 “소명”이 제안된 그룹(Group)은 출판된 시점에 실제로 존재하는가? (조항 27.7)
예: → 32 아니요: → 정지 수립이 불가함으로 기각

32 “소명”이 육종가나 재배자의 기대에 반대하는가? (조항 31.4)
예: → 33 아니요: → 정지 수립이 불가함으로 기각

33 다른 언어로 번역 외에, 또 다른 “소명”은 동시에 동일한 그룹을 위해 동일 저자에 의해 제출되었나? (조항 27.8)
아니요: → 34 예: → 정지 수립이 불가함으로 기각

34 소명으로 등록이 됨 → 35

35 소명이 이전 규약의 원칙하에 그 이후의 소명에 의해 대체가 되었는가?
아니요: → 36 예: → 정지 채택이 불가함 대체할 소명을 사용할 것

36 소명에 쓰인 언어로 그룹을 위한 최초로 명명된 소명인가?
예: → 37 아니요: → 정지 채택이 불가함 최초의 확정된 소명을 사용할 것

37 소명으로 등록이 됨

3. 계품명 소명

(“소명”은 별도 표시가 없으면 계품이란 단어를 배제하였다.)

1 “소명”이 실제적인 상표인가? 또는 상표를 포함하고 있는가? (원칙 6)
아니요: → 2 예: → 정지 상표는 계품 소명의 부분으로 또는 그 자체로 고려 될 수 없다.

2 “소명”이 상용 명칭의 또 다른 종류인가? (조항 13)
아니요: → 3 예: → 정지 상용 명칭은 동의된 소명에 사용되는 마케팅 장치이며 계품명의 부분으로 사용될 수 없다.

3 “소명”이 재배식물의 명명과 관련된 국제 위원회에 의해 유지되었는가? (조항 19)
아니요: → 4 예: → 37

4 “소명”은 국제재배식물명명위원회에 의해 기각된 적이 있는가? (조항 30.3, 31.8)
아니요: → 5 예: → 정지 기각된 소명은 분류군집합에 사용될 수 없다: 또 다른 소명을 찾아보시오.

5 2008년 이후에 “소명”이 동일한 후손의 잡종에 대한 종소명으로써 사용 되었는가? (조항 23.5)
아니요: → 6 예: → 정지 수립이 불가함으로 기각

6 “소명”이 품종이 분류군집합으로 다른 식물에 이미 사용 되었는가? (상용 명칭이라도) (조항 30.1)
아니요: → 8 예: → 7

7 “소명”이 국제품종등록기관에 의해 채택될 수 있게 명명되었는가? (조항 29.2, 29.3, 30.2)
예: → 36 아니요: → 정지 수립이 불가함으로 기각

8 출판물 내에 “소명”이 존재하는가? 또는 동일하게 복제본이 있는가? (조항 25.1, 25.2)
예: → 9 아니요: → 정지 출판이 되지 않았으므로 기각

9 “소명”이 관련된 그룹의 시점 또는 그 이후에 출판이 되었는가? (조항 18.1)
예: → 10 아니요: → 정지 수립이 불가함으로 기각. 이후 출판의 장소를 찾으시오.

10 1958년 이후에 적어도 년도가 적힌 출판물이 있는가? (조항 26)
예: → 11 아니요: → 정지 수립이 불가함으로 기각. 1958년 이후부터는 반드시 일자가 있어

야 함. 일자가 표시된 다른 출판물을 찾으시오.

11 1958년 이후, “소명”이 라틴어 외에 적어도 부분적으로 다른 언어로 이루어져 있는가? 또는 라틴어와 현재 또 다른 언어로 구성되어있는가? (조항 21.11, 21.12)

예: → 14 아니요: → 12

12 “소명”이 종의 계급에서 라틴 소명으로부터 파생되었는가? 또는 유효출판 되고 계통의 *International Code of Botanical Nomenclature*로부터 다시 품종으로 분류화 하는데 확정되었는가? (조항 21.5)

예: → 13 아니요: → 정지 수립이 불가함으로 기각.

13 1958년 이전에 “소명”이 국제재배식물명명규약에 유사하게 출판이 된 라틴어로 되어 있는가? (조항 21.6)

예: → 14 아니요: → 정지 수립이 불가함으로 기각

14 1995년 이후에 “소명”이 30글자 보다 많은가? (조항 21.13)

아니요: → 15 예: → 정지 수립이 불가함으로 기각

15 1995년 이후에 “소명”이 같은 분류군집합에 있는 다른 소명과 비슷하거나 혼돈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나? (조항 21.23)

아니요 → 16 예: → 정지 수립이 불가함으로 기각

16 1995년 이후에 “소명”이 같은 분류군집합에 있는 다른 소명 비슷하거나 혼돈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나? (조항 21.23)

아니요: → 17 예: → 정지 그 같은 명칭이 언어학적으로 허용이 된다 할지라도 수립이 불가함으로 기각 (→ 17)

17 1958년 이후에 속이나 교잡속의 라틴어의 명칭으로 구성된 “소명”이거나 이 “소명”을 사용함으로 야기되는 혼돈될 다른 분류군집합인가(조항 21.22)

아니요: → 18 예: → 정지 수립이 불가함으로 기각

18 1958년 이후에 “소명”이 혼돈을 야기할 수 있는 종의 일반명을 포함하고 있는가? (조항 21.22)

아니요: → 19 예: 정지 수립이 불가함으로 기각

19 2004년 이후에 “소명”이 로마숫자나 아라비아 글자로 구성 되어있는가? 또는 한 글자 또는 마침표를 포함한 조합명인가? (조항 21.15)

아니요: → 20 예: → 정지 수립이 불가함으로 기각

20 1958년 이후에 “변종”이나 “품종”이 “소명”안에 있는가? (조항 21.16)

아니요: → 21 예: → 정지 수립이 불가함으로 기각

21 1995년 이후에 “소명”안에 단, 복수의 “cultivar”, “grex”, “group”, “hybrid”, “maintenance”, “mixture”, “selection”, “sport”, “series” and “strain” 또는 “소명” 안에 “improved” 나 “transformed”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가? (어떤 언어를 막론하고) (조항 21.17)

아니요: → 22 예: → 정지 수립이 불가함으로 기각

22 1995년 이후에 “소명”이 품종의 장점을 과대 묘사 하였는가? (조항 21.24)

아니요: → 23 예: → 정지 수립이 불가함으로 기각

23 1995년 이후에 “소명”이 인정되지 않는 마침표를 포함하고 있는가? (조항 21.18)

아니요: → 24 예: → 정지 수립이 불가함으로 기각

24 “소명”이 분수를 포함하고 있는가? (조항 21.19)

니오: → 25 예: → 정지 수립이 불가함으로 기각

25 “소명”에 인정되지 않는 기호들을 포함하고 있는가? (조항 21.19)

아니요: → 26 예: → 정지 수립이 불가함으로 기각(복사가 가능한 기호는 가능한데 복사 가능한 기호는 → 26).

26 “소명”의 출판에서 계품명의 양친의 명칭을 언급하였는가? (조항 27.3)

예: → 29 아니요: → 27

27 양친의 계품명이 출판에서 빠져있는가? (조항 27.3)

아니요: → 28 예: → 정지 수립이 불가함으로 기각

28 한 부모의 계품명 만이 출판물에 있고 다른 부모는 적어도 속 또는 속간잡종으로 언급이 됐는가? (조항 27.4)

예: → 29 아니요: → 정지 수립이 불가함으로 기각

29 “소명”이 그것을 출판하는 사람에 의해 받아들여 졌는가? (조항 27.6)

예: → 30 아니요: → 정지 수립이 불가함으로 기각

30 “소명”이 쓰여진 품종이 출판된 때에 실제로 존재하는가? (조항 27.7)

예: → 31 아니요: → 정지 수립이 불가함으로 기각

31 “소명”이 육종가나 재배자의 기대에 반대하는가? (조항 31.4)

예: → 32 아니요: → 정지 수립이 불가함으로 기각

32 동일한 품종에 있어 동일한 저자에 의해 제출된 중복된 “소명”인가? (조항 27.8)

아니요: → 33 예: → 정지 수립이 불가함으로 기각

33 소명으로 등록이 됨 → 34

34 소명이 이전 규약의 원칙하에 그 이후의 소명에 의해 대체가 되었는가?

아니요: → 35 예: → 정지 채택이 불가함 대체할 소명을 사용할 것

35 품종에 대해서 가장 먼저 명명된 소명인가?

예: → 36 아니요: → 정지 채택이 불가함 최초의 수립된 소명을 사용할 것

36 소명으로 등록이 됨

4. 접목키메라

1 접목키메라의 품종 소명을 위한 것, → 품종 소명을 위한 여과장치의 1로 이동
속간의 접목키메라의 유전적 명칭을 위한 것 → 2

2 “명칭”이 출판되거나 또는 동일하게 사본에 출판되었는가? (조항 25)

예: → 4 아니요: → 정지 수립이 불가함으로 기각

3 “명칭”이 1753년 5월 1일 이후에 출판되었는가? (조항 18.3)

예: → 4 아니요: → 정지 수립이 불가함으로 기각

4 1958년 이후에 적어도 년도가 기재된 출판물이 있는가? (조항 26)

예: → 5 아니요: → 정지 수립이 불가함으로 기각

5 속 간의 접목키메라의 속명이 출판물에 기술이 되었는가? (조항 27.3)

예: → 6 아니요: → 정지 수립이 불가함으로 기각

6 “명칭”이 합법화된 명칭인가? (조항 27.3)

예: → 7 아니요: → 정지 수립이 불가함으로 기각. 합법화된 명칭을 사용할 것

7 “명칭”이 한 요소의 명칭의 부분과 다른 요소의 전체 명칭에 모음으로 연결되었는가? (조항 24.3)

예: → 8 아니요: → 정지 수립이 불가함으로 기각

8 “명칭”이 국제식물명명규약에 속명 또는 잡종으로써 유효출판이 된 것과 동일한가? (조항 24.3)

아니요: → 9 예: → 정지 수립이 불가함으로 기각

9 접목키메라의 명칭으로 먼저 출판된 것이 있는가?

아니요: → 10 예: → 정지 수립이 불가함으로 기각

10 접목키메라의 속간 명칭으로 받아들여짐.

부록 IX

새로운 명명을 위한 안내

이 명명규약의 여러 원칙들은 이전에 명명을 하는데 있어 과거 발생했던 문제들을 정리하여 다루고 있다. 아래에 있는 글은 새로운 품종 소명을 만드는데 있어 빠른 안내를 위해 작성된 것이며 새로운 품종의 명칭을 만들기 원하는 모든 사람이 꼭 읽어야 할 것이다.

새로운 품종을 가지고 있는가?

당신은 새로운 품종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의 명칭을 붙이기 원할 것이다. 당신이 처음으로 확인 할 것은 정말 그 품종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이다. 하나의 개체는 품종이 아니다: 품종은 다른 집단과 구분이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각 식물의 그룹이며 전체적인 형태가 균일하며 그 성질이 유지가 되는 집단이다. 균일하고 안정적인 얼마의 개체를 보유하기 전까지 품종의 명칭을 짓지 말라. 당신의 품종이 정말 명칭을 붙이는데 가치가 있음을 스스로 확신 하라: 만일 다른 품종과 비교하여 개선되거나 두드러진 차이가 있지 않으면 당신의 품종을 명명하는 과정에 초점이 없어질 것이다.

복제품(유전적으로 엄정한 관리가 요구되는—F1 hybrids 같은 종자 기반의 품종)으로부터 나오는 품종 범위의 종류가 서로 다르다. 이 명명규약의 조항 2에서는 서로 다른 품종의 종류들을 정의하고 있다.

만일 그것이 새로운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현존하는 품종과 비교를 통해 가능하다. 당신의 새로운 품종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구분이 가능해야 한다.

당신이 정말 신품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한다면 당신이 원하는 품종명을 부여하기를 결정하라. 품종명은 전체 품종명의 마지막에 붙으며 명칭을 특별하게 만들어준다. 품종명은 항상 작은따옴표 안에 표시하여 명칭에서 두드러지게 한다.

기억할 것은 품종명은 모두에게 사용가능하다는 것이다. 당신이 새로운 품종에 대해 재산적인 권리를 갖기 원한다 해도 품종명 그자체로 그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아니다.

어떻게 새로운 품종의 명칭을 만들까?

품종의 전체명칭은 그 품종이 포함되어 있는 식물학적 속명에서 항상 시작된다. 선택적으로 종명 또는 잡종명은 품종 명칭에 부가적인 요소로 포함시킬 수 있지만 필요조건은 아니다: 포함을 시키는 것은 당신의 품종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기는 어렵다.

최근에, 새로운 품종 소명은 대개 현대어로 되어있으며 분류군집합이라고 불리는 것(보통은 속)에서 유일해야 한다. 어떤 그룹들은 특별한 분류군집합을 가지고 있으며 이 규약의 부록 V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우면서 최초의 품종명을 만들기란 쉽지 않다. 특별히 역사적으로 수 백개, 심지어 수 천개의 품종을 가지고 있는 그룹에서는 더욱 그렇다. 다행히도 이러한 많은 그룹들이 이전에 사용된 품종명의 등록 및 체크 리스트를 출판하는 국제품종등록기구(ICRAs)에 들어가 있다. 당신이 등록할 품종의 속이 ICRA에 망라되어 있는지 이 명명규약의 부록 I를 확인해 보라. 그리고 나서 ICRA의 출판사와 상담할 것을 권한다. 각각의 ICRA는 당신의 소명이 이전에 사용되었는지 그래서 그 소명을 쓸 수 있는지 없는지를 조언해 줄 수 있는 등록 담당자가 있다.

1995년 규약의 부록 XI에는 과거에 사용된 소명의 목록이 있다. 원예와 과학을 다루는 좋은 도서관의 경우, 이전 출판을 확인하도록 이들 출판물의 사본을 가지고 있을 것이며 당신은 인터넷을 통해 유용한 리스트들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품종명의 구성에는 약간의 고려할 사항들이 있다. 이상적인 품종명은 이 품종이 보급될 수 있는 다양한 나라에서 쓰고 발음하는데 쉬운 것이다. 품종명을 만드는 원칙들은 당신이 원하는 어떤 언어를 쓰든 허용이 된다. 그러나 분류군집합내에 존재하는 품종명과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라면 허가되지 않는다. 이 명명규약은 제출된 품종명이 왜 허가가 되지 않았는지 이유를 다룬다. 허가가 되지 않은 품종명은 “기각”이라고 한다.

아래는 당신의 품종명을 선택할 때 해야 할 체크 리스트이다:

- 1 당신의 제출할 품종명이 분류군집합에서 유일해야 한다.
- 2 당신의 품종명이 다른 소명과 쓰고 발음하는데 혼동이 되지 않는지 확인한다.
- 3 당신의 품종명이 품종의 장점을 과대 묘사하고 있지는 않도록 한다(예—‘Best Ever’, ‘The Greatest’ and ‘Tastiest of All’ 등과 같은 것은 쓰지 않는다).

4 당신의 품종명이 빈칸과 작은 따옴표를 제외하고 30글자를 넘지 않게 한다.

5 라틴어를 쓰지 않는다.

6 다음의 금지된 단어 또는 다른 언어에서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쓰지 않는다: “hybrid”, “cultivar”, “grex”, “group”, “form”, “maintenance”, “mixture”, “selection”, “sport”, “strain”, “series”, “variety” (또 다른 언어에서 이러한 의미를 가진 복수 형태도) 또한 “improved”와 “transformed”

7 분수와 심벌 문자를 쓰지 않는다.

8 하나의 글자, 숫자 또는 마침표와 같이 쓰인 하나의 글자나 숫자를 쓰지 않는다.

9 어퍼스트로피, 콤마, 하이픈, 폴스탑을 제외하고는 마침표를 사용하지 않는다. 최대 두 개의 느낌표는 사용이 가능하지만 이들을 붙여 쓸 수는 없다.

10 당신의 품종명이 라틴어, 일반명, 지방명(vernacular name)를 포함하고 있지 않게 한다.

11 당신의 품종명이 만일 혼동을 줄 수 있는 것이라면 속명, 일반명, 지방명을 쓰지 않도록 한다.

나의 새로운 명칭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당신의 품종명이 채택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여겨진다면 적절한 ICRA에 그 명칭을 등록하라. 이것은 양식을 채우는 시간과 또 문서를 보내는 것 이상의 비용이 약간 들겠지만 이것을 통해 그 품종명은 국제적으로 영구 등록이 되도록 확실케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품종명은 완전하게 확정되기 위해서는 출판이 되어야 한다. 당신이 만일 육묘상이라면 당신의 육묘 목록에 연락 하여 스스로 출판을 하거나 또는 ICRA와 함께 품종명을 등록하였다면 적절할 때에 ICRA에서 출판을 해 줄 것이다. 그러나 ICRA는 단기간에 당신의 품종명을 출판할 의무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당신이 먼저 출판하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가 완전히 다른 식물에 당신의 품종명을 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만일 누군가(다른 나라 사람이라도)가 같은 속의 다른 식물에 당신의 품종명을 먼저 출판했다면 당신은 당신의 식물에 또 다른 품종명을 사용해야 한다.

당신의 새로운 품종명은 반드시 인쇄가 되어야 하며 공립 또는 적어도 도서관을 보유하고 있는 식물학, 농학, 원예, 산림 기관에 배포하기 위한 동일한 복사본을 만들어야 한다. 웹사이트나 CD같은 전자 출판은 인정되지 않는다.

출판은 반드시 일자가 표기 되어야 한다. 종묘회사 목록에 있는 새로운 품종명은 목록에 일자가 표기가 되어있지 않다면(적어도 년도) 출판이 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같은 출판물에 하나의 품종에 대한 품종명을 하나 이상 출판하지 않도록 한다: 그렇지 않다면 어떤 것도 그 출판물에 있는 품종명은 출판이 된 것으로 인정 되지 않는다. 또한 당신은 당신의 품종명에 대해서 그 이후에 나오는 출판물에 당신의 품종명을 대체할 것을 찾아야 한다.

당신은 새로운 품종명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또는 다른 사람에 의해 육성된 품종에 대해서 출판하거나 등록을 진행 시킬 수 있다. 당신이 제출할 품종명에 대하여 그 품종의 등록을 대행하는 것이나 품종의 정확한 철자에 대해서도 개발자에게 동의를 구하는 것을 확인하라;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품종명은 기각이 될 것이다.

새로운 품종명을 출판할 때, 품종에 대한 묘사도 포함을 시켜야 한다. 그 묘사는 길고 또 정확 할 수록 좋은 데 적어도 그 품종의 명확한 특성에 대해서는 기술해야 한다. 가능하다면 그 품종이 기존의 품종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기술하면 좋다. 강제적은 아니지만 출판물에 허용이 된다면 새로운 품종에 대한 그림 정보가 추가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새로운 품종에 대하여 “새로운 품종 명칭”과 같은 말을 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당신이 그것에 명칭을 새롭게 부여했다는 것을 인지시키도록 하라.

또 다른 무엇을 해야 하나?

당신이 살고 있는 나라의 ICRA와 주요한 원예 전문 도서관에 당신의 출판물의 사본을 보내라. 또 여건이 된다면 다른 나라의 도서관들에게도 보내라.

가능하다면 당신의 품종의 표본관 시료(명명기준)를 명명기준에 관련된 업무를 하는 가장 가까운 표본관에 제공을 하라. 그 목록은 부록 III에 있다. 이것은 미래에 품종과 관련된 분쟁의 소지가 있을 때 당신의 품종을 동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어떤 다른 사람들이 개발했다고 생각하는(당신의 품종과 동일한)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한 분쟁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명명기준의 지정과 그것의 위치도 반드시 출판이 되어야 하며 되도록 그 명칭이 수립된 동일한 장소로 명시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그 명칭이 모든 사람에게 사용되도록 하며 당신의 식물에 또 다른 상용 명칭들(trade designations, selling name)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라. 명칭을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당신의 식물에 명백하게 라벨을 붙이는 것이다. 그리고 항상 품종 명칭에 작은따옴표를 붙이게 하여 “당신의” 품종임을 이해시키도록 하라.

부록 X

상용 명칭(TRADE DESIGNATIONS)

원칙 6: 시장에 쓰일 용도로 제안된 상용 명칭의 실행이 수립된 식물의 분류군 명칭을 대체하는 것에 대해 이 명명규약에서는 지원하지 않는다: 그 같은 지정은 정식 명칭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조항13.1 상용 명칭은 이 명명규약에 규제되는 명칭이 아니다. 단지 정식 명칭을 대신하여 품종, 그룹, 계품의 마케팅을 위한 용도이다.

조항13.2 상용 명칭은 이명과 혼동되지 않는다. 이명에 대한 이 규약의 목적으로 위해서 이명은 정식 명칭이 아닌 수립된 명칭(established name)이다.

조항 13. 주석 1 국가적으로 중요한 규명된 품종명(최초의 명칭은 아닌)은 상용 명칭으로써 성립 사용이 된다.

조항 17.1 상용 명칭은 따옴표 안에 쓸 수가 없다.

조항 17.2 만일 인용이 되었다면, 상용 명칭들은 반드시 그들의 정식 명칭을 항상 동반해야 한다.

조항 17.3 상용 명칭들은 인쇄상에서 품종, 그룹, 계품명간에 구별 되어야한다.

조항 32. 주석 1 Notwithstanding 조항32.1 마케팅의 이유로 품종 소명을 다른 언어로 번역 하였을 때 번역된 소명이 상용 명칭으로 여겨진다.

위의 목록 외에, 이 규약은 상용 명칭들의 형성과 사용을 공식적으로 조절하지 않는다. 그러나 상용 명칭들 이 식물 명칭과 관계하여 광범위하게 사용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라. 아래의 주석은 International Cultivar Registration Authorities (ICRAs)와 그들이 다뤄지는지를 이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한 안내의 내용이다:

(a) 상용 명칭을 인쇄상으로 정식 명칭과 구별하기 위해서 상용 명칭은 대문자로 써야할 것이다. 예를 들면 *Dianthus* FANTASIA는 정식 명칭인 *Dianthus* 'Londaison'품종의 상용 명칭이다. 또 다른 인쇄적인 도구로써 품종, 그룹, 계품명을 지칭하는 것과 혼동이 되는 요소를 피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작은 따옴표 또는 큰 따옴표를 쓰는 것을 피한다.

(b) 상용 명칭을 정식 명칭과 함께 인용하고자 할 때, 정식 명칭을 먼저 목록에 올린다(경우에 따라서 따옴표를 사용함). 그것은 독자로 하여금 상용 명칭이 무엇인지 인지를 하는데 도움을 준다. *Dianthus* 'Londaison' FANTASIA나 *Dianthus* FANTASIA 'Londaison'같이 두 경우가 다 사용 가능하다. 괄호의 사용이 또한 사용 가능하다. 예를 들면 *Dianthus* 'Londaison' (FANTASIA) 또는 *Dianthus* FANTASIA (Londaison)와 같다.

(c) ICRA는 상용 명칭이 된 기록을 찾아야 하며 동일한 품종, 그룹, 계품명에 대하여 동일한 품종명을 사용하여 혼란이 일어나는 것을 피해야 한다. 그러나 상용 명칭이 공식적으로 명칭으로 여겨지지 않는 다음부터는 ICRA에 의해 등록이 허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d) 어떤 경우에 하나 이상의 상용 명칭이 하나의 품종, 그룹, 계품명과 연관되어 사용 될 수 있다(참고 조항13, 예 1). 이같은 경우의 모든 상용 명칭들은 적절한 ICRA에 의해 등록할 것을 권장한다.

(e) 새로운 상용 명칭에 대해 값을 지불하는 어떤 사람이든 각각의 식물의 정식 명칭과 관련하여 적절하게 ICRA에 보고를 할 것을 권장한다.

(f) ICRA에서 품종, 계품 품종명으로 번역될 때 이들은 상용 명칭으로써 여겨지고 그렇게 기록되어야 한다. 그러나 ICRA는 모든 품종명 대해 번역을 제공하기 위해 찾지 않으며, 단지 예전에 사용된 것을 알리는 기록을 한다. 어떤 그룹 품종명의 번역은 허용된다(참고 조항32.2); 이들은 상용 명칭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g) 어떤 경우에 동일한 식물에 대해 이명이나 상용 명칭으로써 두 가지 단어 또는 동일한 단어의 사용에 대해 기록해야 할 필요가 있다. 법적 권리(예를 들면 식물육종가권리)로 명칭이 우선권을 나타낼 때이다. 나중에는 그 식물의 정식 명칭이 되어야하며 먼것번의 명칭은 이명이 된다. 그러나 이명이 마케팅 도구로써 사용된다면 그것은 상용 명칭으로 여겨져야 한다. 이러한 경우는 먼저 규명된 명칭이 ICRA에 등록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또 다른 예는 조항 13.2가 있다.

(h) 어떤 상용 명칭은 등록된 상표를 포함하고 있다. 등록된 상표는 공식적으로 법정상표기관에 받아들여진 것이며 보통 국제 상표인 ®과 구별이 된다. 이러한 심벌의 사용이 강제적인 것은 아

니다. 등록된 상표는 개인 또는 어떤 회사의 재산이며 그러므로 어떤 개인에 의해서 자유롭게 사용될 수 없다; 결론적으로 명칭의 일부가 아니다.

(i) 대부분의 상표들은 제한된 상품의 계급을 넘어 사용 가능하다. 그래서 사용을 위해 등록된 상표(machine과 machine의 도구가 포함된)는 식물 명칭의 부분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조항 8. 주석 2 품종의 상표를 사용하는 사람은 정식 명칭이 또한 주어지지 않는다면 생겨날 상표의 위험요소에 대해 인지해야 한다. 상표는 정식 명칭과 항상 수반해야한다.

(j)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상표 보유자(holder)의 책임이 있는 한 ICRA는 이 규약에 조정이 되는 명칭이 보이는 것이 무엇인지 항상 상용 명칭들로 처리해야 한다. ICRA는 상표보호에 대한 정보의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으며 특별한 상표들의 사용에 대한 문의는 적절한 상표기관에 문의해야 한다.

예외가 되는 경우는 법정등록기관(식물특허 또는 식물육종가권리를 포함한)가 등록된 상표를 포함하고나 그 자체에 대하여 분류군집합 사용함에 있어 책임이 있는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는 권리의 책임 안에 사용된 분류군집합은 식물의 정식 명칭으로 남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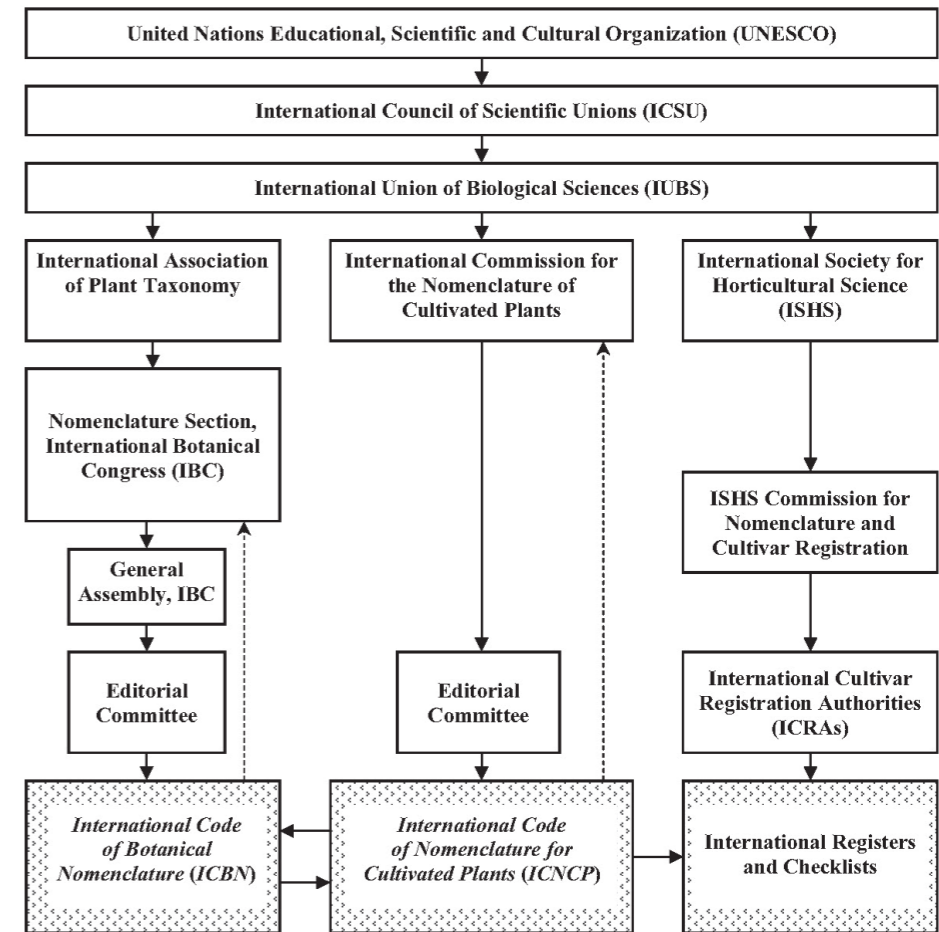
(k) 어떤 경우에 상표는 주장 될 수 있으나 국가법적상표 기관에 등록되지는 않는다. 이들은 ™라는 심벌로 나타낸다. 많은 나라에서 이러한 종류의 심벌은 상표로써 강제성이 있는 보호를 거의 주장할 수 가 없다. 그러나 조연을 구할 필요가 있기도 한다. 미국에서는 ™마크가 지역에서 어느 정도 보호를 받는데 연관이 되기도 한다.

(l) 드물지만 상용 명칭으로만 되어있고 정식 명칭이 없는 식물에 대해 ICRA이 기록을 하는 것이 필요할지 모른다. 이것은 시장에 사용되는 식물에 있어 등록된 상표와 품종 명칭에 대한 또 다른 대안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부록 XI

명명 과정에 대한 업무흐름도

이 흐름도는 국제 식물 명명에 관여하는 여러 국제기구들간의 관계를 나타내며, 결과적으로 정확한 명명을 제공해 줄 수 있다.



용어 해설(Glossary)

본 목록은 이번 *Code*(규약)의 용어들에 대한 명료한 의미들을 규정하고, 재배식물 명명법에 관한 논문의 다른 용어들에 대한 참고문헌도 제공하고 있다.

명명법에 일반적으로 쓰이는 용어들에 대한 총괄적인 목록을 보고 싶은 경우에 다음 문헌을 참고하도록 한다. Hawksworth, D.L. (ed.), *A draft glossary of terms used in bionomenclature*, IUBS Monograph No 9, published by the International Union of Biological Sciences, Paris, 1994.

abbreviation 약어

단어에서 특정 글자가 생략되는 것. acronym, contraction, initialism 참고

abstracting journal 초록지

논문의 요약이나 개요 등을 발행하는 것

accent 악센트

글자에 붙는 부호이며 글자를 어떻게 발음해야하는지 알려줌. 어떤 언어의 경우 단어의 강세(강조법)을 나타내어 주기도 함

accepted name 채택명

특정 상황(specific circumstances)을 제외하고 채택이 된 재배 품종(Cultivar), 그룹(Group), 계품(Grex), 속간 접목키메라(intergeneric graft-chimera)의 초기 명칭(ICNCP 조항 11.1)

acronym 약성어

구절을 발음할 수 있는 약어이며 여러 단어의 첫 글자로 구성됨

addition sign(+) 추가부호(+)

명명법에서 접목키메라를 표시하는 부호

admissible name (법적) 허용 명칭

미발표된 명칭으로 제정되는 것이 허용된 유형임

agamospermy 무수정결실, 무정생식

식물이 수정 없이 발아가 가능한 종자를 만드는 과정이며 자손들은 부모와 유전적으로 균일하고 동일함

agriculture 농업

식량, 사료, 공예작물 등의 비가내(non-domestic, 非家内) 재배. forestry 참고

allopolyploid 이질배수체

다른 종으로부터 유래된 염색체 조(組)로 이루어진 배수체

alternative terminology 대체용어

동일한 개념을 위한 다른 용어의 사용

apomict 무수정체

무수정생식(apomixis)에 의해 항상 번식하는 식물체

apomixis 무수정생식

식물이 무성생식으로 번식하는 과정임. 영양번식 또는 무수정으로 생육이 가능한 자손을 생산함. 대개 유전적으로 균일함

appropriate epithet 특정(고유) 품종명

식물이 그렇게 불리게 된 양상에 대한 특징을 말함. 예를 들어서 특성, 기원, 역사 등

arbitrary epithet 임의적 품종명

어원이나 공식적 기원을 고려하지 않고 이름이 지어졌으며 그렇게 불려진 식물 이름과 관련이 없음

Article 조항

Code(규약)의 관련규칙과 권고사항에 대한 수집

artificial classification 인위적분류

오로지 사용의 용이성을 위해 제안 되었으며 본질적인 관련성은 없음

artificial selection 인위적선택

특정 형질의 선발을 조장하기 위해 사람의 행동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종의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인 조작과정

asexual propagation 무성번식

무수정으로 이루어진 번식. 예를 들어서 무정생식, 삽목, 포기나누기, 경정배양, 미소대량증식 등이 있음

assignee 양수인

개인 또는 조직을 대신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임명된 사람

authentic specimen 인증된 표본

명칭이 지정된 분류군의 대표로서 명칭의 재배자, 육종가, 발표자, 저자 등에 의해 확인된 것

author 명명자

이름을 만들거나 출판을 한 사람

author abbreviation 명명자 약자

명명자 인용에 쓰이는 명명자 이름의 축약형

author citation 명명자 인용

학명의 설절 또는 출판에 책임이 있는 명명자를 명기하는 것

autograph 자필

손으로 쓰여진 문서이며 기계로 재생되지 않음

autopolyploid 동질배수체

단일종이나 개체로부터 파생된 염색체 조(組)로 이루어진 배수체

back-cross 역교배

교배종을 다시 모친(母親)이나 부친(父親)과 교배하는 것

basionym 기본명

새로운 재조합에 의해서 출판된 속(屬) 또는 속보다 하위 분류군의 소명에 대한 원래의 이름 (*ICNCP* 조항 33.4 비교하기)

bigeneric hybrid 두 속간의 교배종

다른 속으로 분류된 개체간의 교배로 얻어진 개체

binary combination 2개 이름 조합

종(種)의 학명이 두 단어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첫 번째 단어는 종이 속한 속명(屬名)이며, 두 번째 단어는 같은 속의 종들을 구별하기 위해 붙여진 소명임(*ICNCP* 조항 23.1 비교하기)

binary name 이원의 명칭—binary combination 참고

binomen 이명식 명칭—binary combination 참고

binomial 이명법—binary combination 참고

blend 혼성어

서로 다른 단어들의 일부분이 결합되어 만들어진 신규단어

bonsai 분재

나무를 작게 왜성화시켜서 화분에 가꾸는 재배기법

Botanical Code 식물학 규정—International Code of Botanical Nomenclature 참고

botanical Latin 식물학 라틴어—Latin 참고

botanical name 식물학적 이름—scientific name 참고

brackets 괄호

쌍으로 이루어진 부호로, 둥근 괄호 (...) (북미에서 괄호로 불림), 꺾쇠 괄호 [...], 중괄호 {...} 등이 있음. 단어나 숫자를 문맥상 분리시키기 위해 괄호 안에 넣음

breeder 육종가

선발, 교배 등과 같은 방법으로 새롭거나 향상된 식물군을 개발하는 사람이나 조직

budwood 아접용 접수

접수의 싹이며 아접(芽接)시 눈이 이용됨

category 분류계급

분류체계의 구분임. 이 규약에서는 재배품종, 그룹, 계품 등임

character 형질

관찰되거나 정량화된 특성, 속성, 특징, 특질 등이며(형태학, 생리학, 해부학, 세포학, 생화학 등과 관련됨), 이들은 서로 다른 분류군들을 구별하는데 도움이 됨. 분류군의 기원(태생)에 관한 것은 형질로 간주되지 않음

characteristic 특성

구별되는 형질이 갖는 특성 (명사)

checklist 목록

서지나 분류자료와 함께 문헌에 발표되거나 소개된 명칭들의 발행 목록. 명칭들은 명명법 상황과는 관계없이 규정된 분류군이나 지리학적 지역을 위한 것

chimaera 키메라

친밀한 군집의 유전적으로 다른 두 개 이상의 조직으로 구성된 개체. (ICNCP 조항 2.10)

circumscribe 범위를 정함

범위를 만들

circumscription 범위

분류군의 특징적인 경계에 대한 진술

classification 분류

항목들의 체계적 분류; 항목들은 체계 내에서 분류됨

clone 클론(복제품)

본래 식물로부터 무성번식에 의해 파생된 두 개 이상의 개체로써 유전적으로 동일하게 유지됨 (ICNCP 조항 2.5)

Code 규약

명명법의 국제적 규정 중 하나. 보통은 가장 최근 것을 적용함

code-name 코드명

연속된 글자나 숫자의 차례로 이루어지며 분명한 의미가 없는 소명

co-extension 동일한 범위(연장)

하나의 명칭에 의해 대표되는 모든 식물이 또 다른 명칭에 의해 대표되는 상황

collective name 총칭

특정 교배종의 모든 자손들을 포함하는 하나의 명칭

colour mixture 혼색

포장에서 자라고 특정한 방식(particular formula)으로 섞이게 하거나 또는 섞이게 하지 않은 방임수분 계통으로 부터 얻은 종자

combination 조합명

속(屬) 이하의 하위등급 분류군의 명칭이며, 속명과 소명으로 이루어짐. 종내 등급에서는 한 개 이상의 소명이 붙을 수 있음(ICNCP 조항 6.7 비교하기)

Commission for Nomenclature and Cultivar Registration 명명·품종등록 위원회

국제원예학회(ISHS)의 기구. 식물 명칭과 관련된 문제들을 다루고 재배식물의 명칭 등록을 장려, 권장함

commercial synonym 상업적 이명- trade designation(상용 명칭) 참고

common name 일반명, 보통명

학명 대신 일반적으로 통용되거나 특정 지역에서 쓰이는 명칭

competing name 경쟁 명칭

분류군의 정명이나 통용된 명칭을 결정하기 위해 고려해야할 명칭

condensed formula 축약적 잡종명

부친과 모친의 명칭을 포함하는 부분으로 구성된 속간잡종이나 접목키메라 속의 명칭(ICNCP 조항 H.6.2 비교하기)

congeneric 같은 속의

같은 속에 속함

connecting vowel 연결모음

서로 다른 단어요소를 연결하는 것

conserved name 보전명

Code의 규정과 맞지 않지만 결정권이 있는 기구의 판정에 의해 통용된 명칭으로 승인된 명칭 (ICNCP 조항 12.1, Appendix VI & ICNCP 조항 14.4 비교하기)

conspecific 동종

같은 종에 속함

contraction 축약형

단어의 중간에 한 개 이상의 글자를 제거하여 짧게 축소한 축약형

correct name 정명

ICNCP 조항 6.6에 의해 과 계급과 특정한 범위, 상황, 등급 등을 갖춘 하위 계급의 분류군에 적합한 학명으로 채택됨

covariant 공변

가지치기나 정지 등의 규칙적인 실행에 의해 식물의 특성이 재배동안에 독자적으로 유지됨 (ICNCP 조항 2.23)

cross 교잡

식물을 다른 식물과 교잡시킴(동사). 교배의 결과물(명사)

cryptic variety 애매한 품종

재배식물로서 기존의 품종과 분류학적으로 쉽게 구분할 수 있는 특성들을 가지고 있지 않은 품종

cultigen 재배종—cultivated plant 참고

cultivar 재배품종

식물군으로 특정한 특성이나 특성들의 조합 때문에 선발됨. 특성들은 구별성, 균일성, 안정성을 지니며 적절한 방법으로 번식될 경우에 유지가 됨(ICNCP 조항 2.3)

cultivar class – denomination class 참고

cultivar epithet 재배품종 소명

명칭의 정의부분으로 품종을 나타냄. 일반적으로 속명, 이원(二元)의 이명식 분류명, 일반명 등을 동등하게 따름

cultivariant—topophysic plant 참고

cultivated plant 재배식물

계획적이거나 우연한 교배에 의해 발생된 식물을 재배하는 동안에 의도적으로 선발한 것. 기존의

모주나 야생종 집단의 변종으로부터 선발하며, 지속적인 번식에 의해 식별 가능한 독립체로서 독자적으로 특성이 유지됨. 때로는 재배종이라고 함

Cultivated Plant Code 재배식물 규정—International Code of Nomenclature for Cultivated Plants 참고

culton

재배식물의 체계적 집단으로 한 개 이상의 사용자 기준에 근거를 둬. 분류군과 동일한 단어이지만 일반적인 분류군과 다른 분류원리로 사용됨. culta의 명칭은 오로지 ICNCP에 의해 결정됨

cyclophysic cultivar

본래의 부친 및 모친과 같은 유전자형을 갖는 클론(clone)이지만 표현형은 다름. 식물생명주기 중 한 단계의 특정 조직이 번식됨

cytological characters 세포학적 특성

생물체의 세포구조내 특성

date of a name 명칭의 제정일

재배품종, 그룹, 계품, 속간접목 키메라 속명 등의 규명시기(ICNCP 조항 9.1)

date of publication 발행일(출판일)

인쇄물이 일반대중이나 식물원 도서관에 이용되기 시작한 실제시기(일/월/연도, 월/연도, 연도)

denomination – variety denomination 참고

denomination class(cultivar class) 분류군집합

품종, 집단, 계품 소명이 특정한 조건을 제외하고 중복되지 않는 분류군 집합(ICNCP 조항 6.1). ICBN에 의해 공식 부류로 승인되지 않음

description 기재문

특정한 분류군의 특성에 대한 진술; 확대된 분류군 고유 특징

descriptor 기재어

분류군에 붙여진 단어 구절이며 화색과 같은 요소를 표시함

determine 확인함

독립체의 일치 여부를 규명함

determination 확인

식별

determination slip 확인문서

표본에 붙여진 문서로 확인이 기재됨. 세부사항으로 확인한 사람, 확인 일자, 그리고 기타 관련내용이 적혀짐

diacritical sign 발음 구별 부호

악센트나 분음부호표와 같은 부호로 글자에 연결되어 올바른 발음을 표시함

diaeresis 분음 부호표

발음구별부호로 (") 두 연속모음 중 하나 위에 위치해 분리되게 발음되어야 함을 표시해 주고 다른 경우에는 하나의 음으로 발음함

diagnosis(diagnoses) 진단; 분류군고유특징(국제식물명명규약의 경우)

저자의 의견으로 분류군을 다른 분류군으로부터 구별토록 하는 진술

diagnostic characters 진단 형질

식물을 특정한 분류군으로 배정해주도록 하는 특징

differential character 이질적 특성

구별이 가능한 서로다른 특성

disagreeable epithet 불쾌한 소명

특정한 문화적 배경에서의 사용이 반감을 일으키는 소명

distinct 구별되는

한 개 이상의 특성이 일관되게 구분이 될 수 있게 달라서 반복적인 승인이 가능함

domestication 재배화, 순화

사람과 밀접한 관계로 인하여 생존을 하기 위해서 또는 서식지에서 생존을 하기 위한 식물(동물)의 적응

double-cross 이중교배, 복교배

두 F₁ 교배종의 반복적 교잡

duplicate 중복표본

표본의 중복품. 단일식물이거나 한 지역집단으로부터 수집가에 의해 동시에 수집된 단일 채집품의 부분

DUS test

식물육종가의 권리를 승인하거나 국가목록에 추가하기 위한 법적인 목적으로 새로운 품종의 구별성, 균일성, 안정성 등을 조사하는 기준

ephemeral 단명의 발행물

장기적인 참고문헌용으로 만들어지지 않고 수명이 짧은 발행물. 신문이나 광고처럼 발표되고 나서 곧 소멸되어 지는 것

epithet 소명

명칭의 마지막 단어나 단어의 조합으로서 개체의 분류군을 나타냄. 품종 소명 참고

epitype 추가기준표본

표본이나 설명도로 정기준 표본, 선정기준표본, 이전에 지정된 신기준표본, 또는 합법적 출판 된 학명에 관련한 모든 원재료에 근거해서도, 그 학명을 분류군에 정확하게 적용하기 위한 동정이 불가능 할 경우, 기준표본을 해석하기 위해 선택한 1개의 표본 또는 일러스트레이션(ICNB 조항 9.7)

equivalent epithet 동등 소명

기존 소명의 번역, 음역, 표기 등으로 승인된 소명. 악센트, 발음 구별 부호, 상구두법 등에 의해 미세한 차이를 보이지만 동등한 것으로 승인된 소명

essentially derived variety 본질적 파생 품종

뚜렷하게 구별되는 품종이면서 파생된 품종의 본질적 특성들을 보유함. 본질적 파생 품종들은 돌연변이, 선발, 유전공학에 의해 발생함

established name 수립된 명칭

ICNCP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명칭

establishment 수립

명명법의 주요원칙으로 소명의 사용이 통용되도록 특정한 기준들이 충족되어야 함(*ICNCP 조항 27 비교하기*)

etymology 어원학

단어의 본래 언어적 어원

extant 현존

현재 생존하고 있는 분류군

extinct 절멸(멸종)

현재 생존하고 있지 않고 멸종이 된 분류군

FAO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ion of the United Nations)의 약자

F1 hybrid (single cross) 1대 교잡종

순종 라인 사이에서 형성된 단교잡종(품종)을 의미하는 식물의 육종 용어

F2 hybrid 2대 교잡종

1대 교잡종의 자가수분에 의해 형성된 잡종(품종)을 의미하는 식물의 육종 용어

family 과

식물 분류학적 계층구조에서 목과 속의 사이에 있는 계급명

fancy epithet 진소명

라틴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쓰여진 중명

forestry 임업

작물로서 목본식물의 계획 재배

form (forma) 품종

식물 분류학적 계층구조에서 변종 아래의 계급명

formula mixture

정의된 시장(defined market)을 위해 예정된 방식에 따라 알려진 구성요소로부터 만들어진 종자 혼합

gender 성

라틴어, 그리스어, 많은 현대 언어에서 남성, 여성, 중성의 세 가지 성을 형용사, 관사, 대명사에 적용시키는 문법적인 특성

gene bank 유전자은행

유전적 소재를 저장하는 곳으로 주로 종자, 식물 소재를 저장하며 미래 사용을 위해 보존함

gene pool 유전자풀

집단에서 발견되는 유적전인 다양성의 범위

generic (taxonomic)

속과 관련된 것

generic (trademark) 제네릭(상표)

방치된 사용으로부터 법률이나 등록된 상표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상업적 이름

generic designation 제네릭 명칭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다수의 개체를 나타내는 이름으로 비슷한 개체의 다른 그룹과 구분됨. 속명

generic name 속명

속의 명칭(학명)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GMO) 유전자변형생물체

외부유전물질을 인위적으로 이식하여 새로운 특징을 갖게 된 생물체

genotype 유전형

개인이나 집단의 유전적 구조

genus 속

식물 분류학적 계층구조에서 목(目)과 종(種)의 사이에 있는 계급명

GMO -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참고

graft-chimaera 접목키메라

밀접한 관계가 있는 2개 또는 그 이상의 다른 분류군의 조직으로 구성된 식물, 접목에 영향 받음

graft hybrid - graft-chimaera 참고

grafting 접목

2개 또는 그 이상의 다른 식물조직의 (대부분 인위적인) 융합

greges - grex 참고

grex (복수형: 고전 라틴어로 grexes 또는 greges) 계품

난초류의 명명에 사용되고 종 또는 계품 수준(grex level)에 있는 특정 부모로부터 인위적인 교배로 생긴 자손에 적용되는 공식적인 계급명

group 모이다 또는 비공식 분류군

여러 품목(items)이 함께 모이다(동사), *ICBN*에 인정되지 않은 비공식 분류군(명사)

Group 그룹

정의된 유사성을 토대로 품종의 군집, 각각의 식물, 식물의 군집을 나타내는 공식적인 범주

hand-pollination 인공수분

방임수분의 가능성을 배제시킨 수분의 통제된 작업

Hangeul 한글

한국의 표음식 표기 체계

Hanyu Pinyin Fang'an - Pinyin 참고

Hanzi 한자

중국 표기 체계에 사용되던 중국 글자

Hepburn 헵번

일본어의 로마어화를 위해 널리 사용되었던 표준 체계

herbarium (복수형: herbaria) 식물표본관

식물표본의 수집, 식물표본을 보존하는 장소

herbarium specimen 표본관 표본

식물표본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식물표본(보통 건조된 상태)

hierarchy 계층제

식물 계층에 따라 차례로 정렬된 분류군 체계. *ICBN*에서는 더 낮은 분류군은 그 위의 계급에 하나 이상의 분류군을 따를 수 없음. 그런, *ICNCP*에서는 *ICBN*에 명시된 엄격한 정책의 원리와 다르게 하나 이상의 그룹(group)에 품종 포함을 감안함

Hiragana 히라가나

표음문자를 사용하는 음절문자의 일본어 체계 중 하나

holotype 정기준표본

종 또는 종 이하 분류군의 학명에 대한 기준표본으로 저자에 의해 사용되거나 지정된, 단 1개의 표본 또는 일러스트레이션. 정기준표본이 현존하는 한 학명과 관련된 적용이 고정됨

homonym 이종동명(동일명)

하나 또는 둘, 그 이상의 명칭 또는 소명 철자, 또는 또 다른 명칭이나 소명처럼 쓰여 졌지만 같은 계급의 다른 분류군으로 적용됨

horticulture 원예

조경, 과수, 채소 식물의 재배

hybrid 잡종

다른 식물체나 분류군 사이에서 교잡된 자손(결과)

hybrid formula 잡종표시(잡종식)

곱하기 기호(×)로 결합된 잡종의 부모 분류군의 이름

hyphen 하이픈

하나의 단어로 보이기 위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단어를 같이 붙여 쓰는 표시(-)

IAPT -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Plant Taxonomy 참고

ICBN – International code of Botanical Nomenclature 참고

ICNCP – International code of Nomenclature for Cultivated Plants 참고

ICRA – International Cultivar Registration Authority 참고

identification 동정

식물 또는 식물표본을 현존하는 분류군으로 식별

illegitimate name 불법명(비합법명, 서명)

ICBN 하에서 (특별히 보존되지 않는 한) 후동명 이거나 또는 출판될 때 분류학적으로 불필요함으로써 폐기된 이름(ICBN 조항 52.1 비교)

inappropriate name 부적합명

부적절한 어원을 가진 이름으로 이것 때문에 폐기되지는 않음

inbreeding 동계교배

근연 부모 사이에서의 자손 생산. 매우 높은 유사성을 유발함. 자가수정은 동계교배의 가장 극한 형태임

indelible autograph

석판 인쇄와 같은 일부 기계적 또는 그래픽 과정에 의해 복제된 손으로 쓴 자료

indigen 원생종

야생 서식지에서 유래되었다고 여겨지는 종

infrageneric

속의 계급 아래 어떤 분류군과 관련된 것

infraspecific

종의 계급 아래 어떤 분류군과 관련된 것

initialism 두문자어

구절에서 각 문자의 첫 글자로 구성된 축약구, 한 단어로 발음되지 않는 약성어(acronym)와 구분됨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Plant Taxonomy (IAPT) 국제식물분류협회

식물분류의 모든 분야를 격려하고 지지하기 위해 설립된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이며 국제식물명명규약을 제정하는 사명을 띠.

International Code of Botanical Nomenclature (Botanica Code or ICBN) 국제식물명명규약

식물로 취급되는 생물체의 라틴어로 된 학명의 형성과 사용을 위해 제공되는 국제 규정

International Code of Nomenclature for Cultivated Plant (Cultivated Plant Code or ICNCP)

국제재배식물명명규약

라틴어 또는 증명 형용어로 사용되는 재배식물의 학명 형성과 사용을 위해 제공되는 국제 규정

International Commission for the Nomenclature of Cultivated Plants 국제재배식물명명위원회

국제생물과학연합(IUBS)에 의해 주최된 국제재배식물명명규약(ICNCP)을 만드는 기관

International Cultivar Registration Authority (ICRA) 국제품종등록기관

지정된 분류군으로 품종등록, 그룹과 계품의 품종등록을 책임지기위해 ISHS 위원회에 의해 지명된 기관

International Registrar

등록 작업을 대신하여 수행하기 위해 국제품종등록기관(ICRA)에서 지정한 사람

International Society for Horticultural Science (ISHS) 국제원예학회

원예과학을 고취시키기 위해 설립된 기관(국제생물과학연합의 구성원)

International Union of Biological Sciences (IUBS) 국제생물과학연합

생명과학 내에 모든 규율을 고취시키기 위해 유네스코에 의해 발생한 기관

Interstem 중간대목

대목에 접수가 자라도록 하기 위해 그 사이에 삽입된 중간접수 조직. 'interstock'이라고도 알려짐

Introducer 도입자

처음 품종을 유통시킨 사람 또는 기관

ISHS – 국제원예학회 참고

ISO

국제표준화기구의 약칭

isosyntype 등가기준복제표본

등가기준표본의 중복표본(*ICBN* 조항 9.10 비교)

isotype 동기준표본

정기준표본의 중복표본. 항상 표본임(*ICBN* 조항 9.3 비교)

italics 이탤릭체

공식적인 분류학적 의미에서 사용할 때 학명을 구별하기 위해 종종 사용되는 비스듬히 기울어진 활자체

IUBS - 국제생명과학연합 참고

Kanji 간지

일본어 문제에서 사용되고 개조된 한자

journal 잡지

정기적으로 발간되는 연속간행물

Katakana 가타카나

표음문자에 사용되는 일본어 음절문자의 하나

Latin (botanical Latin) 라틴어

르네상스 라틴에서 파생된 언어. 다른 서술 관련 정보와 식물명의 국제적 소통을 위해 사용되는 다른 고대 언어

lectotype 선정기준표본

출판 시 정기준표본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혹은 정기준표본이 없을 경우, 또는 1개의 기준표본이 2개 이상의 분류군에 속할 때, 원재료 중 명명법상의 기준표본으로 지정된 1개의 표본 또는 일러스트레이션(*ICBN* 조항 9.2 비교)

legitimate name 합법명(적명)

명명법에 따른, 즉 비합법적(서명)이라고 간주되지 않고 *ICBN*에 적용된 이름(*ICBN* 조항 6.5 비교)

ligature 합자

알파벳 두 글자의 인쇄상의 단위

line 계통

반복되는 자가수정 또는 동계교배의 결과로 식물을 서술할 때 사용하는 식물 육종 용어

logotype (logo) 연자

한 기관의 상품이나 서비스가 다른 기관과 구분되게 하는 그래픽 장치

lumping

이전에 하나 이상의 단위에 속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단일 분류군 부류의 구성원으로 취급하는 것

macron (overscore) 윗줄

종종 장음을 가리키는 모음 위에 사용되는 음성 구분 표시(—)

maintainer 유지친

품종의 생산을 계속 유지시켜주는 개체

maintenance 유지

품종의 재생산. 종자번식이나 영양번식, 일반적인 변이와 이형주의 수에 대해서 충분히 균일하고 품종의 전형적임(즉, 순종임)

manuscript 사본

수공으로나 기계적으로나, 아무런 차후 증식 없이, 손으로 쓰거나 타자한, 오직 하나 또는 적은 수의 복사본이 있는 소재(materials)

microfiche 마이크로피치

단일 그래픽 필름 시트 위에 많은 페이지가 고도로 축소 촬영된 복사본

microfilm 마이크로필름

투명한 사진 소재의 연속지 위에 발간작 또는 원고의 고도로 축소 촬영된 복사본

microform 마이크로폼

마이크로피치와 마이크로필름을 포함한 용어

misapplied name 부적합명(잘못 적용된 학명)

부정확하게 적용된 식물명

modern language 현대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언어

morphological characters 형태적 특성

식물의 신체적 특성

multiline 다계

몇몇 근연 계통으로 구성된 품종을 기술하기 위해 사용되는 식물 육종 용어(ICNCP 조항 2.15)

multiplication sign (×) 곱하기 표시

명명법에서 잡종을 일컫는 표시

mutant 돌연변이체

돌연변이에 의해 생산된 개체, 돌연변이 표현형 발현

mutation 돌연변이

표현형을 변화시키는 유전형에서 자연적이거나 조작된 변화

name 명칭

규약에 있어서 명칭이 받아들여지든지 수정되든지 간에 일정한 법칙 하에서 유효하게 출판되거나 확립된 이름. 소명(epithet) 참고

name-bearing type - 명명기준 참고

neotype 신기준표본

분류군 명칭에 기준이 되는 모든 소재들이 없을 때 명명기준을 제공하기 위해 선발된 표본 또는 삽화

nomenclator 명명자 또는 명칭 일람

정명, 채택명과 이명으로 구성된 명칭의 다른 목록 또는 권위적인 목록; 이러한 목록을 편집한 사람

nomenclatural 명명의

명명법과 관련된

nomenclatural hierarchy 명명계층

일부 명명법의 규약에 의해 정의된 계급에 따라 순서대로 정렬된 분류군의 계급

nomenclatural standard 명명기준

품종 또는 그룹의 명칭이 영구히 부착되는 표본 또는 장치

nomenclatural type (type) 명명법상 기준

ICBN 하에서 수정된 명칭이든지 이명이든지, 분류군 명칭이 영구히 부착되는 요소이며 이것은 명칭 적용을 결정함. 명명기준이 반드시 식물군의 가장 전형적이고 대표적인 요소는 아님

nomenclature 명명법

명칭 체계와 명칭의 형성 및 이용을 위한 조항

nominant 명명자

명칭을 만들거나 지어낸 사람

non-statutory registration 미법정 등록

어떤 기관, 단체, 또는 이러한 책임을 위임받은 개인에 의한 식물 명칭 목록과 승인

nothogenus 속간잡종

nothospecies 종간잡종

관례상 곱셈 표시(×)를 앞세우며 둘 또는 그 이상의 종 사이에서 생긴 잡종을 위한 종 단위 계급 상에서 명칭

off-type 이형주

이지모식 표본과 다른 식물이거나 이례적인 표현형을 나타내는 식물

original spelling 원본철자

명칭이 확립되었을 때 쓰이던 철자

orthographical error 철자오류

고의적이지 않은 철자 오류

orthographical variant 변형철자

보통 부정확한 철자와 대안. equivalent name 참고

orthography 철자체계

정확한 철자법

out-crossing 이중 교배

본래 갖고 있는 유전자풀을 넓히고 그들의 특성을 변화시키는 식물의 다른 집단끼리의 교배

overscore - macron 참고

paratype 종기준표본

만약 프로토로그에 2개 이상의 표본이 동시에 기준표본으로 지정된 경우, 정기준표본도 동기준표본도 아니고, 또한 등가기준표본 중 1개의 표본도 아닌 프로토로그에 인용된 표본

parenthesis (복수: parentheses) 괄호

삽입 문자, 구절, 문장을 가리키기 위해 사용하는 둥근 괄호

patronymic 부칭

부칭 접두사 예를 들어, 벨기에 “Van”, 독일 “van”, 아일랜드 “O”, 스코틀랜드 “Mac”, “Mc”과 “M” 또는 접미사 예를 들어, 아이슬란드 “-dottir”, 러시아 “-vitch”, 덴마크 “-sen”, 영국과 스칸디나비아 “-son”을 포함한 별칭

pentaploid 5배체

염색체의 다섯 세트를 가진 배수체

periodical 정기 간행물

정기적으로 발간되는 출판물

phase 단계

식물 생장환의 뚜렷한 단계(시기)

phenotype 표현형

식물 개체의 모든 특성의 요지; 유전형의 신체적 표현

phenotypic 표현형의

표현형과 관련 있는

phonogram 표음문자

음성을 나타내는 글자 또는 기호

physiological characters 생리적 특성

개화 유도와 같은 식물의 기능적 메카니즘과 관련된 특성

Pinyin 필인

중국어의 로마자로 옮기기 위한 국제적 기준

Plant Breeders' Rights 식물육종가권리

식물품종권한(PVR)으로도 알려진 PBR은 식물 신품종의 육종가에게 지적소유권을 줌

plant patent 식물특허

특정 나라에 사용 가능한 권한. 신품종의 번식과 기간 내 판매를 조절하는 수단으로 제공됨
Plant Variety Rights 식물변종권리 - Plant Breeders' Rights 식물육종가권리 참고

pollination 수분

종자식물의 꽃가루가 암술머리에 얹혀지는 생식의 과정

polyploid 배수성

생물의 염색체의 수가 통상 개체 것의 배수로 되어 있는 것

polymorph 다형

많은 변이형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분류군

polymorphic 다형성

다양한 형질을 보이는

population 집단

특정 분류군의 개체들이 모여 있는 집합체

precedence 우선 - priority 선취권 참고

prefix 접두어

어떤 단어의 앞에 붙는 한 개 또는 그 이상의 문자

pre-Linnaean 린네식 생물 분류법 이전의

생물 명명법(Linnaeus's Species Plantarum, 1753년 5월 1일)이 시작되기 이전에 출판된 이름이나 작업

preprint 견본인쇄

완전한 인쇄물을 만들기 전에 간략히 작업된 출판물

Principle 원칙

명명 규약에서, 조항(articles)들을 만족시키는 기초 수칙

printed matter 인쇄물

영구적으로 보존하기 위해 인쇄된 원고나 그림을 통틀어 이르는 말

printing 인쇄

문자와 그림의 정보를 지면에 옮김을 통해 동일한 복사본들을 만드는 일련의 과정

priority 선취권

명명법에 있어 우선시 되는 원칙. 하나의 종에서 먼저 명명된 것이 이후에 명명이 된 것에 우선 됨

protologue 프로토로그

식물의 이름과 관련되어 처음으로 출판된 모든 것

provenance 산지

식물이나 종자의 지리적 원산지. 주로 원산지로부터 이들을 채취하기 위해 표시하는데 주로 이용됨

provisional name 예정명

수립된 이름은 아니지만 특별한 환경, 위치, 계급의 측면에서 하나의 종을 표현하는데 도움을 주

는 이름. reserved name(예비명) 참고

publication 출판

공적인 판매, 거래, 선물 등을 통해 인쇄물을 만들어 배포하는 과정. 명명법 규약에 있어 필수 원칙. 명명이 확립되기 위해서는 명명이 표기된 인쇄물의 출판일이 명시되어 출판됨으로서 취득이 되고 이를 통해 사회에서 활용됨

publish 출판하다

어떤 이름이나 명명에 관한 일을 공적으로 만들기 위해 출판물을 발행하는 것

published 출판된

출판의 요구조건을 만족시킨 것

publishing author 출판저자

책이나 간행물 등의 출판에 있어 주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는 명명법에 있어 기여를 한 경우에도 가능함

quotation marks 따옴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단어를 묶는데 사용하는 표시. 큰따옴표는 큰따옴표로 표시된 것들이 아직은 확정되지 않은 이름이나 철자임을 나타냄. 작은따옴표는 품종명을 나타낼 때 사용

rank 계급

명명법의 계층 구조 속에 있는 상대적인 위치

recommendation 권고

명명법에 있어 따라야 할 것을 강하게 추천함

register 등록부

ICRA에 등록된 이름으로 출판하거나 간주가 되는 출판물

registered trademark 등록상표

공적으로 즉 법적 저작권을 인정받은 상표를 말함. ®로 표시됨

reject 기각

종의 이름을 다른 것으로 사용하도록 유보해 놓음

rejected name 폐기명

특정 원칙(예, *ICNCP* 조항 31.1) 또는 INCNP가 정하는 원리에 입각하여 사용된 이름(*ICNCP* appendix VI)이 아닌 이름

replacement name 대치명

*ICBN*과 상충되는 옛날 이름을 바꾼 새로운 이름. 이름을 대치하거나 예전에 사용했던 이름에 '새로운 이름'을 표기함

reserved name 예비명

수립(established)되지 않은 그러나 ICRA에 절차를 거쳐 등록 될 것이라고 여겨지는 이름. 이러한 이름은 더 이상 명명법의 규칙에 따르지 않음

retroactive 소급력이 있는

시간을 거슬러 유효한. 명명학적으로 언급이 없으면 규약 안에 명명법은 그것이 언제 규약에 들어갔는지 무관하게 유효한 것임

rogue - off-type 이형주 참고**roguing 솥아내기**

작물에서 불량 한 개체를 제거함

Romaji 로마지

일본어의 로마자 표기법

Roman 로마자

이탤릭이 아닌 프린터의 글꼴

Roman alphabet 로마자

서양문화권에서 주로 사용하고 라틴어로부터 파생된 글자

Romanization 로마화

로마자 파생이 아닌 언어를 로마 글자화 하는 것

Roman script 로마 문자

로마자를 이용한 표기

rootstock 대목

나무에 접붙이기를 할 때 밑에 위치한 바탕나무

rules 규칙

명명법에서 반드시 따라야 하는 원리

scientific name 학명

국제적인 명명규약에 따르는 생물의 분류군에 붙여진 공통적인 명칭

scion 삽수

삼목에 쓰이는 줄기, 뿌리, 잎을 말함

seed bank 종자 은행

식물의 유전자원(종자)를 전문적으로 저장, 보존하는 연구 시설

selection 선발

하나의 품종 내에서 특정 형질에 기반하여 분리시킨 식물이나 그 집합체

self-pollination 자가수분

한 그루의 식물 안에서 자신의 꽃가루를 자신의 암술머리에 붙이는 현상

selling name - trade designation 상용 명칭 참고**sensu lato 광의의**

“넓은 의미”를 뜻함

sensu stricto 협의의

“좁은 의미”를 뜻함

separate 분책

정기 간행물 같은 것의 일부분, 저자들이 의도를 가지고 주 간행물과 분리하여 출판된 것; 재 출판(reprint)

serial 연속간행물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발행번호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발행되는 간행물

series 시리즈

특정 형질에 대해 다양한 품종들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용어로 종자 마케팅에 사용됨. 일반적으로 꽃의 색깔에 대한 것이 많음

series 열

식물학적 명명법에 대한 범주 중, 종과 속 사이에 있는 것

series mixture 혼합 시리즈

열(series)로부터의 혼합 품종임을 알려주기 위한 단어

sexual propagation 유성생식

양성의 개체로부터 생긴 배우자의 합체 즉, 수정에 의한 번식

S₁ Hybrid S₁ 잡종 - synthetic hybrid 합성 잡종 참고

silviculture 임학

상업적인 목적으로 산림조성과 육성에 필요한 기술을 연구하는 학문

simultaneous publication 동시 출판

어느 저자가 동일한 연구에서 하나의 종에 대하여 두 개 이상의 이름을 출판하는 것

single cross 단교잡 - F1 Hybrid F1 잡종 참고

species (species) 종

생물분류의 기본 단위

species name 종명

종에 붙여지는 학명. 속명(generic name)과 또 그에 계속되는 종소명(specific epithet)이 조합된 이명법에 의해 표시

specimen 표본

생물학 연구를 목적으로 보존되는 식물이나 그 일부

spelling 철자

단어를 표음문자로 배열하여 표기하는 순서

split 스플릿

하나의 분류군을 두 개 이상의 분류군으로 나누는 것

sport 지변

식물체의 일부에 유전자 돌연변이가 일어나 상이한 형질부분이 형성되는 현상

stability 안정성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정도. 명명법에서는 사용되는 이름이 계속 사용되는 경우

stable 안정

분류군의 특성이 변하지 않는 상태

standard 표본 - nomenclatural standard 명명기준 참고

standard portfolio 표준 포트폴리오

명명학적인 표준과 관련된 자료들을 합쳐 정리된 서류

starting point 기점

특정 분류군의 이름을 수립한 시기

statutory epithet 법정 소명

법적인 권위가 인정된 등록을 통해 알려진 명칭

statutory plant registration authority 법정식물등록기관(SPRA)

국가 간의 합법적 조약이나 특정 국가의 법률을 통해 세워진 기관

statutory registration 법정등록

법적인 권위가 인정된 등록

strain 계통

여러 내용을 내포하는 복잡한 의미; 재배 식물명. 때로 종자를 통한 다양한 변이들을 지칭. maintenance 와 selection 참고

subspecies (subspecies) 아종

식물학적 명명법의 범주 중, 종과 변종사이의 중간에 속하는 부류

superfluous 잉여된(불필요한)

ICBN에 속한 이름으로 합법적으로 출판되고 이전에 사용되었던 이름

suffix 접미어

낱말의 끝에 붙어 의미를 첨가하여 다른 낱말을 이루는 말

symbol 상징

어떤 대상을 지시하는 기능을 지닌 기호나 문자

synonym 이명

특정 분류군에서 정명(accepted name)(*ICNCP* 조항 13.2 & *ICBN* 조항 6.6)은 아니지만 이미 지어진(established) 이름

synonymy 이명표

정명 외에 다른 이명을 적용한 표

synthetic hybrid 합성 잡종

집단 line에서 자연교배를 통해 육종하는 방법

syntype 등가기준표본

정가기준표본이 지정되지 않았을 경우에 프로토크로그에 인용된 모든 표본, 또는 프로토크로그에 기준표본으로 동시에 지정된 2개 혹은 그 이상의 표본들(예, *ICBN* 조항 9.4)

tautonym 반복명

반복명 종명에서 속명과 종소명 또는 종소명과 아종소명과 같이 단어를 되풀이하여 만든 명칭. *ICBN*(조항 23.4)와 *ICNCP*(조항 21.22)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음

taxon (복수: taxa) 분류군

분류를 통하여 모은 무리

Taxon

식물 분류학을 연구하는 국제학회의 저널

taxonomic category 분류군 범주

생물분류의 계층적 체계에 있어서 계급구분

taxonomic group 분류군 - taxon 참고

taxonomic unit 분류학적 단위 - taxon 참고

teratological plant 기형적인 식물

심하게 기형을 나타내는 식물

teratology 기형학

기형을 연구하는 학문

termination

굴절. 어떤 단어가 동일한 어간을 가지고 동일한 품사를 유지하면서, 그 어미를 여러 가지로 변화시키고 그에 따라서 문법적 기능도 변화시킴

tetraploid 4배체

배수체의 일종. 기본수 4배의 염색체를 가진 개체

tone mark

중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top-line punctuation

아포스트로피, 악센트 등의 기호를 단어에 연결하여 씀

topophysic cultivar

부계(父系)의 식물과 동일한 유전형질을 가지고 있지만 부계의 특정 영양조직을 통해 번식함으로써 표현형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

topovariant

산지에서 얻은 종자로부터 파생된 구분이 안 되는 식물의 군집

trade designation 상용 명칭

식물의 이름이 상업적인 목적에 부적합하다고 여겨질 때 시장에서 이용하는 이름

trademark (™) 상표

한 제조업자의 재화와 타제조업자의 재화를 구별시켜 주는 기장 또는 로고. 자기가 만든 상품에

대해 명칭을 부여하기 위해 사용 채택되는 상징체계, 보통 그러한 심벌 마크와 같은 고안된 것이나 단어, 문자, 숫자로 만들어진 기호

trade name 상표명 – trade designation 참고

translation 번역

한 나라 말로 된 글을 다른 나라 말로 옮기는 것

transliteration 음역

어느 언어를 표현하는 보통의 문자 체계를 다른 문자 체계로 나타내는 것

transcription 복사

제보자로부터 제공되는 조사 대상 언어의 음성을 일정한 부호나 문자로 기록하는 일

transformed plant 변형 식물 – genetically modified plant 유전자 변형 식물 참고

trinomen 삼명식명칭 – trinomial combination 삼명식명칭 참고

trinomial combination 삼명식명칭

학명을 명기하는 방법으로 속명, 종명, 변종명 등에 명명자명을 명기하는 방법

triploid 3배체

기본수 3배의 염색체수를 가진 배수체

type – nomenclatorial type 명명표본 참고

typification 전형화(기준표본의 지정)

명칭을 위한 명명기준을 선택하고 지정하는 일

typographical error 오식

인쇄물 가운데 문자 및 부호 등이 잘못 들어가는 일

typography 타이포그래피

활자 또는 활판에 의한 인쇄술을 가리키는 말

umlaut 움라우트

역사언어학상의 개념으로 몇 모음이 후속음절의 영향으로 소리가 변하는 현상

undetermined 미결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시료의

UNESCO 유네스코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의 줄임말

uniform 균일

하나의 분류군에서 특성이 변하지 않은 상태

UPOV 유포브

The International Union for the Protection of New Varieties of Plants, 국제식물신품종보호 동맹은 품종보호를 위한 정부간 기구

USLC 유에스엘시

United States Library of Congress의 줄임말

variant 변이형

어떤 기본적인 특성이나 유형으로부터의 벗어난 형태의 개체

variety (varietas) 변종

식물학적 명명법의 대한 범주 중, 종과 품종사이 중간에 속하는 부류

variety 변종

동식물의 각 종 내에 존재하는 유전적, 비유전적 요소에 의한 개체 또는 집단 간의 변이, 지방형 등을 포함함. cultivar와 variety (varietas) 참고

variety denomination – statutory epithet 참고

vegetative propagation 영양번식

무성생식을 이용한 번식

vermacular name – common name 일반명 참고

voucher specimen **확증표본**

DNA, 세포학적, 화분 등의 연구를 통하여 특정 분류군의 명명에 확증이 될 표본

wild plant **야생식물**

자연에서 유래된 식물

witches' broom **빗자루병**

가늘고 길며 연약한 가지가 모여서 빗자루 뭉치와 같이 나타나는 병의 일종

word element **단어 요소**

단어를 구성하는 각 요소

work

출판의 유무를 떠나 명명과 관련되어 글자로 표현된 것

written **쓰여지다**

ICNCP의 목적에 따라 출판된 어떠한 형태

xerography **제로그래피**

광전효과와 정전기 효과를 조합해서 이용한 전자 사진법

